

언론중재

2013 겨울호 통권 129호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인쇄 2013년 12월 25일
발행 2013년 12월 30일
등록 1981년 10월 14일
등록번호 서울중바00002
발행인 권 성
편집인 오광건
인쇄인 이민성
발행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 397-3114
FAX 02) 397-3069
www.pac.or.kr
편집 · 인쇄 (주)성우애드컴

편집위원

손영준 서울제3중재부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영진 서울제8중재부
(변호사)
강선임 외부위원
(AnC 미디어 실장)
송상근 외부위원
(동아일보 교육복지부장)

- * 본지는 집자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

2013 겨울호 통권 129호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C O N T E N T S

계간 언론중재

Vol. 129 Winter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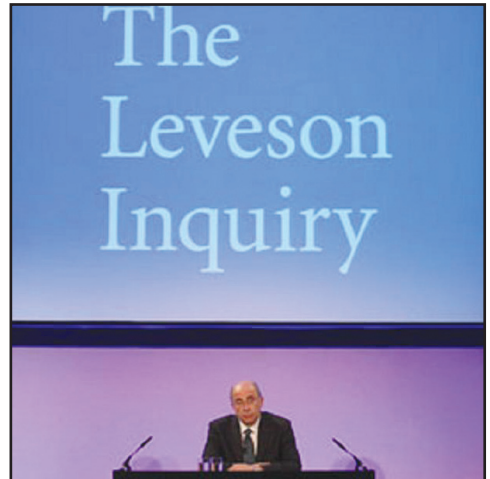
06

Focus on World Media

- 06 공인의 사생활 보도의 실제와 한계: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빌 클린턴 사례를 중심으로 _이재진
- 14 2013년, 미디어 핫이슈 정리 _권수현

칼럼

- 26 남성 소외감을 관리하는 남녀평등
정책을 지향할 때 _양선희



30

사건, 그 후

- 30 영국의 언론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_송동현
- 42 이탈리아 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인가? _최을영

2013 언론중재위원회 세미나 현장중계

- 52 군과 언론, 국가위기관리의 동반자인가?

판례토크

- 70 알 권리 vs 사생활 침해 _장현우



100

Movie with Legal Mind

74 '입장'으로 살펴본 <더 테러 라이브> _양려원

조정중재 현장

80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의 주요 기능과
효율적인 활용방안 _김광수

기고문

88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소견 _이영진

100 일반인 방송 전성시대, 그 명과 암 :
일반인 예능 펄펄 나는데 논란도
끊이지 않는 이유 _정덕현



116

해외통신원 기고

116 중국 소수민족에 관한
중국 언론의 보도 양태 _윤기홍

언론분쟁 노트

130 '뉴스 미란다 원칙' 시행 :
국민일보, 언론 피해 예방에 중점 _정재호

공인의 사생활 보도의 실제와 한계: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빌 클린턴 사례를 중심으로



글.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얼마 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보도로 언론이 떠들썩했다. 몇몇 언론은 보도방식에 대해 저널리즘적 차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의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임에도 이에 대한 사실검증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의 보도에 그쳤다. 이런 사례와 유사하게 언론보도로 인해 시끄러웠던 사건이 작년 프랑스에서도 있었다.



Privacy

프랑스 영부인의 명예훼손 침해 소송

2012년 9월 5일 프랑스 지방법원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동거인인 트리에르바일레 여사의 수영복 사진을 표지 등에 게재한 프랑스 연예정보 주간지인 VSD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 VSD가 트리에르바일레 여사의 인격권을 침해(명예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2000유로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원래 트리에르바일레 여사는 3만 유로에 달하는 손해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트리에르바일레는 그녀의 이전 남성편력과 사생활을 공개한 책을 쓴 작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VSD 측은 이 결정에 대해 비록 대통령 부부의 허락 없이 사진과 기사를 게재했으나 여름 시즌에 대통령 부부의 수영복 사진을 잡지에 게재하는 것은 연례

적으로 해오던 것으로 사르코지와 시라크 대통령 부부의 수영복 사진을 실은 적도 있어서 이 사건은 ‘공인’인 영부인 자격으로서 과잉대응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VSD 측은 또한 트리에르바일레 여사가 사진이 잡지에 실리기 이전에 이 사진이 실리면 소송을 하겠다는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트리에르바일레 여사측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지 않고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분명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며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 피력했다. 그런데 만일 트리에르바일레의 사생활을 미국에 있는 잡지사나 신문사가 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트리에르바일레 여사가 프랑스가 아닌 미국에서 발간되는 매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승소할 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커플의 수영복 사진을 게재한 2012년 8월 9일자 VSD 표지(출처: politicsinside, 「Valérie Trierweiler menacerait de porter plainte contre VSD」, 2012년 8월 11일자)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과 영부인 부르니 부부의 수영복 사진을 게재한 2008년 8월 13일자 VSD 표지

있었을까?

정답은 승소 가능성 ‘없음’이다. 왜냐하면 트리에르바일레 여사는 ‘공인’(public figure)이기 때문이다. 트리에르바일레 여사가 현직에 몸담고 있는 언론사의 기자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 영부인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녀는 ‘공인 중의 공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공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트리에르바일레 여사와 같은 공인 중의 공인은 승소 가능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공인 사생활 보도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가? 프랑스에서는 공인의 사생활은 보도하면 안 되는 것인가? 미국의 경우에는 공인의 경우 보도에 있어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해도 면책되는가?

우선 미국은 언론이 공인을 상대로 가장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국가이다. 이는 1998년에 있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스캔들 보도 사건에 있어서도 잘 알 수 있다. 르윈스키 스캔들이라고도 하는 이 사건에서 모든 언론은 스캔들 사건을 일제히 소상하게 보도했고, 이러한 보도로 인해 클린턴 전 대통령은 한 때 탄핵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특히 의회에 보고된 보고서에 담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적절한 성생활 내용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클린턴 전 대통령의 스캔들은 많은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개인의 사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당시 언론의 스캔들 보도가 때로는 사

실검증이 없는 선정적이고 폭로주의적 보도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어떠한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기도 했겠으나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었던 이유가 더 컸다.

당시 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은 공인으로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언론의 보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입각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1964년 소위 설리반 사건(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에서 미 연방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스캔들을 보도한 1998년 2월 2일자 타임지 표지(출처: 타임지 홈페이지[content.time.com])

대법원이 수립한 ‘현실적 악의’(또는 실제적 악의) 원칙이란 ‘문제된 언론 보도를 보도할 때 기사나 편집 책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진실여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설리반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에 근거하여 언론에 숨 쉴 공간을 제공하고 공직자(public official)에 대해서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실적 악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실시했다. 아울러 입증 책임을 언론으로부터 소송 당사자로 이전시켰다. 즉 설리반 사건 이전에는 진실입증 책임이 피소자인 언론에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소송 제기자가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한 것이다. 공직자가 명예훼손(이후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까지 확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소송 제기자가 언론의 보도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보도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기는 대단히 까다롭다. 왜냐하면 이는 언론인의 보도 당시 마음의 상태(state of mind)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직자는 이 사건 이후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기가 대단히 어렵게 됐다.

10년 뒤인 1974년 연방대법원은 소위 거츠 사건(Gertz v. Welch, 418 U.S.



1960년 3월 29일자 뉴욕타임즈가 몽고메리(Montgomery)시 시의원이자 경찰국장인 설리번이 당시 대표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과 그 추종자들에 대해 테러 협박을 시도했음을 알리는 전면 의견 광고(제목 :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라 [Heed their Rising Voices])를 게재하자, 설리번은 이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출처 : ABA저널, 「March 9, 1964: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Decided」, 2012년 3월 1일자)

323)에서 현실적 악의 원칙을 공직자 외에도 공인(public figure)에 까지 확대 적용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공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이후 판례를 통해서 볼 때 공인은 공직자를 포함하여 공적인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 인사들과 공중의 시선을 끌고자 노력하거나 미디어에 등장하여 널리 알려진 유명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공인이 누구이고 어느 정도 범주의 사람들을 포함하는가에 대해서는 현재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설리반 사건과 거츠 사건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는 공인의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권리로서 인정되어 왔다.

물론 공인이라고 모든 형태의 보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1971년 둔 앤 브래드스트리트 대 그린모스 빌더스(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사적 관심사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받진 못하기에 비록 공인의 경우에도 사적 관심사에 대해서 보도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아울러 연방대법원은 공인의 경우에 현실적 악의가 입증된다면 일반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이 병행되어 내려질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현실적 악의 원칙은 그 일괄적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1964년 이후 지속적으로 고집스럽게 지켜지고 있다. 사생활 보도가 문제가 된 때에도 비록 그 정보의 공개가 ‘불쾌감을 일으키도록 부정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하지만 사생활 보도의 목적이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속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에 대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은 역시 언론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방대법원은 공인의 경우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일반인만큼 기대할 수 없다고 피력한 바 있다.

결국 트리에르바일레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거나 또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언론을 상대로 소송했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공인으로서 승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금번 트리에르바일레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이었지만 실제로는 공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더 가깝다고 보여진다. 명예훼손이든 프라이버시 침해이든 프랑스에서는 미국처럼 언론자유를 우월적인 권리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인의 사생활 보도,

프랑스가 미국과 다른 이유

이처럼 프랑스의 법적 구조가 미국과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프랑스 언론이 역사적으로 국가적 개입을 많이 받아온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예들 들어 정부는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이나 보증금 제도, 그리고 간접세 등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법제도를 통해서 언론을 규제해왔다. 비록 프랑스 인권선언 제정에 따라서 언론은 상당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나, 언론의 개인에 대한 부주의하고 선정적인 명예훼손 기사와 과도한 반정부 기사의 남발로 많은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이와 아울러 프랑스 대혁명 이후, 언론이 진실되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개인적 명예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언론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됐다. 그래서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본적인 시민권으로 ‘반론권’을 수용하게 됐다. 이러한 반

론권 규정을 포함한 세계 최초의 언론규제 법안이 1800년에 의회에 제출됐다. 동 법안은 ① 언론의 과도한 권력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②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보도로부터 독자들을 보호하고, ③ 공중의 권력과 언론의 권력을 균형 지우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④ 형사적 문제해결과는 다른 피해 구제책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언론사가 반론의 의무를 어겼을 경우 언론사의 폐간을 명하는 등 중벌을 가하도록 한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가 1822년에 와서 통과된다.

프랑스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된 언론사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사의 내용에 특정인의 신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개인의 명예나 지역에서의 명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의 보도에 있어 ‘악의’(bad faith)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문제된 명예훼손적 표현을 분석해서 추론할 수 있다. 이 때 만일 사실 보도가 ‘진실’이라면 언론이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제소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다면 이는 예외가 된다.

형사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이는 민사재판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

도 가능하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법상의 조항 적용을 받게 된다. 민법상의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언론사가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기사의 정확성에 대해 조사하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과실로 인정된다. 개인간의 민사소송에서보다 언론이 피소인으로 등장하는 경우 배상액이 높은 경향이 있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프랑스 법 구조

프랑스 법은 제소자가 공인이나 아니냐의 여부가 판결에 크게 작용하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물론 프랑스의 경우에도 관련 사안이 공적인 것으로 상당한 공적 관심사의 내용이라면 면책의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공인 여부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공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보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진실여부가 면책사유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도 더 승소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주로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미국과 달리 프랑스 법은 민사 및 형사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가 무엇인가에 대해 프랑스 법원은 아직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 개인의 ‘사적 영역’의 모든 부분이 프라이버시로 인정되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의 가족에 대한

일(사건)뿐만 아니라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개인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예를 들어 재정관련 정보나 개인의 가족, 연인관계나 성생활 등).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사진을 재생산(게재)하는 것은 제소인의 공인여부와 상관없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된다. 그래서 프랑스 언론이 사진에서 주변의 구경꾼(방관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얼굴을 가리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한다.

프랑스에서의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한 사람이 잡지의 취재에 동의하고 기사에서 그(그녀)의 사생활의 일부를 공개하였다면(예를 들어 아이들, 결혼 생활, 연애 사실 등), 다른 잡지는 만일 취재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가족과 관련된 사실을 해당 잡지에 실지 못한다.

물론 프랑스의 경우에도 미국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이 만일 공인이라면 개인의 사생활의 범위는 상당히 축소된다. 그러나 개인의 가정생활(family life)은 대단히 사적인 영역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받게 된다. 위에서 제시한 트리에르바일레 사건 이외에도, 2007년 모나코의 알버트 왕자에 대한 프랑스 대법원의 판결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프랑스 대법원은 모나코 알버트 왕자

가 한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들춰 보도한 한 잡지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명한 항소심 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프랑스 대법원은 잡지사의 알버트 왕자에 대한 보도가 공적인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공중의 관심사에 속하는 것도 아니며 뉴스가치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하자면 프랑스에 있어서는 대단히 사적인 정보는 보도하지 못하는 법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프랑스의 경우에는 언론인들이 몰래카메라를 사용해서 인터뷰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재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이 자제되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조항이 없다. 또 몰래카메라를 이용하거나 녹음한 내용을 방송하는 것 또한 민법과 형법에 규정된 프라이버시 보호조항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단지 문제가 된 대화의

Monaco prince admits love child

Prince Albert II of Monaco has acknowledged that he has had an illegitimate child with a flight attendant from Togo, his lawyer said.



Prince Albert of Monaco has a reputation as a playboy prince.

Lawyer Thierry Lacoste said in a statement that the prince, who is not married and has no heir, wanted to face up to his responsibilities.

He said the child, aged 22 months, would not be in line to the throne and would not have the name Grimaldi.

The prince, 47, said he hoped his son could avoid the media spotlight.

Prince Albert's father, Rainier III, died in April aged 81.

Rumours of the prince having a child with former Air France flight attendant Nicole Coste, who is Togolese and holds French citizenship, emerged in some parts of the French media days after Prince Rainier's death.

Ms Coste was quoted as saying she met the prince on a flight in 1997, leading to a relationship and the birth of the boy, Alexandre, in August 2003.

Constitution

In the lawyer's statement, released as the Grimaldi family ends three months of mourning, the prince said he regretted the fact that the press had gone public with the story so close to his father's funeral.

"Prince Albert II asks the press to adopt responsible behaviour, similar to what it has adopted in similar circumstances for other public figures, and to respect his private life and that of the underage child," the statement added.

Prince Albert, often dubbed the "playboy prince", has for years appeared reluctant to get married or start a family, which perhaps prompted his father to change Monaco's constitution in 2002.

Previously, the principality would have become part of France in the absence of a male heir. Rainier had the law changed so that, in the event of Albert remaining childless, Princesses Caroline and Stephanie could follow their brother, who was proclaimed regent during Rainier's last days.

The sisters have seven children between them.

Paris Match의 숨겨둔 아들 보도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playboy prince'라는 비난을 받은 모나코 알버트 왕자(출처: BBC, 'Monaco prince admits love child', 2005년 7월 6일자)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공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한 프랑스와 미국의 법적 관점

결론적으로 트리에르바일레 여사 사건은 미국의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관련법의 시각으로 보면 상당한 괴리가 느껴진다. 미국에 있어 공인들이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구제를 받기 까다롭게 만들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여타 다른 기본권에 앞서는 우월적인 권리로서 판단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제소자의 공인 여부와 상관없이 진실하고 공적 관심사의 경우에 한하여 언론을 면책시켜 주는 구조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문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이것이 개인의 사적 영역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를 보도한 언론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개인 인격권의 비교형량을 꺾하고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공히 헌법을 통해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이나 범주는 양국이 서로 차이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어느 법체계가 기본권 간의 갈등을 더 적절히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디어 빅뱅 시대에 한 국가

의 중요한 보도는 단지 그 나라만의 뉴스나 보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개인적 기본권의 정도는 각국 법체계의 영역 내에서만 보호를 받게 된다. 개인의 사생활이 대단히 자유분방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보호를 받게 되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공인들은 항상 언론에 노출될 정도의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

아울러 트리에르바일레 여사가 비록 프랑스에서 잡지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이는 다소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판단된다. 공인이라고 해서 그 가족이나 이력이 모두 보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도 공인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제도적인 측면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도를 자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도 공인 여부를 법리에 크게 적용시키지 않고 있으나 공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적절하게 인용함으로써 언론에 위축효과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하겠다. 사회가 변하면서 법도 변화하게 되므로 만일 제2, 제3의 트리에르바일레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프랑스의 경우에도 점차 공인이 언론을 상대로 피해구제를 얻어내기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미디어 핫이슈 정리



글. 권수현
연합뉴스 국제뉴스1부
기자



2013년은 전 세계 언론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생존을 향한 몸부림이 치열했던 해로 기억될 듯 싶다. 나라 안팎에서는 신문 등 소위 ‘올드 미디어’로 불리는 전통적인 뉴스매체의 위기가 한층 더해졌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매체들의 활로 찾기도 가속화됐다. 또한 각국 정부의 보도 통제 압박이 심해지면서 언론 본연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중국 정부의 ‘외신 길들이기’ 수위가 높아지자 일부 매체는 지나친 눈치보기로 ‘내부 검열’ 의혹에 휩싸였다. 서구권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사회로 꼽히던 영국에서는 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분삼아 자국 정보기관 활동을 폭로한 매체를 압박해 보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언론 독립성 ‘흔들’...각국 정부 압력 잇따라

스노든 사태와 영국 정부-가디언 갈등



미 국가안보국(NSA)의 정보활동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출처 : the guardian, "Edward Snowden, NSA files source:
'If they want to get you, in time they will',
2013년 6월 10일자)

올해는 세계 곳곳에서 정부 등 권력 기관이 언론 보도를 좌우하려는 시도가 잇따랐다. 지구촌을 ‘빅 브라더’ 논란으로 몰고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시활동 보도에 이은 영국 정부의 언론통제 논란이 대표적이다. 한때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으로 활동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NSA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기밀문서를 빼돌려 NSA의 대규모 감시활동을 폭로했다. NSA가 자국 주요 통신회사의 통화기록을 무차별 수집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와 함께 구글, 야후 등 인터넷 기업들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몰래 빼낸 정황, 우방국 정상 전화 도청 등이 잇따라 드러나며 사태는 외교 분쟁으로까지 비화했다.

이른바 ‘스노든 파일’을 토대로 NSA 활동 내역을 폭로한 서방 언론은 첫 보도를 낸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비롯해 미국 주요 일간지인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등 여러 곳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유독 가디언만 자국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영국 정부는 보도 초기부터 가디언이 자국 정보기관 활동을 보도해 국가 안보를 위협에 빠뜨렸다고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폐기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전면에서 나서 가디언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고, 영국 하원은 가디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앨런 러스브리저 가디언 편집국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영국 경찰 역시 가디언에 정부 기밀문서 유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경찰은 지난 8월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스노든 기밀문서를 특종으로 보도한 가디언지 기자 글렌 그린월드의 동성 파트너를 9시간 동안 구금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해 물

의를 빚기도 했다.

영국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언론계와 국제사회는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엔(UN)은 특별조사관을 파견해 그린월드 기자의 파트너 구금 사건을 조사하고 언론 통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프랭크 라튀 유엔 언론자유 문제 특별조사관은 “국가기밀 보호를 이유로 언론 보도를 제한하거나 언론의 인권침해 고발 활동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인권침해에 맞서는 언론인과 미디어 종사자, 비밀정보 취급자 등은 권력 기관의 위협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신문협회(WAN-IFRA) 역시 영국 정부가 가디언에 NSA 관련 자료 폐기를 요구한 것은 언론자유 침해이며 이런 행동은 영국의 언론 자유 수호 및 확대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당사자인 가디언도 사실 등을 통해 자신들이 NSA 자료를 책임 있는 방식으로 다뤘다면서 관련 보도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러스브리지 가디언 편집국장은 지난 12월 3일 하원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스노든 보도를 계기로 정보수집을 둘러싼 논의가 촉발됐다”면서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항변했다. 미국언론인협회(RCFP)와 AP통신, NYT, WP 등 미국 유력 언론들도 청문회에 앞서 영국 의회 서한을 보내 “가디언 보도는 정치인들을 화나게 했을 수는 있지만 대중에게는 중대한 문제를 알렸으며 이는 정확하고 깊이 있는 기사를 제공해야 할 언론인의 책무”라고 감쌌다.

中 정부, 서방 언론 통제 강화...블룸버그 ‘내부 검열’

중국에서는 서방 언론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도 통제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중국 정부가 자국 언론매체는 물론 자국 주재 외신기자들을 암암리에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 중국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원자바오 당시 총리 일가와 시진핑 현 총서기(당시 국가 부주석) 등 고위층의 축재 의혹을 보도한 블룸버그 뉴스와 NYT의 중문판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끊긴 상태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중국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나 매체에 대한 압박이 노골화하면서 중국 정부와 외국 언론사들 사이의 긴장이 더욱 고조됐다. 올해 1월에는 NYT 베이징 특파원의 비자 연장이 거부된 소식이 전해졌고 2월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NYT와 WP 등



미국의 감시활동을 폭로한 영국 가디언 지면
(출처 : 한겨레, 「이번엔 '가디언' 간부 조사까지」
영국 '스노든 보도' 탄압 점입가경, 2013년 8월 21일자)

미국 유력 언론 해킹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8월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증권판 사이트가 차단됐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비교적 호의적으로 보도해왔다는 평가를 듣는 월스트리트저널이 2002년 인터넷 증권판을 개설한 이후 전체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11월에는 블룸버그에서 중국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지 말라는 내부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NYT 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빚어졌다. 매튜 윈클러 편집국장이 중국 정부 고위층의 가족과 재계 유명인사의 유착관계 기사를 준비하던 자사 기자 4명에게 전화해 해당 내용을 더는 취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윈클러 편집국장은 이런 결정이 보도 통제가 심한 중국에서 최소한의 취재가 차단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기사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내부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블룸버그뉴스의 소유주인 마이클 블룸버그 미국 뉴욕 시장은 중국 비판 기사를 삭제하거나 내보내지 않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며칠 뒤 2012년 시진핑 등 지도부와 가족들 재산 문제 탐사보도를 이끈 블룸버그 홍콩지사의 마이클 포사이드 기자가 정직 처분을 당한 사실이 NYT 등을 통해 재차 보도되면서 논란에 더욱 불이 붙었다. 포사이드가 내부의 보도제한 지침을 언론에 흘린 인물로 지목돼 이 같은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블룸버그의 이런 ‘자기 검열’은 중국내 수익 감소와도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룸버그가 지

난해 중국 고위층 재산문제를 보도한 뒤 중국기업에 대한 뉴스단말기 판매 수익이 크게 줄었고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심기를 더는 거스르려 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의 서방 언론에 대한 압박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12월 초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방중 때에는 의회 취재단의 일원으로 수행취재에 나선 블룸버그 기자가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



중국 비판기사 보도금지 압력 행사 의혹을 받고 있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
(출처 : The New York Times, 「Bloomberg Says News Service Did Not Kill Articles on China,」
2013년 11월 12일자)



2013년 12월 5일 베이징을 방문한 조 바이든(오른쪽, Joe Biden) 미국 부통령과 리커창(왼쪽, Li Keqiang) 중국 총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출처 : New York Post, 「Chinese eye expelling NY Times, Bloomberg reporters」, 2013년 12월 5일자)

기자회견장 취재를 금지당해 영국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 직 전에는 중국 당국이 베이징과 상하이의 블룸버그 사무실을 ‘불시조사’ 형식으로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중국 정부가 NYT와 블룸버그 소속 기자들의 비자 연장을 계속 거부하자 12월 5일 베이징을 방문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며 이례적으로 중국 정부를 공개비판하기도 했다.

1982년 개혁개방 노선을 택한 중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 언론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조금씩 외국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2011년 중동권에서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가 발발하자 자국 내 민심 동요를 우려해 온·오프라인 상의 통제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중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말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 강도가 더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에 진출한 언론사들이 수익을 확대하면서 언론 본연의 기능을 동시에 추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 비밀보호법 제정…‘알 권리’ 침해 논란

또 다른 이웃 일본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 안보 관련 주요 비밀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을



일본 비밀보호법 제정을 축하하며 박수를 치고 있는 자민당 의원들
(출처: 연합뉴스, 「일본 비밀보호법 제정」, 2013년 12월 7일자)



비밀보호법 통과에 반대하는 일본국민들의 반대시위 모습
(출처: 일본 레이버넷, 「主権者はわたしたち ~100%違憲の「秘密保護法」は認めない!」, 2013년 12월 8일자)

추진해왔다.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여기에 ‘특정 기밀’ 지정 권한을 행정기관장에게 주고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론상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언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이 때문에 비밀보호법이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공직 사회의 내부 고발도 봉쇄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논란 속에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법 제정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의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10월 들어 법안이 심의 등 의회 통과 절차를 차례로 밟아가자 진보성향 신문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사히, 도쿄, 마이니치, 요미우리 등 주요 일간지들은 사실을 통해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특히 아사히신문은 10월 30일자 지면에 총리 동정을 군데군데 먹칠해서 신는 파격을 보이기도 했다. 총리 동정 역시 ‘특정 기밀’에 해당한다며 비밀보호법안을 풍자한 것이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응답이 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각계각층의 반대 목소리도 잇따랐다. 일본 법대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270명을 시작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 269명,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 학자들이 결성한 ‘특정비밀보호법안 반대 학자 모임’ 소속 2천여 명 등이 잇따라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처럼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일본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12월 6일 표결에서 비밀보호법을 여유 있게 가결시켰다. 의회 과반을 점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강행처리한 것이다. 법안에 반대해온 민주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중의원에 제출하는 등 강수를 뒀으나 역시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런 양상을 두고 일본 안팎에서는 아베 정권이 본격적인 ‘힘의 정치’를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도통신은 아베 정권이 “정권출범 1년을 눈앞에 두고 국가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아베 노선’에 매진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분석했다.

종이신문의 몰락?...올드미디어 ‘생존투쟁’ 이어져

‘전통 명가’ 워싱턴포스트 매각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초 언론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소식이 태평양을 건너 전해졌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세계 최대 인터넷 소매업체 ‘아마존닷컴’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조스(49)에게 2억 5천만 달러에 매각됐다는 뉴스였다. 13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WP는 뉴욕타임스(NYT)와 더불어 자타공인 ‘미국 최고 신문’이라는 명성을 유지해온 신문으로, 특히 정치 부문에서는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매체다. 미국 언론 역사상 최고의 특종으로 꼽히는



워싱턴포스트를 인수한 ‘아마존닷컴’ 최고경영자 제프 베조스(출처 : CNN Money, 「Jeff Bezos」, 2013년 8월 5일자)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와 최근 국가안보국(NSA)의 기밀 감시프로그램 폭로 보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특종 기사를 만들어내며 풀리처상만 47개를 받은 WP의 매각에 전 세계 언론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WP의 주인이 바뀐 것은 종이신문 판매부수 감소와 광고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난이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인터넷뉴스가 일상화된 언론환경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는데 실패한 것이다. 최근 7년간 계속 매출이 줄어드는 동안 WP가 마냥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최근 수년간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지난해에는 편집장까지 바꿨으며 올해 들어서는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 있는 본사 사옥 매각을 추진하며 경영난을 해소하려 했다. 매각 직전에는 전력과 산업용 보일러 생산업체를 매입해 사업 다각화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주력사업인 종이신문 판매부수 급감에 따른 위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작년 WP의 손실은 5천 400만 달러(604억 1천만 원)였고, 매출은 5억 8천 200만 달러(6천 500억 원)로 7년 전보다 39%가 쪼그라들었다. 방송, 온라인, 교육 등 이른바 신수종 사업(편집자 주 : 기업의 미래 육성 사업)에서 영업이익을 내기는 했지만 종이신문의 손실이 이어지면서 부수업종이 주력업종을 먹여 살리는 상황이 계속됐다. 인터넷매체 등 신생 언론들이 계속 시장을 잠식하면서 광고마저 크게 줄었다. 올해 7월 야심차게 인터넷판 유료화를 단행해 일부 호평을 받기도 했지만 실적 회복에는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결국 매각이라는 최후의 선택에 내몰렸다. WP는 인수 발표 당일인 8월 5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지난 10여 년간 금융위기로 신문산업이 불황을 맞으면서 종이신문은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인터넷과 디지털기술의 부상으로 전통적 언론사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인정했다.

종이신문으로 대변되는 ‘올드 미디어’의 몰락은 어제오늘의 일도, WP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타임에 이어 미국 2위의 시사주간지로 평가되던 뉴스위크는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부터 가속화한 부수 급감과 부채 누적을 이겨내지 못하고 2010년 거저나 다름없는 1달러에 팔렸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다. 종이 잡지 발행은 작년 12월 31일 중단됐고 올해부터는 온라인 잡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판을 성공적으로 유료화했다는 평을 듣는 NYT도 올해 8월 자매지 보스턴글로브를 미국 프로야구팀 보스턴 레드삭스의 구단주 존 헨리에게 파는 등 부수적 자산을 매각하고 ‘선택과 집중’을 꾀하고 있다. 미국 미디어그룹 트리뷴도 올해 7월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 시카고트리뷴 등 계열사 신문부문 분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11월에는 경영난을 이유로 신문사 인력 7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Award-winning journalism. Award-winning apps.
Try The Times Digital Experience for **just 99¢.**



Promotional offers for new subscribers only. Smartphone and tablet apps are not supported on all devices. Does not include e-reader editions. Premium Crosswords or The New York Times Crosswords apps. Prices shown are in U.S. dollars. Other restrictions apply.

Choose the subscription that's best for you.

	FIRST 4 WEEKS	EVERY WEEK THEREAFTER
☒ NYTIMES.COM + SMARTPHONE APPS Unlimited access to NYTimes.com and the NYTimes smartphone apps. See details	99¢	\$3.75
☐ NYTIMES.COM + TABLET APPS Unlimited access to NYTimes.com and the NYTimes tablet apps. See details	99¢	\$5.00
☐ ALL DIGITAL ACCESS Unlimited access to NYTimes.com and the NYTimes tablet and smartphone apps. See details	99¢	\$8.75

CONTINUE ▶

More subscriptions from The Times.



Home Delivery
Get 50% off 12 weeks, including unlimited access to NYTimes.com and more.



Digital Gift Subscriptions
Give unlimited access to NYTimes.com and more for as low as \$30.



Education Rates
See our special offers for educators and students.



Corporate Programs
Learn how companies can save with corporate digital subscriptions to The Times.

뉴욕타임즈 인터넷판 유료화 광고 안내(출처 : The New York Times 홈페이지[www.nytimes.com])

WP 인수한 아마존 베조스...이베이 창업자는 독립언론 창간

종이신문 시대를 풍미한 WP를 IT(정보기술)업계의 스타 베조스가 인수한 것은 다분히 상징적이다. 개인 자금으로 WP를 사들인 베조스는 1994년 시애틀에서 혈혈단신으로 창립한 아마존닷컴을 ‘공룡’으로 키운 입지전적 인물이다. 인터넷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은 현재 전자제품, 의류, 가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물품을 취급하며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한 전자책 리더기인 ‘킨들’로 출판업계에서도 혁신을 몰고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산 규모는 올해 현재 252억 달러로 포브스지 선정 세계 19위. 하버드비즈니스리뷰의 ‘2013년 세계 100대 CEO’ 순위에서는 고(故) 스티브 잡스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베조스 개인에 대해서는 드러난 사실이 많지 않다. WP를 소유해온 그레이엄 가문과 수년간 친분을 유지해왔고 지난해에는 워싱턴주에서 동성결혼 지원자금 250만 달러를 쾌척하는 등 진보·자유주의 성향을 가졌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새로운 독립언론사를 창간할 예정인 이베이 창업자 피에르 오미디아
(출처 : PressGazette, 「Threat to press freedom prompted eBay billionaire to commit \$250 million to new journalism organisation」, 2013년 10월 17일자)

베조스가 WP의 구원투수로 자리 잡으며 신문업계의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지는 이제 전 세계 언론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종이신문의 위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아마존닷컴의 유통망과 킨들과 같은 미디어기기가 WP의 콘텐츠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개인의 입맛에 맞춰 책이나 물건을 찾아주는 아마존의 고객성향 분석기법이 신문사업에서도 효과를 낼 지도 주목된다. 물론 IT와의 접합이 신문산업에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당장 WP의 사업적자를 해결하는 것부터 난관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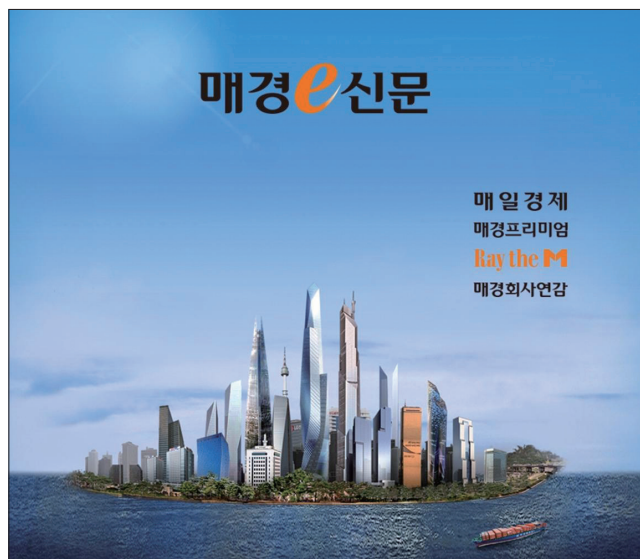
매출도 당분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광고로 급감하는 인쇄광고 매출을 메우기 어렵다는 점도 고민할 대목이다. 이런점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베조스의 WP 인수를 두고 비영리기관에 대한 투자에 가깝다고 평하기도 한다. 베조스는 자신도 9월 WP 인수 이후 이 신문과의 첫 인터뷰에서 자신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마법사'는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이 신문이 다시 날아오를 '활주로'를 제공하겠다면 "독자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인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온라인 경매사이트 이베이의 창업자인 피에르 오미디아(46)는 올해 10월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독립언론사를 창간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태생의 이란계 미국인인 오미디아는 1995년 창업한 이베이를 세계최대 온라인 경매업체로 성장시킨 또 다른 IT 거물이다. 85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해 포브스 조사에서 미국 개인부자 순위 47위, 세계 순위에서는 123위에 올라 있다. 자선투자기관 오미디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사회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뒀던 그는 WP 인수도 검토했으나 새로운 미디어기업을 만드는 쪽으로 기울었다. 오미디아는 창간할 매체에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제보를 토대로 가디언에서 NSA의 정보수집 행위를 최초로 보도한 글렌 그린월드 기자도 가세해 화제를 모았다. 아직 초기단계로 이 매체의 형태는 베일에 가려있지만 종이판이 없는 디지털 매체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탐사보도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 독자를 위해 정치와 스포츠 등 일반 뉴스도 다룰 전망이다. 오미디아는 새 미디어 창간을 알리면서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린월드 기자와 함께 언론인들이 진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에 눈을 돌린 IT업계 인사는 이 뿐만이 아니다. 7월에는 스티브 잡스의 부인 로런 파월 잡스가 뉴스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오지 미디어’(Ozy Media)에 투자했다. 이 투자에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엔젤투자가 론 콘웨이, 구글의 최고법률책임자 데이비드 드러먼드 등도 참여했다. 또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즈는 진보 성향의 주간지 ‘더 뉴 리퍼블릭’(The New Republic)에 투자하고 뉴스자료를 모아주는 사이트 ‘업워시’(Upworthy)에도 자금지원을 했다. NYT는 실리콘밸리의 대규모 자원과 신선한 아이디어, 열정이 언론계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자금 투자에 머무르지 않고 뉴스비즈니스의 혁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서도 화두는 ‘생존’…채동욱 보도로 윤리논란도

한국 언론계의 현실도 WP가 매각된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판매부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온 신문업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료화에 나서면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매일경제가 9월 ‘매경e신문’으로 스타트를 끊었고 10월에는 한국경제가 초판 가판 발행을 중단하고 유료 디지털 서비스 ‘한경+(플러스)’를 내놓았다. 중앙일간지 가운데에는 조선일보가 11월 초 ‘프리미엄 조선’ 서비스로 뉴스 유료화에 들어갔다. 이밖에 내일신문과 전문지인 미디어오늘도 유료화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 언론사는 3천 원부터 1만 5천 원 가량의 월구독료를 받으면서 취재 뒷이야기나 집중취재, 명사인터뷰와 칼럼, 기업투자정보 등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겠다는 의도다.



2013년 9월 2일, 국내 언론사로는 최초로 온라인 유료 서비스를 런칭한 매경e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
(출처 : 매경e신문 홈페이지[digital.mk.co.kr])

하지만 신문사들의 유료 콘텐츠가 아직까지는 ‘독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이어서 온라인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나아가 지갑을 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올해 상반기 신문업계를 달군 이슈인 조선·중앙일보의 연합뉴스 전재계약 해지도 뉴스 유료화와 맞물려 있다. 신문사들은 표면적으로는 전재로 인하를 내세웠지만 핵심 요구사항은 연합뉴스가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온라인판 유료화로 활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각 분야 기사를 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연합뉴스가 걸림돌이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연합뉴스에서는 속보 보도 중심인 반면 신문사들은 각자 ‘브랜드’를 바탕으로 심화 콘텐츠를 유료화한다는 전략이어서 목표지점 자체가 다르다고 항변하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가 4월 뉴스스탠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개별 신문사 홈페이지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급락한 것도 신문사들의 위기의식을 부채질하며 뉴스 유료화에 잔결음을 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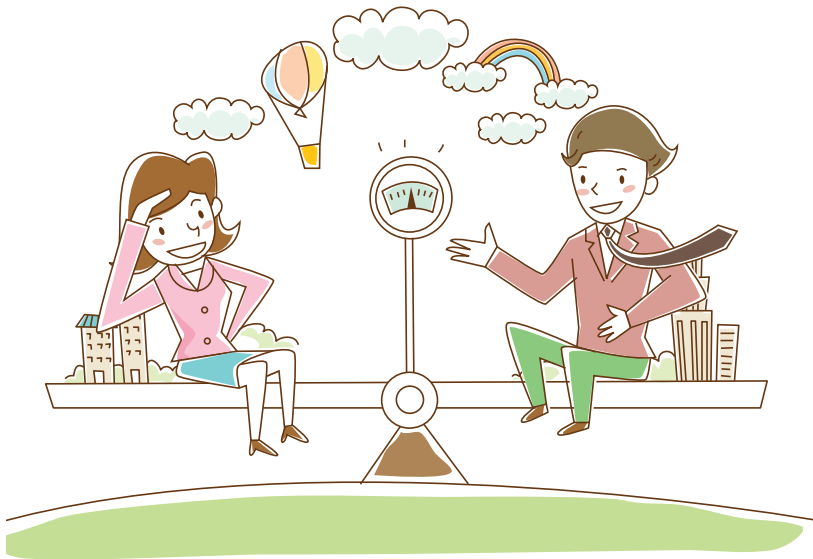
신문들이 이처럼 활로 찾기에 골몰하는 가운데 비영리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재벌총수 등의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 의혹을 5월부터 차례로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를 비롯해 이수영 OCI 회장, 최은영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 김석기 전 중앙증권 사장 등 한국인 180여 명의 탈세 내역을 공개, 대안언론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조선일보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식 보도는 기존 매체들의 취재윤리와 언론 본연의 역할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권력자의 부도덕에 대한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호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는 명확한 증거 없이 학적부나 주변인 진술 등 ‘정황’만을 가지고 단정적인 보도를 했다. 채 전 총장 등 당사자들 입장도 반영되지 않았고 보도과정에서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상당수 매체가 무분별하게 ‘의혹 보도’에 동참했으며 동아일보는 ‘채동욱 아버지 전상서’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정부와 특정 보수언론이 정국의 초점을 의도적으로 흐리려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씁쓸함을 남겼다.

남성 소외감을 관리하는 남녀평등 정책을 지향할 때



글.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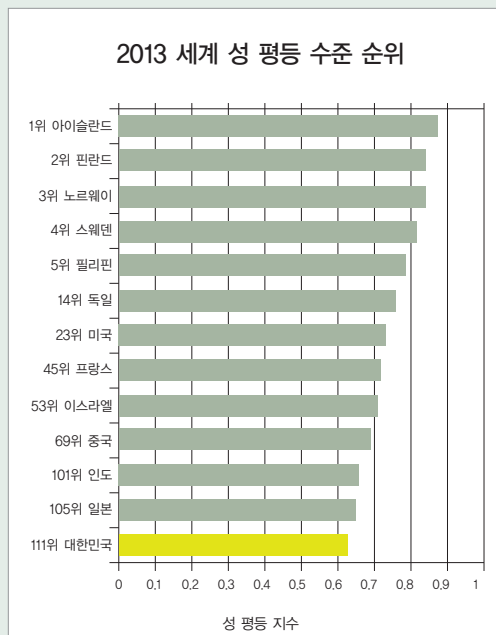


솔직히 말해 요즘 한국 여성들은 꽤 살만해졌다. 지난 20여 년간 유사 이래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여성에 대한 인식이 바뀐 시기는 아마 없었을 거다.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했

던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은 ‘마초’가 지배했다. “어디 여자가 함부로…”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공공연히 쓰였다. 성희롱은 대놓고 이루어졌고, 여성들은 그걸 사회생활의 고충 중 하나로 받

아들일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불과 20년 만에 천지가 개벽하게 달라졌다. ‘여자가...’ 어떡쿵 하는 말은 입에 올리는 순간 탄핵을 당하고,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 여성을 어쩌다 한 송이 핀 꽃처럼 취급하던 직장들에도 여성들이 물밀 듯 밀고 들어가 여성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다. 이 놀라운 변화만 보면 마치 대한민국에 ‘여성의 시대’가 온 듯한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



한데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13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13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in 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 격차 지수(GGI)는 111위였다. 지난해보다도 3계단 하락한, 한마디로 바닥권이다. 이 발표가 나자마자 한국 남녀평등 수준은 아랍권이라는 말이 나왔다. 우리 앞뒤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 109위), 바레인(112위) 등이 둘러싸고 있어서 나온 비유다.

이 보고서는 매년 나오고, 우리나라는 100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올한 다른 때보다도 좀 유별나다싶게 많이 인용되고, 매체마다 우리나라 여성 지위의 후진성을 다루며 각성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가하면 여성가족부는 이 보고서를 놓고 조목조목 분석하는 정책브리핑 자료를 냈다. 한데 이 브리핑 내용은 각성 내지는 반성보다는 반박 혹은 해명에 가까웠다. 일부 통계가 2012년 통계였다거나 일부 통계기준이 우리와 달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다음과 같은 브리핑의 마지막 대목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성 격차지수가 낮

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각 분야의 실질적인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마련하여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재취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에 따라 대상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기업맞춤형 직업교육훈련(OJT)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대통령 시대에 정작 여성의 평등 수준은 바닥권이라는 게 정부의 관점에선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 같다. 더욱이 새 정부의 슬로건이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었고, 여성 지위향상을 중점관리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더니 그로부터 며칠 후엔 강창희 국회의장이 ‘동일임금의 날 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 특히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

차가 OECD기준 39%대로 심각하다는 점에서 우선 임금격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책적 해결의지를 모으기 위해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실 남녀관계에 대한 인식과 겉으로 보이는 사회적 지위는 지난 20여 년간 괄목하게 달라졌지만, 여성의 열악한 경제적 지위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뼈뼉하게 말하자면 그동안 여성 정책은 돈 안 드는 쪽으로 치중하고, 여성에게 돈 되는 경제활동 인식 개선 등엔 별 성과가 없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다.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된 통계는 민망할 정도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54.9%였다. OECD평균(61.8%)보다 현저히 낮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인 시대에 20~29세 사이에선 여성 취업률이 높지만 30세 이후부터는 역전된다. 이는 젊은 여성이 비정규직을 채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열악한 취업구조 탓에 여성근로자 임금 수준은 남성의 44% 수준이다. 대졸 이상 여성도 57%에 불과하다. 여성임원, 정치인 등 고위직 진출 비율은 너무 미미해 거론할 것도 못 된다. 어쨌든 정치권은 이런 경제적 격차와 여성 고위직 진출 문

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와 남성우월의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식으로 대체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남녀평등의 현주소는 WEF 보고서가 지적했듯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남성사회의 소외감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공격성으로 표출되고, 다른 하나는 건초남·초식남으로 불리는 무기력한 남성성으로 표출된다. 지난여름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투신 퍼포먼스 사고로 사망한 것도, 이로부터 사이버 세상에서 불거진 남녀 간의 다툼도 여성혐오증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 무기력한 남성의 증가는 사회 활력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과 노력이 진행될 때 남성의 소외감 관리와 가부장적 의식해체 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말하

자면 이젠 여성 문제에 대한 접근이 과거 페미니즘 운동 당시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가정 병립' 만큼 '남녀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언론·교육계 등이 남녀평등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는 작업에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영국의 언론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영국화 뉴스이슈와
영국인 신문개혁



글. 송동현
런던 골드스미스 칼리지
미디어&커뮤니케이션스
박사



레비슨 청문회(출처 : the guardian, 「Cameron is right about Leveson. This is a Rubicon we must not cross.」,
2012년 11월 30일자)

레비슨 청문회 배경 및 경과

2011년 6월 실종된 밀리 도울러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이 뉴스오브더월드시 기자에 의해 해킹 및 삭제된 사건이 가디언지에 보도되었을 때 영국사회는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었다. 제임스 카메론 영국 수상이 같은 해 7월 13일 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레비슨 판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청문회(Leveson Inquiry)가 구성되었으며, 2011년부터 2012년 연말까지 총 4부에 걸쳐 진행되었다. 4부로 구성

된 청문회는 각각의 주요 조사 사항으로 구분되었다. 1부에서는 신문사의 대중 기만 여부를, 2부는 신문사와 (경찰 등의)공권력 사이의 유착여부를, 3부는 신문과 정치계 사이의 유착관계를, 4부는 신문사들의 윤리의식 문제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80주에 걸쳐 650명의 증인 출석 및 6,000 페이지 분량의 증거 자료를 생산해내는 동안 청문회는 수많은 정관계 관계자, 문제 언론인, 언론관련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며 신문사의 비윤리적인 취재 행태, 정경유착 등을 포함한 영국 언론계의 총체적 문제를 밝혀냈다. 이러한 문제는 레비슨 판사가 지적한 대로 영국에서 언론의 자율규제가 시작된 이래 독버섯처럼 자라난 '70년 동안의 걸치레식 자율규제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으며 영국이 해결해야하는 당면과제를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다.



가디언지가 보도한 뉴스오브더월드지의 해킹사건(출처 : Mirror, 「Press control: Do you want to be the man who destroys the essence of free speech, Mr Cameron?」, 2012년 11월 29일자)

2012년 11월 29일 발표된 최종보고서에는 47개의 권고사항이 담겨 있었다. 그 중 38개의 권고사항은 언론자율규제시스템 내에서의 무능, 새로운 규제기관의 필요성과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레비슨 판사는 영국 언론계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였고 이로 인해 공중의 이익과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레비슨 최종보고서(출처 : Mirror, 「The key to a fair and free press is the difference between two Royal Charters – Voice of the Mirror」, 2013년 4월 26일자)

밝혔다. 그는 또한 이러한 자율규제 실패에는 영국 언론분쟁처리기관인 언론고충처리위원회(Press Complaints Commission, 이하 PCC)가 설립 본연의 임무수행에 실패하였고, 이에 새로운 규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서술하였다. 청문회 기간 동안 ‘이빨 없는 호랑이’였다는 악평을 들어야 했던 PCC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재원을 언론계에 의존하며 현직 언론 편집인으로 기관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 상에서 PCC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PCC는 불만처리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레비슨 판사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서 그는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PCC는 사건 처리 시에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인권법(s12 Human Right Act 1998)과 데이터보호법(s55 Data Protection Act 1998)보다는 언론사들에게 쏟아질 비난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언론사의 기사들을 수정했던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PCC를 언론사들의 이익집단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종보고서에서 레비슨 판사는 외부감사 방식이 아닌 독립적인 규제시스템에 공간을 두고,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정재계로부터 독립된, PCC를 대체할 새로운 규제기관 신설을 역설한다. 정재계로부터 독립된 기관의 설립을 역설한 레비슨 판사의 의중은 PCC의 70년 역사를 볼 때 언론업계에 새로운 기관의 설립이나 운영을 맡기기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결론과 새로운 규제기관이 정부에 소속될 시 국가규제기관으로 오인될 소지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레비슨 판사는 새로운 규제기관의 설립이 저널리즘 및 기자들을 정치권의 영향아래 놓게 되

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재계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의 설립을 위한 새로운 법령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법령의 설립은 새로운 규제기관을 설립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이 레비슨 판사의 주장이며, 미디어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에게 감시기관의 임무를 부여하여 새로운 규제기관이 효율성이 있는지 정치권으로부터는 자유로운지에 대해 평가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레비슨 최종보고서에 담긴 의미와 의도, 언론개혁에 대한 영국국민의 희망은 그 후,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한 정치·언론계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퇴색되기 시작한다.



영국의 미디어 규제기관 OfCom 본사 전경(출처: the guardian, 「News Corp lays ground for judicial review of BSkyB verdict」, 2011년 1월 25일자)

새로운 신문규제안을 둘러싼 의회와 언론계의 대립

레비슨 청문회 최종보고서 발표 후 카메론 수상은 위에서 언급한 레비슨의 기본 주장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법령의 수립이 자칫 국가주도적 언론규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주요 세 정당(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들이 순차적으로 오프콤의 감시기관 수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레비슨이 권고한 주요사항들은 채택되지 않는 분위기로 흐르게 된다.

레비슨 청문회 보고서 발표 후, 정치·언론계 간의 갑론을박 논의는 지속되었고 소모전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 레비슨 보고서 권고사항의 실효성을 두고 진행된 정당간의 한 토론과정 중 대안적 방안이 제기되었는데, 바로 의회에서 법률제정을 하는 것 대신 왕실자문위원회(추밀원, Privy Council)의 감독 하에 왕실칙령(Royal

Charter)을 근간으로 한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왕실칙령은 영국역사상 의회구성이 있기 전, 심지어 군주정이 있기 전인 13세기부터 존재했다. 현재까지는 약 900여 개의 왕실칙령이 있다. 왕실칙령은 왕실 특권의 산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다른 법률과는 다르게 의회의 동의 없이도 추밀원의 승인만을 얻어 그 효력을 인정받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정당들은 새로운 언론법의 제정이 필요 없는 왕실칙령을 근간으로 한 규제기관 설립에 합의한 후 레비슨 보고서의 권고사안을 충족시킬 왕실칙령의 초안을 2013년 3월 18일 발표한다.

정부의 왕실칙령 초안은 어떠한 형태로든 새로운 규제기관은 레비슨 최종보고서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한다는 기본전제 아래 세 개의 기능을 수행해야하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1. PCC와 같이 불만사항 중재임무 수행
2. 언론기관의 불만사항 처리의 미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임무 수행
3. 접근이 용이하며 소송 시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인의 (민사상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기구임무 수행

이와 더불어 정부가 작성한 칙령 초안에서는 새로운 규제기관이 처벌의 권한도 가지게 된다. 초안에는 새로운 규제기관이 언론사에게 직접 정정·사과보도를 요구할 수 있고 백만 파운드(한화 약 17억)내에서 출판물의 매출액 중 1%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기관에게 사전에 기사의 보도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러한 권한은 법원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이러한 왕실칙령 초안에 대한 실천방안 및 규제의 흐름인데, 여기서 언급되어야 할 것 중 하나가 ‘범죄와 법원 2013년 법’(The Crime and Courts Act 2013)이다. 이 법은 왕실칙령의 새로운 언론규제시스템을 인정하고 사인을 한 출판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사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이란, 새로운 언론규제시스템에 동의하는 사인을 한 언론사가 추후 자신이 보도한 기사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악의적 거짓말 등의 이유로 민사소송에 회부되어 패소할 경우 법적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비싼 법적비용 때문에 저널리스트들은 오랫동안 부유한 사람·기관 등으로부터

의 소송에 취약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편집인과 언론사 대표들은 때로는 스스로 기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신문사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기사를 수정 혹은 게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담해야 할 법적비용이 낮아지면 저널리스트들이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그들이 보도한 기사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변호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 사인을 하지 않은 언론사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법적비용을 일부 보전받을 수 없다는 것도 언급했는데, 즉 의회의 의중은 한손에 왕실칙령의 채찍을, 다른 한손엔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언론계 보호라는 당근을 쥐고 언론을 개혁하려는 것이었다.

정부의 언론개혁안을 정리하자면, 추밀원에서 승인이 난 왕실칙령은 의회의 승인이나 법의 개정 없이 즉시 효력을 가지며, 정부는 곧바로 규제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감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새로운 언론규제시스템의 변화를 수궁하는 언론사는 ‘범죄와 법원 2013년 법’에 의해 자신들의 기사로 인한 민사소송 회부 및 패소 시 법적비용을 감면받는 것이 골자이다.

폰 해킹 피해자의 모임인 해크드오프(Hacked Off) 그룹, 가디언지, 인디펜던트지는 정당들이 만든 초안의 내용을 환영하고 지지했으나, 그 외의 신문사들, 특히 뉴스스페이스 소사이어티를 포함한 거대 신문사들은 이러한 초안의 내용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초안의 칙령화에 대해 자신들의 신문을 이용해 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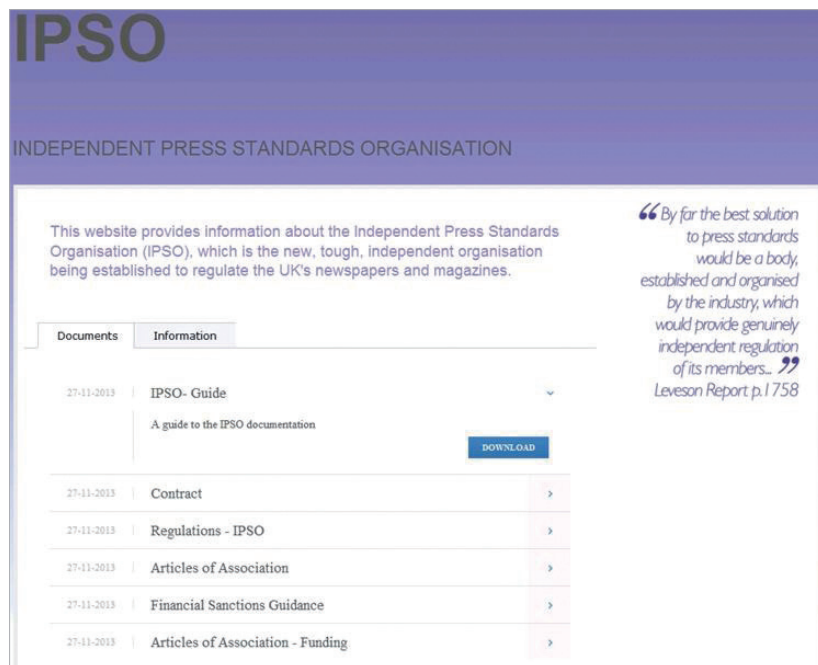
영국 정치권이 언론규제기관을 왕실칙령으로 만들기로 합의한 것을 알리는 미래지 1면

(출처 : the guardian, "Press regulation – hostile newspaper editors keep their powder dry", 2013년 3월 19일자)

정당간 합의로 만든 칙령이 언론계를 발각 뒤집어 놓은 후, 타임지, 데일리 미러지, 데일리 텔레그래프와 같은 거대 신문사들은 정당 리더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및 그들이 원하는 칙령인 라이벌 칙령(Rival charter)을 4월 25일 스스로 공개 발표했다. 라이벌 칙령은 의회의 칙령 초안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지만 상당 부분에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두 초안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이슈로 부각된 것은 새로운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지키는 방식, 새로운 규제기관을 감시할 감시기관 조사패널들의 임명방식, 그리고 기관의 주요 기능들을 위한 다양한 조례들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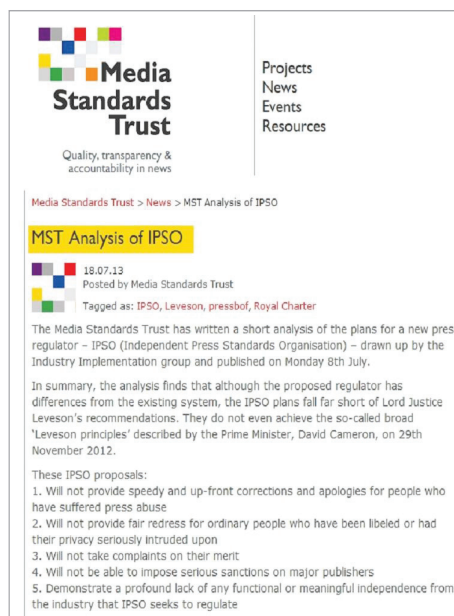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PCC를 대체할 독립언론표준기구(2013년 5월 1일 설립, the 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sation, 이하 IPSO)에 대한 설명이다. 언론사의 라이벌 칙령이 정당의 칙령 초안과 다른 부분은 라이벌 칙령에는 IPSO가 기사 보도 전 수정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총 4명의 IPSO 감시위원 중 언론계를 이해하고 대표할 수 있는 언론계 출신 심사위원 1명을 언론계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즉, 언론계에서 제안한 칙령은 언론계의 직접적 참여와 영향력을 담고 있다는데서 정당이 제안한 칙령과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IPSO 메인 웹사이트(<http://www.ipso.co.uk>) 캡처

또한 언론계는 의회 초안에 명시된 칙령 수정요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뜻을 라이벌 칙령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의회의 초안에는 의회의 3분의 2가 찬성 시 칙령을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반해, 언론사의 라이벌 칙령은 이는 언론탄압이라며 의회의 칙령 수정요건을 자신들의 칙령에서 제외시킨다.

언론사들의 라이벌 칙령의 문제는 단순히 신문업계와 정당간의 대립을 넘어 신문업계와 시민단체들과의 대립으로 번지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저하되는 저널리즘 정신에 대한 우려로 2006년 설립된 시민단체인 미디어 스탠다드 트러스트(Media Standards Trust, 이하 MST)는 라이벌 칙령의 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MST는 감사보고서에서 언론사의 칙령 초안은 레비슨 보고서 38항 중 12항만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MST는 라이벌 칙령안의 IPSO는 독립기관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유는 IPSO의 경우 재원, 행동규범, 규율, 조사권을 언론계에서 관장한다면 언론에 제도화되기 쉽고, 일반시민을 법적구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중재시스템을 향상시켰다고 언급은 하지만 레비슨의 권고사항에 비교하여 기준미 달임을 지적한다.



MST가 발표한 IPSO 감사보고서 내용
(출처 : MST 홈페이지[mediastandardstrust.org])

보고서 중 논란이 되었던 사항 중 하나는 저비용으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신설하는 것이었다는데, MST는 언론의 라이벌 칙령에서 언급한 IPSO는 이러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IPSO는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PCC와 같이 단순한 불만을 처리하는 중재자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레비슨 최종보고서(페이지 1,576)에 나와 있듯이 PCC의 재정과 설립 및 임원 임명이 PressBof(the Press Standards Board of Finance)의 영향력 안에 있었기에 PCC를 독립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MST는 IPSO의 플랜은 지난 PCC와 PressBof의 악연을 되풀이하려한다고 비판한다. 그 이유는 PressBof의 후임으로 설립될 기관에게 전보다 더 많은 권한과 권력을 주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레비슨 청문회 최종

왕실, 의회의 손을 들어주다

언론계는 의회의 왕실칙령 비준을 막기 위한 라이벌 칙령 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의도대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여왕은 추밀원 모임에서 정부의 최종 칙령 안에 그녀의 낙관을 찍음으로써 의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칙령은 언론계가 추진 하던 칙령과는 반대편에 있는 것이었다.

여왕의 칙령승인이 있기 몇 시간 전, 신문사들의 대표들은 고등법원을 방문해 추밀원 공청회를 중지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하려했다. 신문업계에서 만든 칙령 초안이 부당하게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밀원이 신문업계의 칙령 초안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다며 공청회 중지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국 의회 건물에 비춰진 Hacked off 광고

(출처 : the Telegraph, 「So this is what press regulation looks like.」, 2013년 4월 21일자)

해킹피해자의 모임이었던 핵트오프(Hacked Off)는 의회의 왕실칙령 통과를 반기며, 왕실칙령이 언론인에게 유익한 4가지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시스템은 저널리즘을 저해하는 편집인과 언론소유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2. 새로운 시스템은 정치의 압력/통제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3. 언론인들(저널리스트들)은 법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4. 왕실칙령에 의해, 규제기관은 프라이버시와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저렴하고 빠른 중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언론계의 급진적이고 강력한 주장을 담은 라이벌 칙령을 공표하고 법원에 추밀원의 공청회 중지를 신청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던 것은 아니다. 사실 언론계의 강한 반발과 급진적인 행동은 정부가 만드는 최종 칙령의 콘텐츠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언론계의 주장으로 인해 왕실칙령 최종본의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된다. 추밀원에 보고하기 전 의회는 언론계를 고려해 칙령을 완화된 수정안을 공표했다. 정치인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칙령의 수정은 앞으로 심사기관의 이사회 만장일치뿐 아니라 의회 3분의 2의 찬성의견을 받도록 한 것이 그 수정안의 예라 할 수 있다.

언론계는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정부의 왕실칙령 승인에도 불구하고 왕실칙령에서 계획된 새로운 언론규제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도전으로 받아들일만한 IPSO 웹사이트 최종본을 발표하고, 지역·지방 신문사 및 잡지사들이 이 왕실칙령에 사인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IPSO 추진계획안에 사인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즉, 왕실칙령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들만의 새로운 규제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작전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IPSO는 현재 새로운 패널구성을 마쳐가고 있으며, 2014년 초에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기존 PCC 대부분의 직원들은 IPSO로 옮길 예정이고 디렉터만이 새로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언론계의 급진적 행동에 정부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리아 밀러(Maria Miller) 문화부 비서는 언론계가 왕실칙령에 사인하는 것 없이 IPSO시스템에 합의 사인을 하는 언론사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인정하며, 대신 IPSO가 왕실칙령의 테두리에 있는 한 괜찮다는 공식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 이는 정부가 언론계를 중재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레비슨 청문회 이후의 후유증이 남긴 것

11월 28일은 레비슨 청문회가 열린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영국 언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규제였던 신문법이 1695년 폐지된 후 가장 큰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레비슨 청문회는 분명 거대자본을 가진 신문사의 비윤리적인 기사수집 행태 및 정경유착에 대한 철저한 조사, 올바른 언론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공이 크다. 물론 공정한 저널리즘을 지키려 노력했던 소수의 신문사들, 특히 중·소 지역언론사들도 존재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레비슨 청문회 최종보고서의 권고사항이 발표된 후, 이러한 신문사들은 의회에서 제안된 왕실칙령에 많은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지, 거대신문사들만이 이러한 왕실칙령이 저널리즘 행동·윤리를 규제하기 위한 악법이 될 것이라 주장하며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저항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청문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레비슨 판사와 청문회의 목적과 범위
(출처 : the Telegraph Graphic of the day(www.telegraph.co.uk))

왕실칙령은 언론개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런던 골드스미스 컬리지의 데스 프리드만(Des Friedman) 교수는 왕실칙령과 관련되어 일어났던 정치적인 행동들은 민주적으로 공평하지 않은데, 가장 최악인 부분은 바로 공중(대중)의 참여 및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다는 것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최

중 왕실직령은 폰 해킹피해자 및 다른 언론의 피해자를 위한 방향이 아니었고, 다만 언론계 연합의 압력에 타협을 한 결과문이라 비판하고 있는데, 왕실직령이 영국 언론의 소수독점을 막을 방법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리버풀 존 무어 대학의 크리스 프로스트(Chris Frost) 교수는 '레비슨 이후?'(After Leveson?)란 자신의 저서에서 주장하길 '레비슨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소수의 거대 신문사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관점으로 수백만 명의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행한 권력 속성의 추악함'이라 언급하고 있다. 그는 또한 표현의 자유와 다원적(pluralistic) 관점을 추구해야하는 영국 언론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거대 언론의 소유구조 문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문업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지 말고 정확히 다른 이와 평등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한다고 주장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언론보도의 자유와 등가 시 되고 있는 영국의 언론개혁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레비슨 청문회 이후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또 하나는 영국의 언론계는 정치계가 규제하기엔 너무나 강력해 졌다는 것이다.



Liverpool John Moores university의 Chris Frost 교수가 쓴 'After Leveson?'

이탈리아 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인가?



글. 최을영
작가



2013년 11월 27일, 세금포탈 혐의로 의원직 박탈을 앞두고 있는 이탈리아 전 총리 베를루스코니가 로마의 자택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뉴스1, 「베를루스코니 정치생명 끝나는가」, 2013년 11월 28일자)

Silvio Berlusconi



2012년 12월 정계 복귀를 선언한 이탈리아 전 총리 베를루스코니가 2013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자유국민당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출처 : 로이터, 「Possible Berlusconi comeback is nightmare for Merkel」, 2013년 2월 19일자)

몰락?

이탈리아의 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드디어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걸까? 이탈리아 법원은 베를루스코니가 운영해온 미디어그룹인 미디어셋의 세금 횡령 혐의에 대해 베를루스코니에게 2013년 10월 19일 징역 4년에 2년간의 공직활동을 금지한다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미성년자 성매매, 탈세, 부정부패 등의 온갖 추문에 휩싸이면서도 정치생명을 이어갔던 베를루스코니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자 언론에서는 베를루스코니의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보도하긴 했지만 여운을 남겼다. AP통신은

“베를루스코니와 이제는 작별할 시간인 것 같다”면서도 “정말 이것이 베를루스코니의 마지막일까.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고 보도했다.

왜 그랬을까? 베를루스코니가 워낙에 질긴 정치생명을 자랑해왔기 때문이다. 2011년 11월 이탈리아 경제 위기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전 세계 언론은 베를루스코니의 정치생명이 드디어 끝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뒤인 2013년 2월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자유국민당이 제2당이 되면서 베를루스코니는 다시금 부활했다.

거대 언론제국의 힘

베를루스코니의 질긴 정치생명은 어디에서 나올까? 이탈리아 민영 TV채널 4개 중 3개를 소유하고, 국영방송(RAI)을 실질적으로 장악했던 미디어제국의 황제여서일까? 아니면 세계적인 프로축구구단 AC밀란의 소유주이자 이탈리아 3위 재력가이기 때문일까? 모든 문제를 ‘공산당’과 ‘좌파’ 탓으로 돌리는 극우주의자 특유의 포퓰리즘과 선동정치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면 미디어로 이탈리아 대중들을 현혹한 탓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진 결과일까?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가 ‘핀인베스트(Fininvest)그룹’ 총수인 미디어재벌이란 점이다. 1936년 밀라노의 한 은행원의 아들로 태어난 베를루스코니가 미디어산업에 뛰어들게 된

때는 1973년이다. 젊은 시절 무명가수로도 활동했던 베를루스코니는 1960년대 말 밀라노 외곽 위성도시 건설 사업에 참여해 큰 돈을 벌었고 1973년 밀라노에 ‘텔레밀라노’라는 지역방송국을 설립하며 미디어산업에 진출한다. 1978년에는 미디어그룹인 핀인베스트를 설립했다. 1980년에는 이탈리아 3대 민영방송 중 가장 규모가 큰 ‘카날5’를 설립했다. 1982년에는 ‘이탈리아1’과 ‘레테4’를 사들여 이른바 ‘미디어셋’이라는 민영방송 독점체제를 완성했다. 이후 그는 일간지 『일 조르날레』와 이탈리아 최대 잡지사인 ‘파노라마’, 최대 출판사인 ‘몬다도리’, 최대 광고대행사인 ‘푸블리타리아’, 영화 제작 및 배급사인 ‘메두사필름’을 소유하기에 이르렀다. 방송과 부동산, 출판, 광고, 영화, 슈퍼마켓 체인 사업에까지 손을 뻗쳐



젊은 시절 베를루스코니는 크루즈선과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했었다.
(출처 : The observer, 「Silvio Berlusconi: a timeline」, 2011년 11월 13일자)

이탈리아 최대 재벌로 성장한 것이다.

베를루스코니가 이렇게 급속도로 미디어 독점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이탈리아 정치권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이었다. 1980년대 사회당의 베티노 크락시 총리나 기독교민주당의 당수 안드레오티 등 부패 정치인들의 후원이 있었기에 베를루스코니는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크락시는 1984년 10월 16일 이탈리아 법원이 민영방송국의 폐쇄를 명령하자 10월 20일 영국 공식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민영방송국을 허가하는 긴급법령을 통과시켰다. 나중에 검찰은 베를루스코니가 소유한 회사의 해외 계좌에서 크락시의 계좌로 1,800만 달러가 넘어간 사실을 밝혀냈다.

미디어재벌에 의한 정치지배

1990년대 초 베를루스코니의 핀인베스트 그룹은 3개의 민영 TV방송국과 일간지, 주간지, 영화제작사, 극장, 출판사, 프로축구팀, 광고회사, 슈퍼마켓 체인 등 3백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연 70억 달러(약 5조 6천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던, 독일 베르텔스만에 이은 유럽 2위의 미디어재벌이었다. 그러나 핀인베스트그룹은 1992년 19억 달러의 빚을 기록한 데 이어 1993년에는 22억 달러의 빚이 있었다. 또 사회당 의원들이 민영 방송사 수를 줄이라고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일

각에서는 베를루스코니가 정계에 진출한 이유가 핀인베스트그룹의 경영난을 해결하고 사업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

또 한편으로는 이탈리아 검찰에서 1992년부터 진행하던 ‘마니 폴리테(깨끗한 손)’로 자신을 보호해주던 베티노 크락시 등의 정치인들이 실각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이권을 지켜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어찌됐든 베를루스코니는 1994년 1월 26일, 이탈리아 국민들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할 때 쓰던 구호인 ‘포르차 이탈리아’(Forza Italia, 전진 이탈리아)란 정당을 창당하고 같은 해 3월 총선에서 승리해 총리가 된다. 1994년 총선은 미디어정치의 승리였다. 베를루스코니는 철저하게 TV유세에 집중했다. ‘반공’과 ‘경제기적 재현’을 내걸었던 그는 45%의 시청률을 기록하던 자기 소유의 TV방송국 ‘레테4’를 비롯한 3개 방송국과, 이탈리아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잡지 『파노라마』를 통해 경제적인 피해와 부패스캔들로 얼룩진 이탈리아를 구해낼 구원자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²⁾

그렇게 베를루스코니는 정치 입문 2개월 만에 이탈리아에 새로운 정치문화인 미디어정치를 탄생시키며 화려하게 정계에 진출했다.

1) 〈얼굴 : 이탈리아 최대 언론재벌 베를루스코니〉, 『한겨레』, 1994년 3월 24일, 8면.

2) 강기석, 〈베를루스코니는 누구, 무명가수 등 전전... 자수성가한 '언론황제'〉, 『경향신문』, 1994년 3월 30일, 4면.



1994년 Forza Italia당을 창당한 베를루스코니(출처: 로이터, 「Profile: Silvio Berlusconi」, 2013년 9월 30일자)

사법부와의 악연

1994년 5월 11일 공식적으로 이탈리아 총리가 된 베를루스코니는 ‘개혁’을 내걸었으나 첫 조각에서 무솔리니의 후예를 자처하는 신파시스트정당 인사 5명을 포함시켜 안팎으로 우려 섞인 비판을 받았다. 2차대전 이후 서유럽에서 파시스트정당 인사가 각료가 된 것은 이탈리아가 처음이었다. 또 하나 문제가 된 것이 사법부와의 껄끄러운 관계였다.

총선에 나설 때부터 베를루스코니는 이탈리아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부정부패 혐의 때문이었다. 당시 밀라노의 치안판사들은 베를루스코니가 1992년 프로축구 팀 AC밀란을 인수하면서 1천 4백만 프랑(약 16억 원)의 뇌물을 뿌렸다는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당시 베를루스코니는 골프장 허가와 관련해 지방정부 관리에게 3백 50만 프랑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³⁾

3) 주섭일, <이 ‘기민당 연정’ 몰락 눈앞 총선 종반전… 예측불허 대혼선>, 『세계일보』, 1994년 3월 13일, 4면.

또 1994년 7월 23일 치안판사들은 핀인 베스트그룹의 세금포탈 혐의를 붙잡아 재정책임자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리고 베를루스코니의 동생 파올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핀인베스트그룹의 재정담당 이사가 세무신고를 하면서 세무 관리에게 2억 리라(약 1억 원)의 뇌물을 줬다고 시인하면서 일파만파로 커졌다. 결국 베를루스코니는 핀인베스트그룹의 뇌물공여 사실을 시인했다. 자신은 뇌물공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단서를 달고서 말이다.

사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복지예산 삭감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교육개혁안에 반대하는 고등학생들의 전국적인 시위로 베를루스코니는 고전했다. 더구나 1994년 11월 22일 치안판사들이 핀인베스트그룹 뇌물공여와 관련해 베를루스코니를 내사하고 있다고 공표하고, 12월 6일 베를루스코니는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시위는 계속되고 있었고, 북부동맹이 연정에서 발을 빼면서 연정은 깨져가고 있었다. 베를루스코니는 궁지에 몰렸다. 그리고 1994년 12월 22일 스스로 사임하며 짧은 첫 총리생활을 마감했다.

거세당한 언론

베를루스코니의 재기는 어려워보였다.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계속되었고, 1998년 7월 7일 법원은 베를루스코니에게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그



1994년 12월 22일 총리 사임을 선언하고 있는 베를루스코니
당시 모습(출처: BBC, 「pictures: Berlusconi in politics」,
2013년 8월 2일자)

는 풀려났고, 2001년 재기에 성공한다. 거대한 미디어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서 말이다. 2001년 5월 13일 치러진 총선에서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중도우파가 승리를 거두었고 베를루스코니는 다시 총리에 등극한다. 그리고 1994년과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기반을 다지기 시작한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국영방송 라이(RAI)를 장악하는 일이었다. 그는 2002년 2월 라이 이사 5명 가운데 3명을 자기 측근으로 채워 라이를 실질적으로 장악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민영방송 3개를 합한다면 이탈리아 시청자의 90% 이상이 베를루스코니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장악한 TV를 시청하게 된 셈이다. 또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2002년 3월 28일 '이익상충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직자도 경영에 참여하지만 않는다면 기업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베를루스코니

자신을 위한 법안이었다. 그리고 총리에게 국영방송 라이의 이사회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어 베를루스코니의 방송장악 음모라는 비판을 받았다.⁴⁾

그리고 베를루스코니는 2003년 6월 국가 5대 고위공직자(총리,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헌법재판소 의장)의 임기 중 면책특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날치기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비록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지만 베를루스코니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다.

2006년 4월 총선에서 패배해 물러날 때까지 베를루스코니는 언론을 옥죄었다. 이탈리아의 한 언론인이 “이탈리아 언론은 거세당했다”고 말할 정도로 베를루스코니는 언론장악에 심혈을 기울였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부채질했다.

베를루스코니가 집권하던 5년간 방송에는 그의 얼굴이 설 새 없이 비쳐졌다.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남편과 부모 얼굴도 몰라보는 뇌질환 주부가 신문에 난 베를루스코니의 얼굴만큼은 알아봤다는 사실이 과학저널에 실리는, 쓴웃음 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⁵⁾

그뿐 아니라 방송의 선정성도 눈에 띄게 늘어갔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디어셋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벨리나(velina)’란 여성이다. 이탈리아어로 ‘쇼걸’을 뜻하는 벨

리나가 방송에서 하는 일은 이런 것이었다.

“미디어셋이 방송하는 〈켈리 체…일칼치오(Quelli Che…Il Calcio)〉라는 TV 프로그램에서는 젊고 매력적인 여자들이 미니 스커트에 뽀족구두를 신고 출연해 남자 상의를 다림질하는 경연을 벌인다. 출연한 여자들은 별로 말도 하지 않고, 춤도 별로 추지 않고, 웃도 거의 입지 않은 채 경연을 벌인다. 그 다음 한 축구선수가 나타나 누가 다림질을 잘했는지 평가해 상을 준다. 이들 여성은 별로 특별한 것도 없는데 가슴과 허벅지를 드러내고 공허한 웃음을 짓는다.”⁶⁾

이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베를루스코니의 정치를 돕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경향신문』의 설원태 선임기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베를루스코니)는 이탈리아의 TV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검약과 절제를 중요시했던 가



베를루스코니가 소유한 미디어셋 방송사 홈페이지 캡처
(출처: 미디어셋 홈페이지[www.mediaset.it])

4) 김학준, 〈이탈리아 노-정 대격돌 예고〉, 『한겨레』, 2002년 3월 29일, 10면.

5) 이본영, 〈‘베를루스코니 쇼’ 막 내릴까〉, 『한겨레』, 2006년 4월 10일, 9면.

6) 설원태, 〈그후: 이탈리아 권력·언론 장악 베를루스코니〉, 『경향신문』, 2009년 12월 23일, 26면에서 재인용.

톨릭 전통을 권력 놀음과 성, 사치 등을 주로 하는 문화로 타락시켰다고 타임은 평가했다”고 말한다.⁷⁾

거세당한 언론과, TV문화를 바꿔 자신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베를루스코니의 수완(?) 덕분에 베를루스코니는 1945년 이후 이탈리아에서 5년 임기를 딱 채운 최초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베를루스코니 재임기간 이탈리아의 경제는 추락을 거듭했다. 2001년 총선 때 ‘경제기적’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베를루스코니 정권 하에서 이탈리아는 정부 부채액 세계 3위, 유럽연합 내 실업률 2위, 그리고 제로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물가는 뛰어올랐고,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심화됐다.

다시 살아나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영원할 것 같던 베를루스코니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2006년 4월 총선에서 로마노 프로디가 이끄는 중도좌파연합에 근소한 차로 패배하면서 베를루스코니 시대는 이제 완전히 물러간 듯 보였다. 그러나 프로디 총리가 20개월 만에 낙마하자 베를루스코니는 2008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해 다시금 총리 자리에 올랐다.

세 번째 총리에 오른 뒤 그는 또다시 면책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2008년 7월 대통령과 총리, 상·하원 의장 등 정부와 의회 핵심인사 4명에 대해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재직 중 형사소추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혐의로 재판이 걸려있던 베를루스코니를 위한 법이었다. 이 법안은 2009년에 현재로부터 다시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베를루스코니는 최장 18개월 동안 총리와 내각 각료의 재판출석의무를 자동적으로 면해주는 또다른 법안으로 면책 특권을 이어갔다. 2011년 1월 다시금 위헌 판결을 받으며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 이 위기 역시 무사히 지나갔지만 그는 2011년 11월 12일 이탈리아에 경제 위기가 닥치자 총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세계의 주요 언론은 이때 베를루스코니의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보도했다. 각종 망언과 술한 성추문, 스캔들과 게이트로 얼룩졌던 베를루스코니의 악행이 속속 드러났고, 그렇게 베를루스코니는 한 시대를 마감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라이의 전 사장 루치아 아눈치아티는 “죽은 당나귀를 조심하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당신을 걷어찰 것이다!”란 말로 베를루스코니의 복귀를 점쳤다.⁸⁾

이 말처럼 베를루스코니는 2013년 2월 총선에서 자신이 이끌던 자유국민당이 제2

7) 설원태, 〈그후 : 이탈리아 권력 · 언론 장악 베를루스코니〉, 『경향신문』, 2009년 12월 23일, 26면.

8) 조흥민, 〈베를루스코니는 죽지 않았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주간경향』, 2011년 11월 29일.



2011년, “죽은 당나귀를 조심하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당신을 걷어칠 것이다!” (Beware the dead donkey! He looks dead. Then he kicks you!)라고 말하며 베를루스코니의 복귀를 점쳤던 루치아 아논치아티와 베를루스코니가 2013년 2월 아논치아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LEADER’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출처 : giornata, ‘Il triste show di Berlusconi a Leader dalla Annunziata’, 2013년 2월 9일자)

당이 되면서 정계에 복귀한다.

베를루스코니의 정계 복귀에는 미디어셋 소속 방송의 힘이 컸다. 2월 총선을 두 달 앞두고 벌인 여론조사에서 자유국민당의 지지도는 17%에 지나지 않았지만 TV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지지도가 3% 올랐다. 하지만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퇴위 뉴스,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산레모 칸초네

축제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베를루스코니의 지지도는 제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이탈리아 신문은 교황의 퇴위와 산레모 축제가 베를루스코니의 선거를 망쳤다고 빈정댔다.⁹⁾

즉 뉴스의 초점이 분산된 덕분에 베를루스코니의 자유국민당이 제1당이 되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이탈리아 국민의

9) 장행훈, <이탈리아 총선이 이탈리아와 유럽에 남긴 교훈>, 『황해문화』, 2013년 여름호, 258~259쪽.

82%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TV를 통해 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바로 이런 상황이 베를루스코니의 질긴 정치생명을 가능하게 만든 배경이다. 또 베를루스코니의 성공신화에 열광하고, 그를 선망하는 이탈리아 국민들의 동류의식도 베를루스코니의 정치생명을 연장해준 힘이었다.

죽은 당나귀를 조심하라

이렇게 다시 정계에 복귀했지만 베를루스코니는 확정 판결로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 와중에도 베를루스코니는 4년형을 1년으로 감형 받았고, 가택연금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해 애완견 돌보기, 육아 봉사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그는 과연 몰락한 걸까? 정치생명은 끝난 걸까? 누구도 호언장담할 수 없다. 그의 생존 능력과 그가 가진 미디어의 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장담할 수 있겠다. 미디어재벌의 정치지배를 뜻하는 ‘베를루스코니 현상’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처럼 조셉 매카시의 매카시즘처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현실에 구현시킨 베를루스코니 현상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죽은 당나귀’는 이탈리아에만 있는 게 아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경계를 늦출 때 미디어재벌에 의한 정치지배 혹은 미디어를 이용한 정치지배가 우리 엉덩이를 건어찰지 모를 일이다.

군과 언론, 국가위기관리의 동반자인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일간지 논설위원과 국방부 관계자 등 70여 명을 초청해 양평 블루비스타에서 ‘국가위기관리와 언론의 기능’을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철우 국방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미국의 전쟁보도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위기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발제를 했고, 박현채 언론중재위원(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송종길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정기세미나의 발제문과 지정토론문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13 정기세미나 현장중계’ 코너에서는 지면관계 상 개회사, 발제 요약, 지정토론 요약, 종합토론, 총평 순으로 정리했으며, 참석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록하고자 종합토론의 내용은 요약 없이 실는다.

개회사



권 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날씨가 매우 추운 가운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파란 강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밭, 앙상한 나뭇가지의 쓸쓸한 모습, 먼 산 위에 하얗게 쌓여있는 눈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것도 우리가 평화로운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포성이 울리거나 총탄이 쏟아지면, 아름다운 경치라 할지라도 즐기는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위기, 가령 전쟁의 위협이 그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의 마음을 긴장시킵니다. 이와 같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그 중 하나는 무기입니다. 탱크나 비행기 같은 무기도 있지만, 우리는 이외에 언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의 본질이 무기는 아니나, 위기상황에서는 언론이 무기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론은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언론은 반전 여론을 형성하거나 군사 기밀을 누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국민의 사기를 높이고, 일치된 단결력을 높이며, 전쟁 수행에서의 여러 문제를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론은 국가위기 시에 군사적 승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의 승리는 단순히 군사 측면에서의 승리만 뜻하진 않습니다. 현대에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승리했다라도 무자비한 인적 자원의 낭비가 있었다면 그것을 승리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기 시에 지켜야 하는 인간적인 측면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상을 막고, 문화재를 파괴로부터 막는 것. 이것이야말로 언론이 그 능력을 발휘해야하는 측면입니다. 언론의 역할은 단지 현대에 와서 커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도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인간적인 측면의 보호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언론이 국가위기 시에 가져야 하는 기능은 정말 중요합니다.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갈등의 상황을 조성하는 가운데, 이 갈등을 어떻게 순조롭게 조율하는가는 그 국가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오늘 토론이 언론이 국가위기 시에 가져야 하는 갈등의 순간에서 어떻게 기능해야하는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좋은 토론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준

(사회자,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권성 위원장님의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제는 김철우 국방연구원 전문연구위원님께서 해주시고, 박현채 위원님과 송종길 교수님이 지정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 후에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우 전문연구위원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주제 발표



김철우

(발제자, 국방연구원 전문 연구위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현재 한·중·일 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 문제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국가안보위기 시에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평도 포격 때도 미국에서는 곧 전쟁이 날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2차 공격이 시작된다고 알려지자 외신기자들은 방독면 등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체계적으로 대피했지만, 우리나라 기자들은 피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기자들은 어떠한 안전 장비도 없이 연평도에서 위기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언론·국방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국가안보위기 시에 언론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박 모 신부가 연평도 포격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군사작전 및 안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따라서 이번 발제에서는 오늘날 비정기적 국지 도발, 테러 등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과연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미국의 전쟁보도 시스템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는 미국 내에서 군과 언론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사실 전쟁은 언론에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스페인 내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신문사들은 매우 크게 발전했습니다. 미국의 언론이 발전하고 언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진 것은 군의 영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부터 그 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 초기에 맥아더 장군은 언론 검열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언론 스스로가 보도에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말기에 중국 군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언론에 대한 검열이 시작됐습니다. 언론과 군의 갈등이 가장 커진 것은 베트남전입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은 취재를 자유롭게 허용하면 군에 우호적인 보도를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언론들이 전쟁의 비참함을 경쟁적으로 전하기 시작하면서 군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었고, 미국은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의 미군은 지금까지도 여론 전쟁, TV 전쟁에서 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미군은 언론을 기피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군과 언론의 관계는 악화됩니다. 베트남전 패전 이후 미군 수뇌부는 언론을 기피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기자들을 최대한 전투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언론계의 반발이 심화되자 미국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펜타곤의 주도하에 'Hoffman 위원회'를 구성했고 언론의 비난을 감안한 중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AP통신 펜타곤 기자로 22년간 일하고 국방부 부공보차관보(deputy ASD/PA)까지 지내 양 집단의 특성을 잘 알

고 있는 프레드 호프만(Fred Hoffman)은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미군의 대언론 마인드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90년대 들어와서 80년대와는 다르게 치밀한 언론관리 작전을 전개합니다. 공보작전 차원에서 작전현장의 동영상을 제작해 언론에 전했습니다. 군이 언론인을 에스코트하는 취재협조 방식도 효과를 봤습니다. 또한 24시간 생중계 뉴스 채널을 통해 언론과의 인터뷰를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언론관리 작전을 수행한 걸프전은 군과 언론의 관계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미군은 소말리아 파병, 98년도 코소보 전쟁 등에서도 심리전 차원에서 언론을 이용합니다.

9.11 테러 보도는 미군에게 전쟁의 정당성을 제공해줬습니다. 만일 테러가 밤에 일어났다면 테러범들은 세상을 다 가졌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날씨 좋은 낮에 가장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언론을 통해 이것이 그대로 전달되며 미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언론은 미국에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응징차원의 군사작전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언론은 미군의 이라크에 대한 일방적 공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작전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것입니다.

이라크 공격에서는 직접 동행취재(Embedding system)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기자들을 현장에 접근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미국 장병의 눈으로 전쟁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예비역 장성들은 모두 미디어에서 해설가로서 동행하며 군의 입장을 지원하고 옹호했습니다. 그로 인해 일부에서는 이라크 공격 취재는 고도의 선전에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라크 공격에 관한 언론보도는 심층보도가 부족했고 보도화면이 전자게임과 같은 그래픽 형식으로 편집되어 문

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으나, 직접 동행취재를 통해 군과 언론이 오랜 갈등을 끝내고 좋은 관계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라크 공격 이후 미군은 미디어 환경변화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효율성 증진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보시스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에 ‘국방미디어활동본부’(Defense Media Activity)를 새로 조직하여 그동안 국방부 및 각 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각종 미디어 활동을 통합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사건을 보도하는 것도 처참하게 살해된 모습을 보도하지 않고 고도의 기획 아래 대통령과 참모진이 협상하는 모습을 보도함으로써 자칫 비난여론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공보시스템의 힘으로 극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연평도 사건 당시 우리 군은 사태발생 초기의 메시지 관리, 군의 즉응태세 적정성 논란, 대언론 발표 일관성 시비 등의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은 대한민국 영토가 직접 적의 포격을 당하는 상황 하에서도 우리 군의 대응 잘못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TV 방송이 우리 군의 취약점에 대한 그래픽 해설까지 곁들여 실시간 스포츠 중계하듯 하는 모습은 언론계 내부에서조차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위기 상황에서의 가이드라인, 취재보도 준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기자협회에서 이에 관한 연구를 했으며, 이후 ‘국가안보위기 시 취재보도 기준’을 만들어 국방부장관과 기자협회장이 사인하여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군은 취재보도를 적극 지원하고 언론은 군 작전현장의 작전보안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과 군의 조화를 위해서, 군의 미디어 교육 및 언론의 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상호 교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경우 군

인의 언론 특성 이해력을 제고하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장성들은 현장에서 작전지휘만 했기에 언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 주관으로 검토, 추진 중인 ‘국방미디어센터’ 신설을 조기에 달성하여 이를 ‘군과 언론’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방미디어센터’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언론인의 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언론과 군의 협력 관계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의 주역들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군과 언론의 동반자 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준

(사회자,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김철우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군과 언론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발제를 들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호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박현채 서울제5중재부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고, 이어 송종길 교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시겠습니다.

지정토론



박현재

(지정토론자, 서울제5중재부 중재위원)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논문에 나와 있듯이 미국은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보도를 둘러싸고 군과 언론이 갈등을 빚어왔고 양 집단의 여망을 수용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현대에 들어 6.25 전쟁을 제외하고는 전쟁 당사자가 되어 본 적이 없는 우리 언론과 정부에게는 미국의 다양한 시도가 참고해야 할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군과 언론은 그 특성상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됩니다. 둘 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군은 기밀보호, 즉 안보라는 측면을 중시하는 반면에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공개주의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생적으로 국가이익과 진실보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숙명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나 고도의 국가안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가이익과 진실 보도 문제가 충돌하게 될 경우 우선순위와 한계를 규정짓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국익이란 개념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명확하게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단순히 국익

신장을 위해 발발했느냐, 아니면 자유와 민주정의를 위해 발발했느냐에 따라 언론의 전쟁보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 당사국인지 아니면 제3국인지 등, 해당 국가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는 더욱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모두가 국익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불가침이라거나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이 사회적 통설로 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15년 5월 21일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Daily mail)은 ‘포탄의 비극’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의 요지는 “영국군이 사용하는 포탄에 불발탄이 많아서 독일군에게 밀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도는 진실을 담고 있었으나 다른 언론사들은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영국군 지휘부는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왜곡보도”라며 기사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군 당국의 해명성 발표를 접한 국민들은 데일리 메일이 이적행위를 했다면서 불매운동과 광고 게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50세였던 노스클리프(Northcliff) 데일리 메일 사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불리한 전황에 대한 진실보도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이 신문보도가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들의 요구로 새 연립내각이 들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훗날, 패전한 독일 황제는 “우리는 데일리 메일 때문에 패했다. 진실을 알리는 펜의 힘,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힘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사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진실보도가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고 이 보도는 언론의 책임과 사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본연의 사명과 함께 기업으로서 이윤을 추구한다는 상업적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자간 경쟁이 치열하고 특종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도처에 특종감이 널려 있는 전쟁만큼 미

디어에 호재는 없다 하겠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미디어를 통해 전쟁을 실시간으로 관람하는 시대입니다.

과거 베트남 전쟁 때는 취재에서 보도까지 48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적인 발달로 전황의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그런 만큼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더 리얼하게 재미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 언론을 선정주의에 빠저들게 해 국익을 해칠 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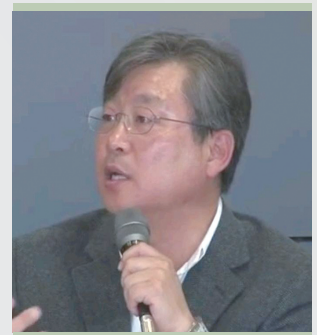
김 연구위원의 논문에서 거론됐듯이 언론의 선정주의는 적에 의해 심리전으로 역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모든 외신기자를 추방하면서도 유일하게 CNN기자인 잔류시킴으로써 다국적군에 의한 바그다드 지하 대피호 폭파와 무차별 공습, 오폭 등을 그대로 방송하게 하여 반전여론을 유도했습니다. 전쟁의 명분이 타당하더라도 전쟁으로 불가피하게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반전론자나 평화론자에게는 커다란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이 결여된 보도와 지나치게 선정적인 과장·왜곡보도가 얼마만큼 국익에 해를 끼치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방해가 되는 지를 언론인 스스로 곰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언론은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많은 국민이 갈등하고 있을 때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실에 대한 왜곡 없이 진실만을 보도해야만 제 기능을 다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군도 안보위기가 발생한 작전현장 등에 대한 취재보도진의 과도한 통제와 뒤늦은 사실 확인 및 해명이 불신과 추측보도를 유발해 비판과 오보를 생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대전에서 미디어는 전쟁의 뉴스를 보도하는 수단인 아니라 전쟁 그 자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미디어는 무기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쟁 수행기간 내내 여

론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최고의 무기는 여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여론 지지 마저 없을 경우 제 아무리 강한 경제력과 우수한 무기체제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무기인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군이 공감대를 형성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군과 언론 중에 누가 국익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국민에게 맡기고 상대 집단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겠습니다.



송종길

(지정토론자,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경기대학교 송종길 교수입니다. 세계의 어느 언론이 국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가장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다는 미국조차 국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

랍 세계의 입장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알 자지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랍 민족의 이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실은 언론의 자유, 아주 이론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지켜질 수 있는지 논란이 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 취재보도의 자유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언론인의 시각과 국익,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제한을 취해야 한다는 견해의 충돌은 본질적 갈등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전 대학 수업 중에 연평도 포격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수업을 끝까지 계속했고, 국민들도, 생중계하는 방송국도 모두 크게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직접 공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방사포가 날아오고, 포탄이 날아오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며, 북한과 적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전쟁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전쟁보도 전문기자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위기 상황, 전쟁뿐만 아닌 대규모의 재앙 상황에서 기자들이 허둥댄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나 신문 기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6.25 이후로 전쟁취재 기회가 없었고, 미국 중심의 해외 전쟁에 직접 들어가 취재한 기자도 거의 없으며, 동포들 인터뷰, 통신사에서 전해주는 영상의 반복적 재생, 스케치 등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전쟁에는 또 다른 기자가 나가고 하다 보니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는 시스템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언론의 한계입니다. 군 당국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전에는 언론과 관련해 대응을 한다면가 하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군 역시도 본질적으로 정보를 차단하고, 작전 수행을 위해 안보를 추구해야 한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준비가 부족합니

다. 2012년 5월 '국가안보위기 시 취재보도 기준'에 대해 국방부와 한국기자협회가 합의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전쟁의 다양한 상황, 다양한 대응 상황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해외 사례는 매우 구체적 기준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기자와 군 당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갈등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이지 않은 보도 기준만 가지고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또한 전쟁보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취재 방식에 대해서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송의 경우, 남북이 대치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통해 언제든지 터질 수 있음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다른 나라의 전쟁보도는 거의 스포츠 중계 수준입니다. 영상자료가 없으면 오락 게임과 같은 그래픽, 외신이 보내준 영상의 반복 등의 보도양태를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전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스포츠 관전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전쟁이 전혀 자신과 무관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함께 보도를 하는 방식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언론 미디어 환경이 취재보도 기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만여 명의 취재 기자들이 전쟁이 나면 모두가 다 올텐데 과연 통제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협회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군 당국, 전문가, 당사자 등의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언론보다는 군이 당사자로서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언론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본질적으로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을 가장 높게 여긴다는 점에서 연평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보도지침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국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언론도 취재보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좀 더 구체화된 보도지침과 현실적인 기자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언론사의 보도준칙, 가이드라인을 모두 숙지하고 있는 기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자들은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주려는 자세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방부가 가이드라인만 던져두고 언론에 '따라오라'는 식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군에서 해야 할 역할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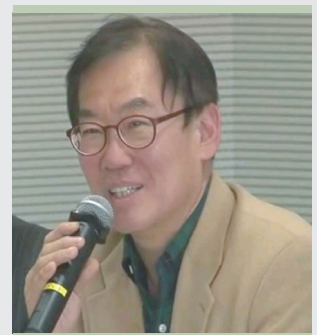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재앙은 진실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는 진실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것은 사회에 큰 타격이 됩니다. 유언비어의 확산은 바람직한 형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군이 전쟁보도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적합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언론사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스스로를 인정하고 채워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문기자들, 국방부 출입 기자들을 내부적으로 교육과 단속을 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동의 국익이라는 점에서 언론사의 협조도 필수적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준

(사회자,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감사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니 토론할 내용이 많습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연평도 포격이 2위에서 3위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1위는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니스프리'가 전국적 세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안보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지정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가위기관리와 언론의 기능에 대한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난상토론 형식으로 의견을 모아하겠습니다.

종합토론



김정택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전쟁과 언론보도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전은 미국 언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언론보도는 철저히 애국보도였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전 이후 ‘국가의 이익’과 ‘전쟁의 승리’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언론의 애국보도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진보지에서는 국가안보에 대하여 상충적인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국방부의 전쟁 기밀문서를 보도한 것에 대해 뉴욕대법원이 뉴욕타임즈의 손을 들어준 것은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전쟁 특파원 역사상 베트남전이 가장 편했다고 할 만큼 베트남전 보도는 그 자체가 애국보도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이익을 바라봄에 있어 정부와 국민의 시각이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불일치하게 된다면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전방과 후방의 의견 일치입니다. 전·후방의 의견이 다를 경우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맥이 빠지고 전쟁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인, 군인, 특히 군 홍보담당자가 전쟁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의 경우 국민의 지지가 없는 전쟁을 수행할 경우 반작용이 클 것을 예상하고 여론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내 여론이든 국제 여론이든 많은 시간을 들여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극한적인 상황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에 정치인부터 군 홍보담당자들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군 홍보 시스템으로는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군 당국이 여기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면 자연스럽게 국가 위기의 상황을 이골

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명
(서울제1중재부 중재위원)

김철우 연구위원의 발제문에서 미국은 베트남전의 패배 요인으로 언론의 영향을 꼽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로써 미국 정부와 군, 언론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것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베트남의 선제공격을 근거로 미국이 핵 항공모함, 구축함, 전투함, 함정 등으로 구성된 핵 함모 전담을 통킨만에 투입해 베트남을 초토화시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이를 빌미로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자 하였으나, 뉴욕타임즈가 군사계획 전문을 입수하여 사전에 보도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펜타곤 페이퍼 사건).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수많은 무고한 이들이 희생될 것이라며 통킨만 침공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킨만 침공계획은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어떻게 기밀문서를 입수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은 언론과 군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당시 미군 당국은 Inner Circle(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NBC, CBS, PBS 등 미국 주요 6개 언론사)에 대하여 중요한 군사 계획이 있기 전 출입기자를 극비리에 불러서 설명을 하며 엠바고를 걸고는 했으나 통킨만 침공계획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침공사건입니다. 전 세계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으나 이스라엘은 전광석화 같은 공격으로 6일 만에 이집트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 신문사는 사전에 침공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보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와 정 반대의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두 신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언론이 국가 안보상의 중대한 상황에서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우 (발제자, 국방연구원 전문 연구위원)

펜타곤 페이퍼 사건은 국가 안보의 판단의 주체가 누구인지 논의해 볼만한 사례입니다. 이익비교형량의 법칙에 의해 군사기밀을 보도하는 것이 옳은지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사례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기밀의 판단기준으로 형식비, 실질비, 비공지성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사실상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군사기밀을 극비리에 입수해 공개여부를 고민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으나, 판단의 주체에 대해서는 사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개 이후 사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봉연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우리 언론계에서는 보통 선임기자가 데스크를 마치고 보직을 맡기에 마땅치 않을 때 군사전문기자, 행정전문기자 등 전문기자를 맡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언론사들이 전문기자를 임명할 때 회사 편의에서 하지 말고, 출입처에 인원을 좀 더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출입기자가 최대 8진까지 있지만 국방부는 한두 명 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국방부 출입자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언론사측에서 그렇다면 국방부에서만만큼은 사주를 만나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군사전문기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 10년 이상 출입한 기자에게 전문기자 자격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우
(국방부 대변인실 공보계획담당)

현재 국방부 등 각 군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열린 마음으로 언론을 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에 대해서도 비밀이 아닌 한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이 언론에 다가가려는 노력의 예를 들자면 국방부는 매일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리핑할 내용이 없을지라도 기자들의 질문이 있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입기자들이 군 공보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군이 가지고 있는 기본가치, 국익, 군사작전, 기밀보호 등을 고려하다 보니 제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가안보위 기시 취재보도 기준을 만들었고 어떻게 이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언론을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취합하여 군과 언론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펜타곤 페이퍼를 보도하기 시작한 뉴욕타임즈 1971년 6월 13일자 1면 (출처 :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www2.gwu.edu])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거와 달리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라고 생각했던 부분까지도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군 지휘관, 장교, 특히 공보 장교들이 언론을 이해하고 언론을 통해 군사작전, 평상시의 공보작전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Media Training 학교를 만들기 위해 중기계획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차원에서 언론의 입장과 군사적 관점을 수용하여 국가이익을 위해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군 공보 시스템, 위기관리 시스템 등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SBS 논설위원실장)

제가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이라크 전쟁, 레바논 전쟁을 직접 취재하면서 겪은 외국과 한국의 군사 공보 차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의 경험 중에 이스라엘이 취재에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취재하러 왔다고 하니 가장 먼저 공보실로 안내해 프레스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 카드가 있으면 최전방이 아닌 이상 어느 곳이나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쟁 시 언론보도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 들어가기 전에 암만에서부터 프레스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두 차례씩 브리핑을 열고 사건의 큰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를 바탕으로 기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취재해야겠다는 조각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때에는 취재기자가 30명이었는데도 현지 브리핑이 없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은 그 전날 이미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정보를 찾아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군사기밀 논쟁은 또 다시 심해졌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취재에 제한은 필요하겠습니다. 그

러나 제한은 프레스 카드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처럼 젊은 기자들이 용기와 무모한 배짱으로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군에서 취재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군에서 취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철
(서울신문 심의위원)

6.25 전쟁 이후 첫 교전은 2000년 연평해전일 것입니다. 당시 저는 국방부에 출입하고 있었는데, 첫 교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국방부 브리핑이 아니라 현장 기자들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국방부 기자실에서 언제쯤 발표가 이뤄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브리핑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당시 남북은 발표는 하지 않으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경찰 출입 1~2년차의 기자들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아침 9시쯤 취재기자로부터 ‘총소리가 들립니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

다. 발표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되었는데 아직도 대변인실은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보도는 아니더라도 방송 자막으로 교전 사실을 내보내도 될 것 같다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13년 전이 이러한데 지금이라고 적시에 대변인실에서 팩트를 말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듭니다. 일일브리핑은 제가 있을 때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매일 브리핑을 해도 그것을 기사로 쓰는 기자는 드물 것입니다. 군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과 언론이 보도하고자 하는 것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확실하게 팩트를 알릴 수 있도록 군 당국에서 위기관리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같은 자리에 군 공보장교들이 많이 오셔서 언론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의 상식과 일반 사회의 상식이 일치되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연구관)

언론과 국가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국가안보가 언론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이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됐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강릉 침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합참공보실에서 그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제도나 체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을 자인합니다. 그러나 점차 발전하여 오늘날 국방부에서는 오픈되고 투명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과 언론은 동반자 관계임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추상적인 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이뤄가기 위해 제도, 규범, 인력 양성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언론과 자주 접촉하는 기회를 갖고 제도화된 기구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먼저 논설위원, 사주 등과 군이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상설화·전문화된 협의체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강릉 침수함 침투사건 때 국방부는 군사작전이 언론을 통해 다 누출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작년에 보도준칙을 만들어 군과 언론이 합의한 것은 의미

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준칙의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언론계와 국방부에서 규정을 구체화·세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언론계에서도 국방 관련 보도인력을 양성하고, 보도 안내서, 윤리 강령 등을 교육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대영

(연합뉴스 논설위원)

가끔 언론에 군사기밀로 보이는, 북한이 알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기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언론에 군사기밀을 왜 보도했냐는 식의 불멘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군사정보를 기지만 보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처에서 군사관련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국방부에서는 얼마나 빨리 이 사실을 파악하고 언론사에 보도 자체를 요청하는지,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진우

(국방부 대변인실 공보계획담당)

팩트인지 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이버 사령부와 관련해 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산하 조직도까지 보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국정감사에서 모 의원의 질의 자료로부터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긴급히 출입기자, 각 언론사, 국회 기자실까지 연락을 취해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우려가 있으니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인터넷기자 등 국방부 출입기자만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기사를 막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일반 관료들은 오히려 공보담당 장교들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보안 담당부서 등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조사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공보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작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많았습니다. 국방부 공보장교들은 근무교대를 편성해 합동참모본부 통제실에서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확인이 되면 즉시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두 달이나 대기상태를 지속하며,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실시간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노력이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 출입기자가 자주 바뀌는 것이 저희에게도 어려움입니다. 교육하고 이해를 시켜 놓으면 곧 다른 기자로 바뀝니다. 조속히 전문기자제도가 만들어져서 보다 날카로운 분석으로 국민들에게 보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

전통 언론 시대와 SNS 시대의 군과 언론의 관계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만이 팩트를 보도했으나 지금은 개인도 SNS를 통해 사실 관계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SNS 시대에는 팩트에 대한 보도보다 팩트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팩트의 진실여부는 언론의 자체적인 검증과 군의 발표에 의해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미묘한 문제입니다. 같은 언론인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팩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계속해서 쌓이면 편향된 정보가 제공되어 오히려 팩트 그 자체보다 더한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올바른 해석을 위한 관점이며 이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군과 언론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충신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문기자제도가 가장 먼저 시작되어 그나마 언론에서 전문성이 가장 많이 유지되는 곳이 국방부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군만큼 전문적인 홍보 시스템을 갖춘 조직도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 천안함 사태인데, 이 사건으로 군과 언론 모두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양 기관은 가장 전문성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가 국민의 편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었습니다.

당시 천안함 사태에서 언론보도의 혼란은 군 수뇌부가 판단을 하지 못해 홍보의 전략적 오류와 모순이 생겼고 이로 인해 언론대응의 타이밍을 놓쳐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자 진실 게임 양상으로 변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군의 책임자들이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디어에 대해 워낙 군 장성들이 거처야 하는 교육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교육시스템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안함과 연평도 사례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자료

가 될 텐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면 3년 전의 미흡함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안함 사태에서 교훈을 얻으려면 당시 왜 유언비어가 형성되었는지, 청와대 등 관련 기관에서 전략적인 홍보 전략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토론과 연구논문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학계, 언론계, 국방부 관계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홍보 시스템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철우
(발제자, 국방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군과 언론의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다양한 대화 채널을 갖고,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를 조화시키고 해결해 나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과 언론 간의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로서 영국의 국가언론협력위원회를 벤치마킹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상호협력력을 이루어나가는 언론국방홍보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손영준

(사회자,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오늘날 한국 사회는 ‘소통의 위기’라고 합니다. 소통이 불통되면 국민들의 울화통이 터진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과 언론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사를 주최해 주신 권성 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 들겠습니다.

총평

권 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오늘의 토론을 들으면서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군과 언론은 서로 윈-윈하며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전쟁에서 대개 승리하여 오늘과 같은 초강대국이 되었고, 언론도 이에 따라 세계 제일의 언론이 된 것입니다. 후일에 미국이 쇠퇴기에 접어들면 언론 또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공한 나라의 군과 언론의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정부나 국익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군과 언론은 국익을 단기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전술적이 아닌

전략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서 국익 문제를 판단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군에 관한 보도에 있어 무엇이 비밀인가가 항상 쟁점이 될 것입니다. 군에서는 비밀이라고, 언론에서는 비밀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비밀은 전쟁의 상대가 알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가 알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상대가 알면 아군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면 비밀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밀이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개될 내용은 비밀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비밀이라고 했으나 내일 다 공개된다면 군 당국의 신뢰는 떨어질 것입니다. 상대의 이용 가능성, 우리의 피해 가능성, 조만간 공개될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헌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포탄의 비극’에 관한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는 단기적으로는 국익을 해칠지 모르나, 장기적·전략적으로는 국가에 이익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라이 학살 사건’도 처음에는 미군 당국이 공개를 막았으나 결국은 보도가 되었고, 이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군의 손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전쟁을 끝내는 데 일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민주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거 독재 국가들의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배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진실보도가 국가의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익을 위해 단기적,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비밀에 대해 종합적, 신중한 판단을 한다면 군과 언론의 갈등을 해결하고 국가위기 시에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 권리 VS 사생활 침해



글. 장현우
서울제8중재부 중재위원,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8중재부는 2012년 9월경부터 손해배상 전담부로 지정되어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한다. 짧은 시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결정까지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길지 않은 시간, 중재위원들과 상의하고 숙고하여 나름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특히 금전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피신청인인 언론기관들은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무리 없이 접근하고 조정해가는 과정은 아주 험난하기만 하다. 특히 공적인물(이하 '공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보도나 공개된 장소에서 얻었다고 주장하는 보도의 경우 피신청인을 납득시켜 조정에 이르는 것은 더욱 쉽지 않으며, 신청인의 침

해 주장과 대립되는 피신청인의 반박에서 우리 스스로도 사적 영역의 보도 한계에 대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검찰총장 ‘혼외 아들’ 보도와 관련해 공인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제17조는 언론이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인인 경우,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와 관련된 내용이 라면 사생활 보호 보다 공중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 결국 그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공인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피신청인들이 주로 1) 공적인물이다 2) 공공장소에서 취득한 내용이다 3) 이미 공중에 알려진 사실이다 등의 이유로 하여 사생활 침해가 없다고 반박한다.

이에 최근 법원 판단을 받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킨 공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건과 판결에 대하여 검토하고, 사생활 침해 한계와 기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관계

(서울고등법원 2012. 3. 9. 선고
2011나89080판결¹⁾)

당사자 관계와 보도경위

국내 유명 재벌그룹 대기업 대표이사 A는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B와의 재혼

을 위하여 양가 상견례를 했다. 피고들은 이른바 ‘파파라치식 보도’를 표방하며 인터넷신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기자들이다. 피고 취재진은 호텔 주변에서 대기하다 현장에서 상견례 사진 및 원고들이 나눈 대화, 데이트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여 상세히 설명한 기사 등과 함께 보도했다.

원고들이 공중에 알려지게 된 경위

원고 A는 국내 유명 여배우와 결혼했다가 이혼해 당시 공중의 큰 주목을 받았고,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그 후 원고 A는 원고 B를 알게 되어 언론을 통해 원고들의 열애설이 보도되고, 원고들의 결혼설이 세간에 퍼지게 되었다.

소제기 경위

원고 A, B는 피고들에게 기사 삭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사적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했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해 취재방법 또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기자(사진)들이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함으로써 양가 상견례 모임, 결혼 계획 및 데이트 내용 등 사적 사항과 원고 B 초상을 포함한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 A, B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고, 기사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1) 위 판단은 대법원에서 2013. 6월 확정 되었다.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31628 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

피고들은 공인에 대한 보도로서 원고들이 수치심, 불안, 불쾌감을 느낄만한 내용이 아니고, 이미 공중에게 알려진 사실로써 새로운 내용의 보도도 아니므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원고 B 초상 부분도 공공장소에 있는 상태를 촬영한 것으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에 관한 것으로 수인한도 내에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가?

일단 피고들의 보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즉, 피고들은 원고들 동의 없이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무단 촬영한 사진과 함께 보도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고, 원고 B의 초상권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인정된 불법행위가 공인에 대한 공공 관심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어지는가?

원고들의 결혼예정사실 등 ‘일반적인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이 사생활의 영역을 보도할 경우라도 그것이 공적 관심사로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없어진다. 원고 A는 국내 유명 재벌그룹의 경영인으로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유

명 여배우와 결혼을 하면서 사생활이 일반 대중들의 지대한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어, 원고 A는 이른바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어 사생활은 관심을 끌 만한 사항에 해당하게 되었다. 원고 B 역시 원고 A 재혼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상견례 사실, 결혼 계획에 관한 일반적 사항, 신혼집 현황에 관한 사항, 원고 B 기본적 정보 등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보도는 일부 권리가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인인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다면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 보도는?

피고들이 ‘몰래’ 촬영하거나 ‘몰래’ 엿들은 상견례 및 데이트 장면 등에 관한 세부적 보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 옷차림, 내밀한 대화 내용 등은 몰래 접근하여 대화를 엿듣고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사 관심사라고 하여도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 등은 공개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불간섭 상태는 여전히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사적 영역을 몰래 촬영하면

항상 위법한가?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접근하고 밀착하여 원고들을 지속적으로 관찰·미행하거나 그들의 대화를 몰래 청취하는 등 원고들의 사적 영역을 무단히 침범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나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어야 한다. 나아가 긴급성과 중대한 공익뿐만 아니라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위의 기준을 보면 사적 영역에 대하여 무단히 침범하여도 위법하지 않기 위해서는 긴급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최소한의 침해를 하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위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인정된 손해배상 금원은?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술하면,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로 인해 원고 A, 원고 B에게 위자료로 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B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초상권이 인정되는가?

초상권 침해 예외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접하는 주장 중 하나는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기에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기준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

2)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위자료]

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즉 위법할 수 있다는 것이다.²⁾

여기서 주목할 만한 관련 판단 기준이 있다.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는 것이다(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앞에서 공인, 공적인 인물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공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관계에 대해 판례를 기준으로 검토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취재 대상이 공인이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이나 취재·보도라고 해도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언론에 대해 공인의 사적 영역이 침해되는 경우,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인지, 긴급성과 공공성이 있는지, 취재방법은 적절한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생활 공개가 정당화하려면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어야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이 정당해야 한다”면서 “이는 주장하는 자(언론)가 입증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³⁾

3)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31628 사생활
침해행위금지등



※ 이하 모든 사진의 출처는 '더 테러 라이브 홈페이지'(www.theterrorlive.kr)



글. 양려원
변호사(법무법인 인터로)

“나는 네가 될 수 없다.”

누구나 이런 단호한 말에 상처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차마 네가 될 수 없고, 너는 단연코 내가 될 수 없는 현실을 느끼곤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섬에 머물며 그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낸다. 가만있어도 너의 목소리가 들



살펴본 <더 테러 라이브>

린다면 좋으련만, 현실은 들려오는 목소리에도 귀를 막는다. 집이든, 일터든, 혹은 법정이나, 하다못해 운전 중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아파하고 몸부림친다.

너와 나 사이에서 맑은 목소리를 내어주는 이는 정녕 없을까? 법률가가 본 영화 그 네 번째는 영화 <더 테러 라이브>를 ‘입장’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목만 놓고 보면 ‘테러 생중계’ 쯤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이 공공의 적이 되고, 언론은 그것을 보도하려고 혈안이 되고, 시민을 보호하고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권력의 입장은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지, ‘나는 영원히 네가

될 수 없는 건지' 영화 속에서 살펴보자.

교통정체가 서서히 풀려가는 어느 평범한 월요일 오전, 교통방송이 흘러나온다. 대통령이 국회로 갈 예정이어서 여의도로 통하는 길의 정체가 예상된다. 대통령이나 여의도의 교통정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SNC 방송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윤영화(하정우 분)는 다가올 일을 알지 못한 채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기 시작한다. 이때 한 청취자, 박노규의 전화가 걸려오고 윤영화는 그의 주제에 어긋난 이야기를 무시한다. 화난 박노규는 한강의 다리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위협은 사실이 되어 마포대교의 일부 상판이 무너진다.

“지금 이거 테러예요. 내 일생일대의 기회 같아요.”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사건이 한 방송국 직원에게는 출세의 기회가 된다. 윤영화에게 테러와 그 중계는 개인적으로는 밀려났던 TV앵커 자리로 돌아가고 이혼한 아내와 다시 결합할 기회다. 윤영화는 보도국장 차대은에게 자신이 테러범에게서 협박을 받은 사실과 상황을 전하면서 마감뉴스 복귀에 관한 협상을 한다. 단박에 누추한 라디오 진행자 윤영화는 TV 진행자로 깔끔하게 변신을 한다. 방송국에게는 시청률을 높일 절호의 찬스다. 시청률을 위해 차대은 국장과 방송국은 테러범이 요구한 거액의 돈을 건네준다.



테러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윤영화가 국가기관에 이를 알리지 않고 테러를 생방송하기로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언론기관이라도 꼭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한 내용을 공표할 자유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러를 생방송하는 것은 어떨까? 실제 테러가 생중계된다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방송에서 눈을 떼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미국의 9.11 테러 장면과 이라크에서 희생된 김선일 씨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아야 했다. 테러를 생중계한다는 것이 익숙해진 현실 이면서도 그 이면에 놓인 언론이 인간의 존엄과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지, 언론 스스로 보도를 통해 테러를 양산하지는 않는지 우려 내지 의심되는 면이 있다.

언론의 자유는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다. 건전한 사회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내재적 한계를 갖는 권리다.



테러는 매우 자극적이어서 언론기관이 보도하고 싶어 하는 뉴스거리가 될 수 있지만, 이를 보도할 때는 방송보다 먼저 사람을 고려하여야 한다. 방송의 영향력이 큰 만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문제되었던 성재기 씨 자살 장면 보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다.

더구나 이 영화에서는 언론기관이 테러 생방송을 위해 테러범과 협상을 하고 돈을 건네준다. 더 나아가 테러범을 자극하여 추가적 테러를 하게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언론의 상업성과 선정성이 극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꼬집는다.

이러테면 영화 속에서 테러범에 의해 끊어진 마포대교의 상판위에는 테러범과는 아무 상관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갇혀있다. 테러범은 이들을 구조하려고만 해도 재차 다리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한다. 테러의 전과정이 생방송되는 상황에서 인질이 된 시민들은 전 국민의 눈

앞에서 죽음을 맞이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상황이 긴박하다.

그런데 방송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차대는 국장은 ‘인질이 죽어야 테러가 끝난다’고 말한다. 테러범도 그들이 끝내 죽기를 바라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사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과연 언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 생명이 방송사의 시청률을 올리는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빙자하여서도 용납할 수 없는 언론기관의 공정성과 윤리적 의무를 위반하고, 테러행위의 교사내지 간접정범에 해당할 범죄행위이다. 이런 언론기관의 의무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상과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다.

이제 테러범을 보자. 그는 마포대교에 폭탄을 설치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 폭탄을 여러 곳에 설치한 것은 폭발물 사용죄에 해당하고, 다리를 폭파하여 일반교통방해죄와 그로 인한 치사상의 죄를 저질렀다. 그 외 상해죄와 중상해죄, 상해치사와 살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죄가 경합되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의 입장을 보자. 테러범은 마포대교 보수공사 도중 몇 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사건과 그에 대하여 국가는 보상은커녕 아무런 사과도 없었음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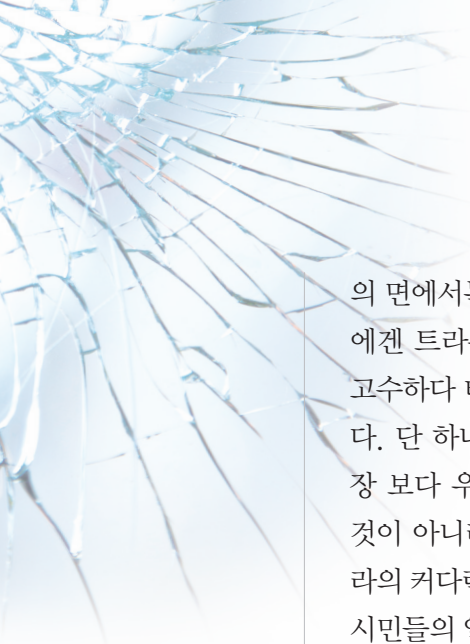
야기한다. 이에 자신은 세간의 시선 끌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포대교를 폭파하였음을 밝힌다. 여기에서 테러범은 사실 마포대교 보수 공사 중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의 아들이다. 아버지 행세를 하며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한 청년은 테러범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테러라는 극단적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와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더라. 그가 요구하는 것은 오직 '대통령의 사과'다. 테러의 동기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테러범의 요구 역시 큰 무리가 없는 듯해도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어떤 연유에서건 그는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렀다. 준엄한 현실에서 그 누군가가 그의 입장이 되지 않는 한 그를 이해하기도 대변하기도 어렵다.

그럼 테러범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국가권력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그깟 대통령의 사과, 해주면 그만 아닌가?'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테러행위는 엄연히 범죄행위이고 범죄행위에 처벌이 따르는 것은 국가권력과 법의 역할이다. 국가의 최고통치자의 사과는 테러라는 범죄행위에 굴복하는 것을 상징할 수 있다. 또한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와의 타협은 장기적으로 보면 테러의 반복을 부를 수 있다.



테러행위는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포스러운 수단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엄연히 불법이다. 불법은 법질서 안에서 응당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행위이다. 테러범은 불법을 빌미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수많은 입장의 시민들은 너도나도 테러범으로 변할 것이 분명하다. 국가는 안위를 위협하는 테러로부터 시민을 지켜낼 소명이 있다. 그러므로 테러범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국가권력의 입장은 정당하다. 하지만 대통령 대신 등장하여 테러에 대한 국가의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경찰청장은 생방송 중 테러범이 설치한 폭탄에 의해 희생된다.

그럼 영화 속에서 경찰청장이 테러범이 설치한 폭탄에 의해 희생되면서까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은 모습은 정당한가? 법질서



의 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트라우마가 있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다 테러범에게 김선일 씨를 잃었다. 단 하나의 생명도 국가정책이나 입장보다 우선했으면 하는 바람은 헛된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다. 또한 나라의 커다란 일에 가려진 민생과 억울한 시민들의 일들을 헤아려 주는 것이 국가적 모욕일 수만은 없다.

법은 그 공감대에서 나온 결과물일 뿐이다. 영화에서처럼 테러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는 협상팀을 만들어 현장에 급파하여 후발 사태를 막기 위한 백방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국민적 신망은 그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이다. 테러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법률은 국회로 간 뒤 길을 잃었다. 테러 관련 입법이 시급한 시점이다.

영화 <더 테러 라이브>는 국가권력을 좀 더 뼈뼉하게 보고 있다. 사과를 하지 않는 대통령에서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사과를 유도하는 앵커 윤영화의 비리를 폭로하여 국민 여론을 희석시키려한다. 더 나아가 테러범을 무참히 사살하고 상황을 목격한 윤영화에 대해서도 사살명령을 내린다. ‘권력의 수뇌부에는 음모와 권력의 암투가 있으리라.’ 일반인의 상상에 머물 권력의 속성을 미루어 짐작하여 본다. 영화는 또 상상이 주된 영역이니 이를 두고 ‘뭐 이렇기까지야 하겠느냐’ 반박할 생각은 없다. 법적으로 보

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영화의 개인비리를 보도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아무 관련이 없고, 오로지 윤영화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방송을 한 것이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 언론의 자유나 기타 국가의 공공이익과는 무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윤영화와 싸우다가 빌딩 밖으로 떨어진 테러범을 사살한 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범죄자이니 죽여도 좋을까? 그렇지 않다. 아무리 범죄자라도 총기를 사용하거나 저항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 체포가 우선이다. 그에게도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처벌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빌딩 밖으로 떨어져 윤영화의 손을 잡고 있는 테러범을 저격한 것은 살인죄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이다.

다시 윤영화를 보자. 주인공 윤영화역의 배우 하정우는 혼자 영화 전체를 이끌다 시피 한다. 출연자도 많지 않고 공간도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영화는 긴장 속에서 빠르게 전개된다. 영화 속 윤영화는 처음 어눌한 시민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도 가능성도 없어 보였다. 그에게는 다시 온 출세의 기회만이 보였다.

하지만 영화가 전개되는 동안 그는 테러범의 입장이 되어간다. 전처 이지수 기자가 마포대교 상판에 갇혀있을 때와 정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상판 위의 그녀

가 죽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붙잡고 있던 테러범이 사살되었을 때 그는 서서히 테러범의 마음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에게 떨어진 사살 명령에 그는 테러범이 되어 폭탄의 버튼을 누른다. 아이러니하게도 방송국 건물은 국회의사당으로 넘어진다. 거기에서는 이 테러와 관련된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이어지고 있는 그곳으로 말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테러는 어떤 얼굴일까? 1988년도였을까? 내 기억 속에 TV로 본 공포스런 실제상황은 인질극을 벌이는 탈옥수 지강현이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말하며 인질극을 벌이던 그는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다. 그때 TV는 수없이 인질극 장면을 반복했다. 자극적인 고통의 기억이다. 두려움과 소름끼치는 공포의 기억은 나이 들어서도 반복되었다. 일본의 지하철역에서는 사린이라는 독가스가 살포되었고, 아랍권의 자살 테러 소식도 끊이지 않는다.

우리도 테러에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한지는 오래되었다. 민방위 훈련에 테러대비 훈련이 추가되고 테러 발생시 행동요령이 지하철에 공시되기도 했다. 그래도 서울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일까? 방송과 시민과 국가권력은 어떻게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까? 테러리스트의 테러를 위한 명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



들여질까?

테러의 도전은 명분의 도전이다. 어찌보면 두고두고 지강현과 같은 이들이 그저 씁쓸한 사건정도로 기억될 것인지, 영화 <더 테러 라이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기억과 기대와 실망을 버려 영화로 올렸다. 여기에 방송이라는 데코레이션은 화려하고도 자극적 요소이지만 자칫 필요악적인 존재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테러에 관해 방송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지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이다.

기어이 네가 되지 않고는 너를 모른다. 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의 의견이나 억울함이 상부까지 잘 전달되는 통로가 잘 된 나라일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입장에서, 언론이 시청자의 입장에서, 내가 너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지고 테러 위협은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영화 <더 테러 라이브>에서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의 주요 기능과 효율적인 활용방안



글. 김광수
대한상사중재원
수석위원



최근 중재제도의 현황

전통적으로 개인과 기업은 경제행위로 인한 다툼이 당사자 간의 화해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헌법상의 청구권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에 따라 분쟁을 최종 해결한다. 그러나 소액 재판과 중재법에 의한 중재는 재판청구권을 제한 받기도 한다. 그것은 개인과 기업의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원도 소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송 일변도의 입장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0년 민사조정법을 개정하고 다시 2010년에는 상임조정위원제도와 지역별 조정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최근에는 대한상사중재원 등과 연계 조정업무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소송이외의 분쟁해결제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은 중재, 조정, 알선 등 소송에 의한 판결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ADR 중에서도 중재는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이 법적 효력을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최근 그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는 1966년 3월 중재법이 제정되고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의 전신인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중재제도가 출범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외국무역업자와 관련한 알선 위주의 클레임 해결업무와 외환통제시절 외국에 무역거래 수수료와 클레임액 송금을 위한 외국환 추천업무¹⁾에서 점차적으로 중재업무로 전환하였다. 본고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거래 분쟁해결 방법인 중재, 알선의 기능, 그 사례와 개인, 기업 및 법률전문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의 발자취와 현황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법 제32조(비영리 사단법인)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1966년 3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위원회로 발족하여 1970년 3월 21일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가 설립되고 1980년 8월 29일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확대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주요기능으로는 국내외 상거래 분쟁의 해결(중재, 조정, 알선), 국내외 상거래 분쟁의 예방(상담, 클레임예방설명회) 및 중재에 관한 국제협력, 조사연구, 계몽홍보 업무가 있다. 특

1) 외환통제시절에 위약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해약금 등을 해외의 거래선에 송금하기 위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추천을 받아야만 했음

2) 중재기관은 아니며 서울글로벌타워 내에서 중재심리 및 세미나 공간 등을 제공함

수업무로는 남북상사중재 사무처리와 투자분쟁모니터링 업무가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업무의 법적 근거는 중재법, 대외무역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과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연간 중재를 400여 건, 알선은 1,000여 건 그리고 상담은 15,000여 건 정도를 접수·처리하고 있다. 중재사건은 1996년에 100건, 2002년에 200건, 2007년에 300건을 돌파한 이래 2012년에는 360건을 기록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8월 20일 법무부로부터 공익사단법인으로 인가 받은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DRC)²⁾의 임의중재(Ad-hoc Arbitration) 기능을 잘 활용하면 중재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록 서울국제중재센터가 중재기관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들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는 물론 외국중재기관의 국제중재심리를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알선 및 상담 현황 (단위: 건)

구분 \ 기간	2012년	2011년	2010년
중재	360	323	316
알선	938	915	801
상담	11,989	11,339	8,645
총계	13,287	12,577	9,762

국제중재기관으로서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적인 중재기관의 구비요건으로는 ① 중재기관이 속한 국가의 중재법이 국제성을 갖추어야 하고 중재기관의 규칙 또한 국제적이어야 한다. ② 중재기관이 풍부한 국제사건의 처리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③ 국제중재를 전담할 분야별 중재인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④ 중재인들이 양질의 판정을 내리기 위한 한 방편으로 중재인 보수가 적정해야 한다. ⑤ 중재이용업체가 만족할 수 있는 중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⑥ 중재사무국 직원의 국제사건 처리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등이 있다.

위의 기준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최근 유엔의 중재법과 중재규칙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 2011년 9월 1일자로 국제규칙과 국내규칙을 이원화 개정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0년 기준 세계에서 7번째로 국제중재사건을 많이 접수한 기관이다.³⁾

대한상사중재원의 2013년 12월 현재 총 중재인은 1,061명(외국인 110명 포함)으로 법조계 496명, 실업계 228명, 학계 232명, 공공단체 82명, 변리사 등 기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국제중재인은 240명으로 법조계 161명, 실업계 17명, 학계 43명, 공공단체 19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18명으로 구성된 국제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중재인 선임, 기피, 교체, 해임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일반국민이 이용하는 소액사건의 경비 부담 완화 차원에



서울 국제중재센터에서 활동하게 될 대한상사중재원과 주요 국제중재기관

3) 미국중재협회 888건, 프랑스국제상업회의소 793건(국내사건 포함),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418건, 런던국제중재법원 237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140건, 스톡홀름국제상업회의소 140건, 대한상사중재원 52건, 비엔나국제중재센터 37건, 북경중재위원회 32건, 일본상사중재협회 26건, 홍콩국제중재센터 16건(임의중재를 포함하면 175건)

서 2007년부터 중재비용을 인하였기 때문에 중재신청금액 2억 원 이하 사건의 중재인 수당은 여타의 국제중재기관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은 3년에 걸쳐 심리실과 사무실의 구조를 개선하여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2010년에 52명의 대형 심리실을 확보했으며 2011년에는 사무국, 중재준비실 및 중소형 심리실을 리모델링했고 2012년에 부산지부 사무실과 심리실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중재절차 진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무리했다. 또한 사무국 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호사, 로스쿨 졸업생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고 2007년부터 매년 외국 중재기관과 관련 외국대학교에 연수를 보내 중재전문가 교육을 시키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와 사례

중재(Arbitration)는 당사자 합의(중재합의) 하에 분쟁을 법원의 판결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최종 해결하는 제도이다. 중재절차의 전제조건은 중재합의이다. 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분쟁에 대한 중재합의가 없다면 중재신청은 할 수 없다. 그 경우에는 무료 서비스인 알선에 의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는 별도의 문서 또는 계약서상의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표준 중재조항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있다.

국문중재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의 수 [1명/3명] 중재지[도시/국가] 중재에 사용될 언어[언어]

영문중재조항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one/three] The seat, or legal place, of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city / country]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language]”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도

국내 중재판정 사례

2005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건축주인 건축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10년 신청인은 준공 후 피신청인 측이 공사 잔대금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서상의 중재조항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8천만 원과 지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이자 지급을 바라는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이 주장한 공사 잔대금 지급 신청과 지연이자 신청에 대하여 판단한 결과 신청금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기일부터 판정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피신청인이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리고 중재비용을 피신청인에게 부담시켰다. 이 중재 사건은 85일 만에 처리가 되어 양 당사자 측의 분쟁해결 경비를 절감시키고 시간을 절약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국제 중재판정 사례

2010년 한국 서울의 K사는 중국의 N사로부터 톤당 575달러, 총 1,725,000달러에 페로실리콘 3,000톤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N사는 국제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계약물품을 선적하지 않았고, 이에 K사는 동 제품을 N사 측과 계약한 금액 보다 아주 비싼 가격으로 대만에서 대체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K사는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N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N사는 중국 지방정부의 전력 통제에 따라 계약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전력 부족으로 생산이 불가하여 생산할 수 없어 선적을 불이행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불이행으로 한국 측의 클레임을 받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한국의 K사는 계약서에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라는 중재조항(중재합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게 되었고 중재판정부로부터 승소판정을 받아 미화 50만 불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사례의 경우 중국기업과의 분쟁을 서울에서 판정을 받아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판단된다.



국제중재심리실 전경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비용

국내중재와 국제중재의 중재비용은 다르게 산출된다.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중재비용은 관리비용, 중재인수장과 중재경비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제중재는 신청요금 백만 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중재판정문에서 부담자와 분담비율을 정해주나 주로 패소자가 부담하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2억 원 이하의 사건은 정부에서 4십만 원을 지원해 준다. 중재신청금액이 아무리 크다 해도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의 중재비용은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국내 및 국제중재 요금표

신청금액	국내중재	국제중재
1천만 원	4만 5천 원	4만 5천 원
1억 원	4십 5만 원	7십 5만 원
2억 원	8십 5만 원	1백 4십 5만 원
1십억 원	1천 3백만 원	2천 5백 5십만 원
2십억 원	2천만 원	3천 6백 8십만 원
5십억 원	4천 5십만 원	8천 5백 5십만 원
1백억 원	5천 6백만 원	8천 9백 5십만 원
5백억 원	1억 5천만 원	1억 9천 4백만 원
1천억 원	1억 9천 3백 5십만 원	2억 4천 1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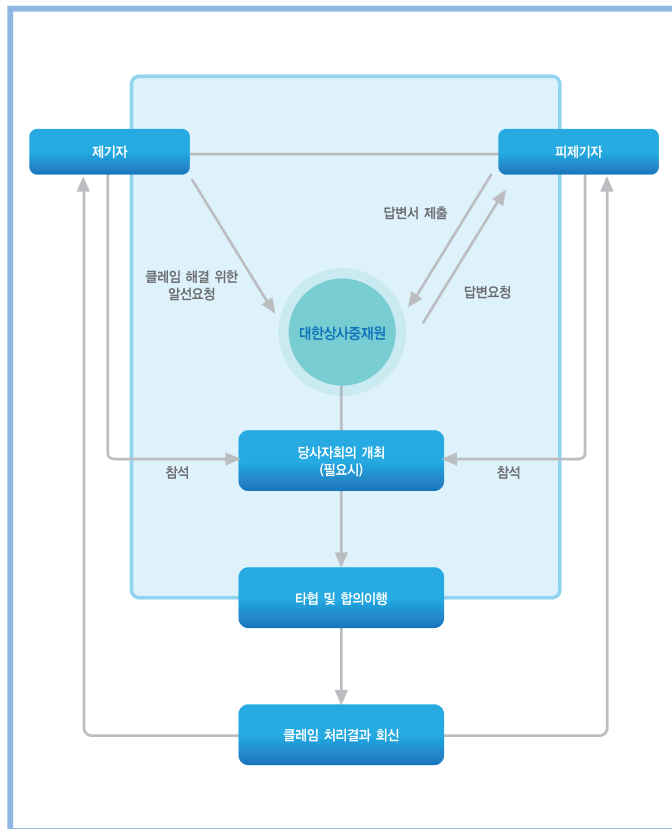
4) 대한상사중재원 분쟁종합지원 센터에서는 전문위원들이 알선업무 이외에도 법률상담, 계약서 작성 지도, 분쟁해결 방법안내 등 분쟁해결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내방, 전화,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대한상사중재원의 알선업무와 사례

알선(Intermediation)⁴⁾이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전문 직원이 분쟁사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장을 무료로 교환하게 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시켜주는 무로서비스제도이다. 알선은 대개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 많이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방당사자의 신청만으로 가능하다. 알선의 효력은 양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한 해결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알선의 참여와 결과는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국제알선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알선에 불응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법적 책임이 추궁된다. 알선은 ① 국내알선 : 국내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해결 비율이 평균 60% 내외로 1~2개월 범위 내에서 해결된다. ② 대내알선 : 외국 당사자가 국내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으로, 해결 비율은 50% 내외로 2개월 내 해결된다. ③ 대외알선 : 국내 당사자가 외국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으로, 해결비율은 30% 내외로 다소 낮지만 중소기업인들의 분쟁해결을 3개월 범위 내에서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알선은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국제 또는 국내 분쟁의 해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① 물품거래 : 물품(용역)대금청구, 물품하자배상청구, 납품이행청구, 인수거절 배상청구 ② 대리점거래 : 커미션청구, 독점대리점 계약위반배상청구 ③ 운송거래 : 운송지연손실청구, 운송물품손상배상청구, 적하보험금

청구 ④ 투자거래 : 이익배당청구, 투자지분
정산청구, 합작(기술)투자계약위반 ⑤ 산업
재산 : 산업재산 소유권(사용권) 양도금(사용
료) 청구, 산업재산권침해배상청구 ⑥ 건설용
역 : 설계변경 추가공사비청구, 공사지연 지
체상금청구, 공사기성고(편집자 주 : 공사 과
정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정도) 확인정산청구,
공사하자수리이행청구 ⑦ 부동산거래 : 공장
상가 주택 등의 분양, 매매, 임대차 계약위반
청구 ⑧ 기타 국내 국제 상거래분쟁



대한상사중재원의 알선절차도

국내 알선 사례

2012년 가맹점 을은 본사인 갑과 아이스
크림 판매 부대상품 가맹점 계약을 체결
했다. 을은 약 2개월간 영업을 하던 중
동일 상권 내에 다른 가맹점이 개설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본 사건을
접수한 대한상사중재원은 양 당사자를
모이놓고 회의를 개최하여 갑이 을의 제
품을 전부 회수하고 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알선을 마무리 했다.

국제 알선 사례

2011년 한국 경기도의 A사는 중국 북경
의 B사로부터 파스타 제조기계 300개
를 수입했다. 그러나 수입통관 시 식약
청 검사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
입을 할 수 없어 수출자인 중국 측에 클
레이를 제기했으나 B사 측은 한국 측에
서 통관 시 필요한 검사항목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아 검사에 적합한 물품을
공급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한국
측의 클레이를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 사건을 접수한 대한상사중
재원은 중국 측이 물품대금의 60%인 미
화 8,000달러를 한국 측에 지급하는 조
건으로 알선을 마무리 했다.

상사중재 및 알선제도의 활용 방안

개인과 기업이 상사중재제도를 활용하려면 우선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설정하는 계약체결단계, 중재심리단계, 중재판정단계 및 중재판정 후 야기될 수 있는 중재판정의 취소소송과 강제집행에 해당되는 지식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을 잘 이해하면 중재제도 이용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① 기업체는 상대방과 계약협상을 할 때 무엇보다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 작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결한다”라는 선택적 중재조항은 무효이다. 그리고 국제계약에서는 중재지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중재지로 선택하기 위해서 한국 중재법의 국제성, 중재기관의 풍부한 국제사건 처리 경험 등을 상대방에게 잘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② 중재합의는 소극적, 적극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직소금지와 중재로 해결해야만 하는 법적효력이 있다. 만일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1차 변론일 까지 중재합의의 존재를 입증하면 즉 방소항변(편집자 주: 원고가 제기한 소(訴)에 대하여 부적법하거나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본안(本案)의 변론을 거부할 수 있는 피고의 소송법상의 권리)을 하면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게 된다. ③ 한국 중재법에는 중재인 자격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 중재인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로 선정하게 된다. 중재 당사자들은 기관중재인 경우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위촉 관리되고 있는 중재인단의 중재인을 활용할 수는 있다. ④ 중재의 대리는 변호사 또는 중재판정부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그 대리를 할 수 있다. 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 법원 또는 중재로 다시 다룰 수 없다. ⑥ 중재판정 후 패소자는 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자는 패소자가 중재판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다.

최근 중재는 일부 학자들이 ADR에서 제외할 정도로 독자적인 영역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경제규모에 비하면 발전할 가능성과 시장은 매우 넓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중재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 이외에 정책연구를 전담하는 전문연구기관, 중재전문대학원 혹은 중재실무연구원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우선 대학 차원에서 기업통상, 협상 및 상사중재를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는 과정을 개발하여 기업과 연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역과 통상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소견



출처 : 로이터, 「Judge: Monroe right of publicity ended at death」, 2007년 5월 4일자



글. 이영진
서울제8중재부 중재위원,
변호사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퍼블리시티권(publicity)이란 흔히 자신의 성명, 초상, 목소리, 서명, 이미지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그 이용을 허락할 수

1) 물건(物權)은 물건(物件)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대세적(對世的) 권리로서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한 채권(債權)과 구별되며 우리 법제상 물건은 임의로 창설할 수 없고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있는 권리 혹은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정의 자체에서 엿볼 수 있듯이 퍼블리시티권은 인간의 인격적 요소에서 파생하는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당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건(物權)¹⁾과 유사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재산권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권리의 목록에 이미 초상권, 성명권 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도입하려는 것은, 기존의 초상권, 성명권 등은 인격권으로서 그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위자료의 수준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는바 그 액수가 미미한 반면, 특정인의 초상권, 성명권에서 연유하는 재산적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인격적 요소와 분리된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파악하게 되면 이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고액의 배상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일례로 최근 텔런트 장동건 씨 등 유명 연예인 60명의 사진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푸딩’의 제작업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업체에 대해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받은 연예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연예인 한 명 당 각 300만 원씩의 지급을 명했다(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09239호).

위 판결이 인정한 배상액에 대해 비판적인 논자들은 만약 위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가 초상권 및 성명권과는 별개의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해당 연예인들의 통상적인 광고 모델료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수십 배 더 많은 금액의 배상금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위 제작업체는 극히 저렴한 비용으로 유명 연예인을 자사 상품의 광고 모델로 사용하여 매출을 올린 셈이 되었으니 비록 소송에서는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으로는 밀짚 것이 없다는 것이다.

얼굴인식 애플리케이션인 '푸딩'
(출처 : 법률신문, 「법원, “연예인 닮은꼴
찾기 앱 ‘푸딩’은 초상권 침해”」,
2013년 10월 7일자)



퍼블리시티권은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서, 제2연방 항소법원은 1953년 Haelan Laboratories, Inc v. Topps Chewing Gum, Inc. 사건(프로야구 선수가 자신의 사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츄잉검 회사와 체결한 사정을 알고도 동종 업종의 타 회사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 문제가 된 케이스)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무형의 재산권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는데 동 사건에서 제2연방 항소법원은 개인의 동일성을 허락 없는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러한 동일성의 전속적인 사용을 승인하는 것을 퍼블리시티권의 주된 내용으로 보았다.

위 Haelan 사건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심화해서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사람은 Melville B. Nimmer 교수인데, Nimmer 교수는 그의 논문²⁾에서 전통적인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적이고 불가양의 권리이므로 동일성의 상업적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고 프라이버시권의 체계에서 유명인이 광고회사에게 제3자로부터의 보호가 가능한 전속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개

2) Melville B. Nimmer, The Right of Publicity,
19 LAW&CONTEMP. PROBS. 203(1954)

3) 이상의 서술 내용은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발행 2012년 3월 "Law &
Technology" 제8권 제2호(2012년 3월)
에 게재된 논문(강은경, Shaw Family
Archives Ltd. V. CMG Worldwide, Inc.
사건을 통해 본 사후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가능성을 요약한 것이다.

4) 본고에서 기술하는 법원의 명칭과
관련하여 첨언하자면 1995년 3월 1
일부터 기존의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통합되어
서울지방법원이 되었고 2004
년 2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됨과
아울러 기존 동부·서부·남부·
북부지원이 법원으로 승격되었다.

5) 1977년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우리나라 물리학자로서 그의 죽음과
관련하여서는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다.

진하면서 초상의 상업적 이익인 초상의 공개가치는 종래의 프라
이버시권이 아닌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았다.³⁾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분쟁 사례

실정법상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우리의 현실에
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 입장이 뚜렷하고 아직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도 존재하지 않
는바 하급심 법원 역시 동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서로 엇
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서울민사지방법원⁴⁾이 1991년경 퍼블리
시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동 권리를 인정한 최
초의 판결을 선고했다는 내용이 검색되는데 이는 아마도 서울민
사지방법원이 1991년 7월 25일에 선고한 90가합76280호 사건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 사건은 상품선전용 텔레비전광고 출연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광고를 한 경우 광고주의 광고모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결로서 동 사건에서 재판부는 “모델 등은
자기가 얻은 명성으로 인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을 대가를 얻
고 제3자에게 전속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가
지고 있어서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불법사용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재산상 손해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시
하면서 개인의 성명과 초상에 관한 재산적 이익을 인정하고 이때
의 재산적 이익이란 광고모델이 자유처분할 수 있는 그의 성명 및
초상의 이용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는바 동 판
결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동 권리를
명확하게 인정한 사례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판례검색 서비
스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가 처음
으로 등장한 판결로서는 이른바 ‘소설 이휘소 사건’(서울지방법
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호)이 있는데 동 사건에서 이휘
소⁵⁾의 미망인과 딸이 이휘소에 관한 소설을 쓴 작가를 상대로 프



故 이휘소 박사의 생전 모습
(출처 : 헤럴드경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휘소 박사, 『히스입자』 최초 명명, 2012년 7월 5일자

라이버시,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문학작품인 위 소설에서 이휘소의 성명, 사진 등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을 배척하였다.

문학작품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문학작품이라고 하여 판매 등 상업적 이용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 동 판결은 하급심 판결 중 최초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동 권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배우 최진실과 한미약품 사이의 분쟁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연예인이 자신의 초상 등을 상품의 광고나 표장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재산적 권리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00. 5. 16. 선고 99나30444호) 이는 결국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동 사건에서 재판부는 유명인의 초상뿐만 아니라 음성, 연기까지 재산적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영애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10. 선고 2004가합16025호)은 여배우 이영애 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화장품 회사가 계약기간을 넘겨 이영애 씨의 광고사진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분쟁인데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면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연예인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동 판결은 퍼블리시티권이 일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라는 취지인데 연예인과 일반인 사이에 이와 같은 차등을 두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승소한 배우 이영애 씨(출처: 동아일보, 「법원, 이영애씨 모델 계약기간 지나 광고한 회사에 배상 판결」, 2004년 12월 12일자)

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의 문제도 있거니와 개념상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과는 분리된 별개의 재산권이라고 하면서도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배상금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배우 김민희 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의류 등을 통신판매한 인터넷 경매사이트 운영업체에 대해 김민희 씨 측이 제기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16. 선고 2002가단54093호)에서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퍼블리시티권의 상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효석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호)이 있는데 상품권 판매업체가 문화상품권에 소설가 이효석의 초상, 서명을 임의로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실시하면서 퍼블리시티권의 대상과 관련하여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실시한 점이 이채롭다.

문화상품권에 들어간故 이효석 씨의 초상
(출처: 한겨레,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딸
초상권 소송」, 2006년 9월 22일자)



동 사건에서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과 관련하여 상속성을 부정하는 경우 사망이라는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재산적 가치가 크게 좌우되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상속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은 현행법상의 제 권리 중 저작권과 가장 유사하다는 전제 하에 저작권법을 유추적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한도 해당자의 사후 50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 결론의 당부를 떠나 동 사건에서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과 더불어 사후 존속기간에 대해서까지 판단을 하여 흥미롭기는 하나 개인적 소견으로는 동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법률의 해석을 넘어 입법의 수준까지 나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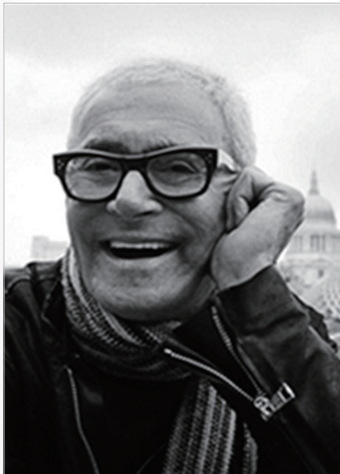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서는 ‘제임스 딘 사건’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는 미국 영화배우 제임스 딘의 유족들 및 재단이 국내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일련의 사건들이다. 먼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7. 8. 29. 선고 94가합13831호 사건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성은 부인하였고 가사 상속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의 사후 존속기간이 저작권법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하여 앞에서 언급한 ‘이효석 사건’의 재판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서울지방법원 1997. 11. 21. 선고 97가합5560호 사건에서도 제임스 딘 유족들이 패소를 했다. 동 사건에서 재판부는 소제기 당시 사후 42년인 제임스 딘의 퍼블리시티권이 유효하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생전 사용(lifetime exploitation)이 상속성의 요건임을 가정적으로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특허법원 1998. 9. 24. 선고 98허171 등 사건은 제임스 딘 유족 측이 주병진이 국내에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던 제임스 딘 관련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신청한 사건인데 당시 특허법

원은 퍼블리시티권이 상속, 양도, 신탁될 수 있는 재산권임을 인정함으로써 상속성을 부인했던 위 서부지원과는 대조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임스 딘 유족에게 퍼블리시티권
소송을 당한 주병진 씨
MBC 무릎팍도사 방송 캡처
(출처 : 아시아경제, 「주병진, 속옷사업
1600억 달성.. "꿈 같았다" 고백」,
2011년 7월 14일자)



미용업계 거장 영국의 헤어드레서
故 비달 사순
(출처 : 스포츠 동아, 「헤어계 거장 '비달
사순 별세...애도물결 이어져」,
2012년 5월 10일자)

이에 반해, 제임스 딘 재단이 제기했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문법의 제정 없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호).

‘비달 사순 사건’은 모 미용학원이 학원건물 외부에 ‘비달 사순’이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건물내부에도 비달 사순의 사진을 부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인데 동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고객 흡입력을 근거로 인격권과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아가 그 권리에 양도성이 있음을 인정했다(서울고등법원 2000. 2. 2. 선고 99나26339호).

‘웃찾사 사건’은 개개인을 넘어 단체에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인데 동 사건에서 법원은 희극 연기자들이 TV 프로그램인 ‘웃찾사의 따라와’ 코너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어 그들 개인의 용모, 이름, 음성, 동작, 실연 스타일 등

총체적 인성(personal identity)에 대한 상품적 가치인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판시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연기자 개개인이 아닌 '팀을 이룬 연기자들'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가단 250396호).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4. 2. 12. 선고한 2002가합3370호 사건에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는 주부 모델에 대해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했고 그 권리의 양도성까지도 인정했다(본 사건의 경우 위 주부 모델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양도받은 업체가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비록 원고가 손해액 입증에 실패하여 청구가 기각되기는 했지만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본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자신의 사진을 이용해 허락 없이 광고 포스터와 플래카드를 제작한 업체를 상대로 가수 은지원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수원지방법원은 실정법상 근거 없이 물권과 유사한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2004. 12. 16. 선고 2004가단 20834호).

강남의 한 치과가 홍보 블로그에 자신들의 치아교정 전후 사진을 함부로 게재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배우 수애와 소녀시대의 제시카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문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만을 인정했다(2013. 8. 20. 선고 2013가합2363호).

그 외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주장하

수애와 백지영을 비롯한 최근 퍼블리시티
권 침해 소송 하급심 판례
(출처 : 세계일보, 「백지영 · 남규리는 인정
되고 김남길 · 수애는 안 되고…」,
2013년 10월 6일자)

며 소를 제기한 연예인들에 대해 최근 연이어 이들의 주장을 배치
하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하급심 판례(올 하반기 이후 기준)

날짜	원고	피고	퍼블리시티권 개념 인정 여부	손해배상 책임
6월20일	백지영, 남규리	A성형외과	○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500 만원씩 배상 (원고 일부승)
7월12일	백지영	B성형외과	○	원고 사진을 상업적 목 적 이용, 400만원 배상 (원고 일부승)
8월27일	백지영	C·D 성형외과	X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 해 300만원 배상, 재산 상 손해 인정X (원고 일부승)
9월13일	원더걸스, 슈퍼주니어 멤버 등 연예인 13명	E치과	○	사진 게시로 수익 얻었 다 볼 수 없다(원고 패)
26일	송혜교, 장동건, 수지 등 연예인 8명	F피부과	○	연예인들 손해 산정 할 수 없어 배상 책 임 없음 (원고 패)
10월1일	소녀시대 · 동방신기 · 2PM 멤버, 김남길, 수애, 배용준 등 연예인 60명	KT하이텔	X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 300만원 씩 배상 (원고 일부승)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일부 예외적인 판결이 있기는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의 도입을 지지하는 견해들의 일반적인 입장은 퍼블리시티권은 배우, 탤런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들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유명인’이라는 개념의 불명확성은 제쳐두고라도 과연 극히 소수의 유명인들에게만 인정되고 절대 다수의 일반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권리목록에 새롭게 올리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고 우리 헌법질서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유명인들의 유명세는 해당 유명인 혼자만의 노력과 힘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는 일반인인 팬들과 기타 다수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의 결과물인데 그에 따른 과실(果實)을 해당 유명인이 혼자 향유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와 같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허용하는 경우 자칫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견해들도 존재한다. 성명·초상의 자유로운 사용이 금지되면 불가피하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인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권리가 신설됨으로써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집단이 생기게 되고 다른 권리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그 지지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물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라는 것인데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 하에서 이와 같이 명문의 근거규정도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에 유사한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며 이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하급심 판결들의 주된 논거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를 주장하는 견해들 가운데에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자는 목

소리가 있고 실제로 2005년경 박찬숙 의원 등 31인의 의원들과 2009년경 이성현 의원 등 10인의 의원들이 ‘초상재산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개인이 생래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성명, 초상, 음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법률인 저작권법의 법리를 원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의 경우 기존의 초상권 개념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차용해 올 필요가 없다고 본다.

대법원은 초상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정의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그리고 이와 같은 초상권의 내용에 자신의 초상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인의 초상이 침해된 경우 먼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외에 더 나아가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에 관하여 재산적 이익이 있고 이와 같은 재산적 이익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를 당하였다고 한다면 해당 당사자는 그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결국 손해액 입증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으로서 굳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원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초상권이 내포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따로 떼어 내어 이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포장하는 것이 관련 분쟁 해결에 있어서 얼마나 더 유용할 것인지 의문이고 기존의 초상권 개념으로 해결하지 못할 사건은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이다.

일반인 방송 전성시대, 그 명과 암 : 일반인 예능 펄펄 나는데 논란도 끊이지 않는 이유



글. 정덕현
칼럼니스트

들어가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하고 노래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이게 옛말이 된 것 같다. 최근 TV를 켜면 연예인들보다 일반인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보다 일반인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시청률에 있어서도 훨씬 앞서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든 걸까.

유재석이 진행했던
MBC 예능프로그램 <놀러와>
(출처 : MBC 홈페이지[www.imbc.com/
broad/tv/ent/yoonkim/])

연예인 프리미엄이 사라진 일반인 전성시대

최근 예능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토크쇼들의 시청률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연예인들의 신변잡기나 짧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는 대중들이 식상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 준다. 이른바 리얼 예능이 새로운 트렌드로 들어왔을 때는 토크쇼도 리얼 토크쇼라고 해서 주로 연예인들의 사적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런 유사한 토크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 연예인 토크쇼들은 그 소비 또한 빨라지게 되었다.



이런 연예인 토크쇼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유재석이나 강호동 같은 발군의 MC들이 맡고 있는 프로그램조차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다. 유재석의 <놀러와>가 거의 3%대까지 시청률이 떨어지면서 결국 폐지되어 버렸고, 다시 돌아온 강호동의 <무릎팍도사>나 그가 새로 시작한 <달빛프린스> 역시 그다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이경규가 이끌고 있는 <힐링캠프> 역시 마찬가지다. <힐링캠프>도 초기의 호평에 비해서 많이 힘이 빠진 양상으로 현재는 프로그램의 형식보다는 어떤 게스트가 출연하느냐에 따라 시청률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연예인들보다는 일반인이지만 유명인들이 출연했을 때 시청률이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같은 일반인이 출연하는 토크쇼는 일정하게 10%대의 시청률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토크쇼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 흔히

들 말하는 이른바 연예인 프리미엄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청률 정보

일일 주간 2013.12.09(월) ~ 2013.12.15(일)

· 종합 · 드라마 · **예능**

순위	프로그램명	채널	시청률
1	개그콘서트	KBS2	17.8%
2	무한도전	MBC	14.7%
3	일밤	MBC	13.6%
4	전국노래자랑	KBS1	12.7%
5	놀라운 대회 스타킹	SBS	12.5%
6	일요일이 좋다	SBS	11.6%
7	스타주니어쇼 봉어행	SBS	11.5%
8	해피선데이	KBS2	11.4%
8	궁금한 이야기 Y	SBS	11.4%
10	정글의 법칙 in 사바나	SBS	10.7%

① 시청률은 지상파 프로그램 기준이며, 방송일 기준 익일에 업데이트 됩니다. (제공 : 닐슨코리아)

주간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순위에 일반인 출연 예능이 6개(3~8위)나 자리 잡고 있다. (출처 : 네이버[www.naver.com] 시청률 정보 캡처)

일반인 예능 전성시대가 가능해진 가장 큰 전제조건은 일반 대중들의 방송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방송이라는 것이 이제 연예인 같은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이 생긴 것. 과거의 방송이라고 하면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다. 카메라를 조작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는 것도 힘들며 또한 그 카메라 앞에서 재치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매체의 대중화는 이런 방송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의 영역을 무너뜨렸다. 이미 우리는 휴대폰이라는 카메라를 늘 들고 다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험을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방송 출연의 욕구를 갖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처럼 방송이나 영상이 일상화되다 보니 거기 출연하는 연예인들의 방송 내용을 대중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토크쇼에 연예인이 출연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대중들의 관

심을 자아냈지만 이제는 연예인이 나오면 또 홍보하네 하는 식으로 대중들이 바라보는 게 예삿일이 되었다. 이렇게 달라진 대중들의 시선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훨씬 더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인물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제작진들에게도 일반인들의 방송 투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사항이 된다는 점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리얼리티쇼가 일반인들을 방송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건 이런 일반인들과 제작자 양자 간의 욕구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대거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일반인이 가진 아마추어리즘은 참신할 수는 있어도 또한 방송에 적합하지 않거나 방송을 잘 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연예인이라면 자신이 방송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것을 대개 감지하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를 잘 몰라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고 나아가 사회활동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일반인들에게 방송사는 슈퍼 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예인들이라면 매니지먼트를 통해 이 부분이 관리되지만 일반인들은 말 그대로 방송의 재미를 위해 소비되거나 심지어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슈퍼스타K〉와 〈 짹 〉에 논란이 된 악마의 편집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은 〈슈퍼스타K3〉에서 처음 등장했다. 즉 〈슈퍼스타K3〉는 일반인들이 경연을 벌이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갈등 상황이나 속내를 숨기지 않고 편집해서 보여주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참가자는 너무 이기적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참가자는 독선적으로 보여지기도 했다. 사실 똑같은 정황도 어떻게 편집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편집의 힘이다. 즉 ‘악마의 편집’이란 결국 누군가에게는 악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편집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슈퍼스타K3〉에서는 이 문제로 참가자 중 한 팀이 중도에 자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한 참가자는 지나치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많이 보였는데, 이것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들이 폭주하기도 했다.



악마의 편집 논란이 있었던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3〉(출처 : 헤럴드경제, 「슈퍼스타 K3, 예리밴드 악마의 편집? 논란 일파만파」, 2011년 9월 19일자)

남녀가 일주일 간 한 공간에 머물면서 서로의 짝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인 <짝>에서도 ‘악마의 편집’ 논란은 일찍부터 제기된 바 있다. 출연자 중에는 자신의 모습이 이상하게 편집되어 방영됨으로써 방송 후에 당사자에게 시청자들의 비난이 폭주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벌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그 방송 내용이 실제 상황이든 아니든 간에 방송 윤리적 차원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방송은 어쨌든 출연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편집하는 과정에서 출연자의 문제가 실제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중들의 비난을 받을만한 것이라면 적절히 편집을 해주는 것이 연출자의 도리라는 점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방송은 노골적으로 일반인이 약자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를 입더라도 그들을 활용한 셈이 된다. ‘악마의 편집’이라는 의미에는 조작적인 편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윤리성이 거세된 시청률만을 위한 편집이라는 뜻도 내재되어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조작방송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나오기도 한다. 12기 <짝>에 출연했던 한 남성이 게시판에 문제제기를 했던 사건은 단적인 사례다. 이 남성은 ‘최종결정에서 압력에 의한 조작이 있었다’고 말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짝>은 스스로의 프로그램 정체성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로 맞게 될 수 있었다. 물론 <짝> 제작진은 이러한 조작 방송 논란에 대해서 “출연자 누구에게도 선택을 강요하거나 거짓상황을 연출하여 방송하지 않습니다. 6박 7일 동안 애정촌 생활은 가감 없이 촬영되고 그 일부가 편집되어 방송됩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이번 촬영에서도 제작진이 여자6호에게 남자6호를 선택하지 말라고 강요했거나 남자6호와 스태프와의 마찰을 과장하여 표현하지 않았습시다”라고 못을 박았다. 결국 문제제기를 한 남자6호가, 제작진으로부터 여자6호가 받은 문자와 제작진과 자신과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갖고 있다고까지 말한 상황과는 전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이었다. 결국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유아무야 사라져버렸지만 일반인들의 방송 출연이 본격화되면 생겨날 ‘편집 조작의 공포’를 잘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대표적 일반인 출연 프로그램 짜(출처 : SBS 프로그램 '짜' 방송 캡처)

물론 ‘악마의 편집’이란 방송이 좀 더 극적인 장면들을 연출하려는 데서 나오는 부작용이다. 방송은 출연자들을 통해 뭔가 극적인 스토리를 엮어내려 하는 것이 본능적인 생리다. 그래야 시선을 잡아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왜곡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어느 한쪽 시각으로 본다면 다른 쪽 시각은 억울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은 편집을 통해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흔히 대중들은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그것이 리얼 그 자체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다큐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엮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다큐 같은 장르에서조차도 카메라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결국 극적인 장면을 위해 어느 하나의 시선을 전해주는 과정에서 ‘악마의 편집’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악마의 편집보다 심각한 사생활 장사의 문제

하지만 악마의 편집보다 더 심각한 건 ‘사생활 노출’ 나아가 ‘사생활 장사’의 문제다. 과거 일반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생활 노출이나 도촬 장면이 나오는 리얼리티쇼는 케이블에서나 겨우 방



영이 되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오디션 프로그램도 어찌 보면 이 리얼리티쇼의 한 분파라고 볼 수 있는데, 오디션은 노래라는 감성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 나올 수밖에 없는 일반인 사생활 노출의 거부감은 상당부분 상쇄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제 노래 같은 감성적 장치 없이 사람들만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리얼리티쇼가 지상파에서도 심심찮게 생겨나고 있다.

〈화성인 X파일〉이나 〈안녕하세요〉 같은 프로그램은 일반인 사생활이 어떻게 방송을 통해 소비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지난 6월 27일 방영된 tvN 〈화성인 X파일〉에 나온 이른바 ‘시스터보이’는 도를 넘은 일반인 사생활 장사 방송의 정체를 보여주었다. ‘시스터보이’, 마마보이에서 따온 이 작명은 누나들이 동생의 엄마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실체는 ‘선정성’ 그 자체였다. 방송은 노골적으로 이들의 내밀한 사생활을 따라다니며 다 큰 남동생을 거의 업어 키우다시피 하고, 1분마다 뽀뽀를 해대며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에 입 바람을 불어 넣는 등 지나친 스킨십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잠잘 때까지 꼭 껴안고 자는 모습은 이게 친 남매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게 만들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물론 정상적으로 보긴 어렵지만 아마도 사적인 차원에서는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치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을 일일이 촬영하고 방송에 공공연히 내보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결국 그 피해는 해당 일반인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입을 걸 뻔히 알면서도 이들은 왜 방송출연을 자청하는 것일까. 심지어 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그 이유는 종종 〈화성인 X파일〉의 일반인 출연자들이 쇼핑몰 관련된 일을 하며 방송을 노이즈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경향에서 드러난다. 물론 이 시스터 보이가 이 노이즈 마케팅을 활용하려 했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에조차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시스터보이 도한봉 씨가 2012년부터 인터넷 얼짱 출신으로 피팅모델 경력이었다고 네티즌들이 주장했던 것. 결국 ‘다른 목적’으로 조작 방송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화성인 X파일〉의 문태주 PD는 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화성인들은 일반인들로, 평범하게 살던 분들이다. 방송이후 악플에 시달리다보면 항상 논란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부인을 하는 것”이라며 “〈화성인〉이 조작 논란에 왕왕 휩싸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문태주 PD의 인터뷰 내용 속에는 이 프로그램의 성격이 은연 중에 드러나 있다. 즉 〈화성인〉은 그 방송 자체가 조작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또 방송 이후에 출연한 일반인들이 악플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시스템보이 역시 방영되었을 때 이 정도의 노이즈가 만들어질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반인 출연
KBS-2TV 예능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출처 : KBS 홈페이지 [www.kbs.co.kr/
2tv/enter/hello/photo/index.html])



〈안녕하세요〉는 〈화성인 X파일〉의 지상파 버전처럼 불리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고민자랑’이라는 형식으로 특별한 사연이나 개성을 가진 인물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어찌 보면 일반인 사생활을 전면에 드러내는 자극적인 프로그램이 지상파, 그것도 KBS에서 방영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명분과 특유의 안전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을 다양성의 차원에서 보여주고, 그들과 관계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그들 사이에 어떤 화해와 소통의 물꼬를 터 주자는 기획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녕하

세요>는 가족이 함께 출연해 가족애라는 틀 안으로 특이한 이들을 끼어있는 모습을 보여줘 왔다. 하지만 이 기획의도대로 하려면 좀 더 신중한 접근과 편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에 소개됐던 여동생에게 과도하게 집착해 신혼여행까지 따라가는 오빠의 사례는 상식적인 선을 넘어섬으로써 해당 출연자가 대중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통제할 수 없는 일반인 출연자의 문제

일반인 출연자가 야기하는 문제는 일반인들만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는다. 때로는 통제되지 않는 일반인 때문에 뜻하지 않게 제3의 피해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제작진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위에서 <화성인 X파일>을 예로 들어 언급한 것처럼 일반인 중에는 방송의 힘을 오히려 이용하려는 이들도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제작진이 이들 일반인 출연자들을 완벽하게 검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것은 어찌 보면 개인 사찰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슈퍼스타K5>에서 말 더듬이라며 출연했던 박상돈씨가 사실은 사기 및 횡령혐의로 기소 중지 상태라고 밝혀진 것도 방송에 출연하는 일반인들에 대한 검증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속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일반인 출연이라고 해서 연예인과 비교해 진정성이 담보된다는 막연한 믿음이 선부른 확신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아마도 검증되지 않은 일반인 출연자들로 인해 가장 큰 파장의 논란을 보여준 건 <송포유> 사태일 것이다. SBS에서 추석 특집 파일럿 프로그램(편집자 주: 편성이 확정되기 전에 견본용으로 만든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송포유>는 가수 이승철과 엄정화가 각각 이른바 대한민국 하위 3%라는 학교의 학생들을 모아 합창단을 꾸려 세계 대회에까지 나가는 이야기를 다뤘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학생들이 과거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였다는 사실이다. 방송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했어야 했지만 결과는 마치 일진을 미화한 것처럼 방송이 나가게 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승철이 아이들에게 “나는 전과 9범이었다”고 말한 내용을 방송에 그대로 내보낸 것도 문제였지만, 아이들의 마치 무용담처럼 쏟아낸 과거 전력을 별다른 생각 없이 내보낸 것은 더 큰 문제였다. 인터뷰 중 몇몇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폭행으로 전치 8주인 상처를 입혔다”고 말하기도 했고, “전에 학교에서 퇴학당했는데 그때 애들 땅에 묻고 그랬다”는 말을 자랑처럼 떠들어대기도 했다. 결국 이들의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뽑아낸 방송은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상처 입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결과가 되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의 애초 목적은 논란이 되었던 ‘일진 미화’ 같은 것이 아니었다. 이미 <남자의 자격> 하모니편이나 영화 <하모니>가 보여준 것처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목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하모니를 이룰 때 그것은 그 자체로 소통의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실제로 이승철이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된 것은 2011년 12월 <SBS 스페셜>을 통해 방영되었던 ‘기적의 하모니’에서 그가 김천 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 합창단의 멘토로 출연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 하지만 좋은 의도라고 해도 세심하지 못한 접근방식은 의도치 않는 피해자를 발생하게 만들어 버렸다. 심지어 가해를 한 아이들이 방송에 나와 주목받고 심지어 폴란드 합창대회에 나갈 기회를 얻는 장면은 정작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는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을 모두 배려하지 못한 제작진의 치명적인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예능과 다큐 사이에 어정쩡하게 서 있던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 어찌 보면 심각한 이야기일 수 있는 문제 학생들을 다루면서 <송포유>는 다큐적인 깊이로 들어가기보다는 예능적인 가벼움으로 건드린 면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이렇게 문제 학생들이 되어 끝단에 몰려 있는 아이들이 왜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부모와 사회의 책임은 없는지, 피해 학생들에 대한 미안함은 없는지 그래서 그 아이들은 과거를 후회하는지 등등 다차원적인 접근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것은 예능 프로그램이 일반인을 다루는 한계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반인들의 방송 출연이 점점 더 예능쪽으로 기울어 있다

는 점은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양산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송포유〉는 또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도 일반인 출연자들의 통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논란이 한창 가중되고 있을 때 세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폴란드에 갔던 성지고의 김모군이 SNS에 부적절한 글을 올린 것이다. ‘폴란드 클럽 좋구만. 굿’, ‘폴란드 클럽 5시에 마감인데 7분 남았다. 이제 폴란드의 밤도 지나가는구나. 한국 가서 소주나 X나게 빨아야지.’ ‘씨X TV 한 시간 나왔다고 악플 X되네. 자살 할란다.’ 이 글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아마도 김모군은 자신이 올린 SNS 상의 글이 이토록 뜨거워질 줄은 예상 못했을 것이다. 스스로는 그저 한 시간 방송 나온 일반인이라고 생각할 테니 말이다.

하지만 사안이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상황에서 김모군의 글은 마치 기름을 붓는 격이나 마찬가지 결과물을 몰고 왔다. 가뜰이나 〈송포유〉의 출연자로 선정된 아이들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모군의 글은 마치 심증을 확증으로 만드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방송사나 제작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 전에 미리 계약서를 통해 요목조목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간다면



송포유에 참가한 김모군이 SNS에 올린 글은 큰 논란이 됐다.
(출처 : News1, 「‘송포유’ 출연 학생, 폴란드 클럽 출입 인증샷?」, 2013년 9월 23일자)

모를까 이렇게 갑자기 제멋대로 튀어나오는 발언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 즉 <송포유> 논란은 이제 우리네 방송이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시사점, 즉 통제되지 않는 일반인 출연자의 문제를 보여주었다.

준 연예인 혹은 준 일반인, 연예인 가족의 문제

통제되지 않는 일반인 출연자의 문제, 일반인의 사생활을 끄집어냈을 때 대중들이 보이는 거부감 그리고 이른바 일반인들의 ‘악마의 편집’ 논란에서 벗어나면서도 연예인과는 다른 결을 보여주기 위해 최근 급증한 출연자군이 바로 연예인 가족이다. 연예인 가족은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일반인이라고 하기도 그렇다. 해당 연예인의 아우라를 어느 정도 가져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 정서는 방송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그대로이기 때문에 현재의 ‘일반인 트렌드’와 맞닿는 부분이 있다. 이들은 뒤에 가족으로서의 연예인이 있기 때문에 ‘편집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완전한 일반인이 아니라는 점에

MBC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에 출연 중인 윤후와 윤후 안티카페 검색 캡처 (출처: 스포츠조선, 「윤후 안티 카페」 개설자에 비난 봇물 “열등감 집단”, 2013년 6월 10일자)



서 사생활 노출에 대한 거부감도 적다. 또한 연예인이 일종의 보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작진의 통제가 어렵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아빠 어디가〉는 연예인 가족을 내세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것은 거기에 아무런 때도 묻지 않은 아이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방송에 전혀 익숙하지가 않다. 따라서 카메라를 의식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것이 거의 없다. 100% 순수한 진심을 내보인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일반인 예능의 강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방송에서 포착된 사생활이나 성격 같은 것들은 때론 거기 출연한 아이들에게까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빠 어디가〉 같은 이른바 힐링 예능이라고까지 불리는 프로그램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악플이 달리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사생활이 가감 없이 노출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아빠 어디가〉에 출연하고 있는 윤민수의 아들 윤후나 〈붕어빵〉에 출연해 인기를 끈 박찬민 아나운서의 딸 민하는 심지어 안티 카페가 만들어져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백년손님-자기야〉나 〈슈퍼맨이 돌아왔다〉, 또 〈오 마이 베이비〉 같은 연예인 가족이 등장하는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아지는 만큼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연예인 가족의 문제도 똑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게 된 데는 이들을 바라보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시선도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이들이 연예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일종의 이미지적인 특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중들의 정서다. 요즘처럼 이미지가 그저 인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때론 정치적인 힘이나 권력까지 부여하는 시대에 이른바 ‘이미지 권력’이 어떻게 얻어지고 사용되는가는 대중들에게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다. 즉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 단 한 번의 방송 출연 기회를 얻기 위해 일반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탐밴드〉라는 오디션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끈 장미여관이 〈무한도전〉 자유로 가요제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했던 “이건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거든요”라는 말은 실로 방송 기회가 갖는 엄청난



눈시울을 붉히는 장미여관(출처 : 스포츠월드, 「장미여관 ‘무한도전’ 가요제 출연소감 눈시울 붉혀... “안타까워”」, 2013년 11월 3일자)

힘을 잘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 연예인 가족들이라는 이유로 일종의 ‘이미지 권력의 세습’이 지극히 당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정서는 대중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안티 카페 같은 결과를 낳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일반인 방송 출연, 당연한 흐름이지만 대비도 해야

일반인들의 방송 출연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추세다. 이것은 과거 몇몇 지상파에 방송이 국한되어 있어 그것이 그들만의 전유물이거나 특권처럼 여겨지던 시대에서 이제 다매체 시대로 넘어오면서 생겨나는 현상이다. 또한 영상이 일상화되면서 대중들의 방송에 대한 감수성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스틸 사진을 찍을 때도 어색한 포즈로 멈춰 서기 마련이었지만 요즘은 동영상을 찍어도 지극히 자연스

러운 포즈가 나온다. 최근 들어 어른들 뺨치는 아이들의 연기를 심심찮게 보게 되는 것은 이미 이들의 영상에 대한 감수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게 해주는 증거다. 아이들은 카메라에 그만큼 익숙해졌고 영상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거의 사라졌다. 지금은 방송이 연예인 같은 특정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일반인으로 막 넘어오는 시점이지만 향후에는 이것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 변화의 시점에 과연 법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 또는 방송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이 변화가 가져올 파장들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검증이 안되고 통제도 안되는 일반인들의 대거 방송 출연, 이를 이용한 이른바 ‘악마의 편집’으로 불리는 편집방식이 만들어내는 논란은 어쩌면 향후에 벌어질 것들을 생각해보면 대단히 기초적인 것들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도 어쩌면 이제 갓 열린 일반인들의 방송출연 시대에 아직까지 일반인들이나 방송 양자 모두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방송 출연 자체가 다른 한편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방송은 많은 이들이 거기 출연하면 그저 좋은 것이다, 유명해지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것은 지금껏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본래 모습과는 왜곡된 이미지로 소비되면서 겪어온 고통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강한 카리스마를 방송 이미지로 갖고 있어 그것 때문에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고통을 감내한 최민수 씨의 사례, 또 지적인 모습이 방송 이미지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학력 논란을 겪기도 한 타블로의 사례는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방송에 의해 왜곡된 사례는 일반인만이 아니라 연예인들에게도 부지기수로 많다. 전문적인 매니지먼트를 받는 연예인들도 이럴진대 일반인은 오죽하겠는가. 연예인들의 이런 왜곡된 이미지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의 일반인들의 방송 편집 왜곡에는 논란이 생길까. 물론 여기에는 힘없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더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제작진들의 문제가 있

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인들 스스로 방송 출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한편 방송 제작자들 입장에서 중요해진 것은 보다 높은 윤리의식이다. 단지 눈앞의 시청률 같은 성과를 위해 출연자들을 소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심지어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를 의도하는 제작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논란 자체가 벌어지지 않게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 역시 수동적으로 방송을 소비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방송에 참여하는 것이 향후 방송을 온전히 대중들이 향유하게 만드는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권리 침해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분쟁은 법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논의되어 미리 사태를 예방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반인 방송 전성시대는 시작됐다.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어떻게 잘 대처해나가느냐다.



학력 논란을 겪은 타블로의 MBC 스페셜 출연 장면 캡처(출처: 미디어스, 'MBC 스페셜은 타블로 논란에 종지부 찍을 수 없다', 2010년 10월 1일자)



중국 소수민족에 관한 중국 언론의 보도 양태



글. 윤기홍 중국통신원
중국 베이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중국 소수민족의 저항과 그들의 생각

“얼마 전 티베트족(藏族)이 또 분신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11월 말 베이징 하이덴(海淀)구에 있는 중앙민족대학에서 만난 티베트족 여학생들은 티베트인들의 분신 항거 얘기에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분신을 한 티베트인들은 124명에 달했다. 분신 희생자들은 중국 통치 반대, 자유 확대, 달라이 라마 귀환 요구 등을 외쳤다. 티베트족 학생들은 “희생자들은 티베트에 대한 억압 정

책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분신했다”며 “언론의 자유도 없고 저항의 수단도 없어 분신을 택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중앙민족대학에서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중국인민대학 교정에서 만난 또 다른 티베트족 여학생은 “티베트인들이 분신을 하는 원인은 중국 정부의 억압 때문이다”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 방법이라고 본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그 옆의 다른 티베트족 여학생은 “티베트족이 받



2013년 10월 28일 위구르 자치구 독립을 불허하는 중국 정부에 불만을 품은 위구르인 3명이 탄 차량이 중국 베이징 도심 천안문으로 돌진해 많은 사상자를 냈다.
(출처: 초천도시보(楚天都市报), 「极端组织称策划车撞天安门 目标还有大会堂」, 2013년 11월 25일자)

는 고통을 매체들이 외면할 뿐 아니라 왜곡하고 있는 상황에서 티베트인들이 분신이라는 폭력적 방법으로 외부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관춘 대형 전자상가 거리에서 만난 위구르(維吳爾)인들은 중국인과 확연히 다른 외모 때문에 쉽게 눈에 띄었다. 이들 역시 티베트인들과 비슷한 감정을 드러냈다. 지난 10월 말 위구르인 3명이 중국의 상징인 베이징 천안문(天安門)에 돌진해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 때문이었다. 중국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천안문 차량 돌진 사건에는 위구르인을 비난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위구르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 표현들이 많았다.

한 위구르족 학생은 “그 사건 이후로 매체나 주변에서 위구르인들에 대한 시선이 차가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구르인 남성은 “오랜 기간 한족 사람들이 대거 신장위구

르 자치구로 이주해 오면서 위구르인들은 이들에게 경제적 이익도 빼앗기고 다른 곳을 떠도는 신세가 됐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베이징 차오양(朝阳)구에서 위구르 식당을 운영하는 한 위구르족 남성은 ‘천안문 차량돌진 사건’이 위구르족에 끼칠 파장을 우려했다. 공안은 이 사건 이후 베이징 내 위구르인에 대한 신분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그는 “그 사건이 일어난 뒤 손님 가운데 한족의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위구르인들이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영업이나 음식점 임대에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 가슴을 졸인다”고 덧붙였다. 일 자리를 찾아 고향인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떠나 베이징까지 온 위구르족 종업원들은 “주위에서 위구르인들을 이상하게 보거나 차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신장지역에서는 무장경찰의 경계가 더욱 삼엄하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소수민족 보도.. 中 언론자유 가능 잣대

다수 민족인 한족(漢族)과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뤄진 중국에서 티베트족과 위구르족은 최근 중국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또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두 민족은 중국에서 ‘뜨거운 감자’인 소수민족의 문제를 상징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13억 5,000만 명이 넘는 중국 인구 가운데 소수민족의 비중은 8.5% 안팎. 이 가운데 위구르족 인구는 981만 명, 티베트족은 541만 명 정도다. 인구 비중은 적지만 두 민족의 자치구가 중국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무려 4분의 1을 훌쩍 넘는다. 석유와 천연가스, 광물 자원도 풍부하다. 또 티

베트족과 위구르족 집단 거주지 대부분이 국경 지대여서 지정학적인 중요도 역시 매우 높다. 그러나 소수민족 가운데 티베트족과 위구르족은 고도의 자치 보장이나 분리·독립을 외치면서 중국 공산당 정부에 항거하고 있다. 동시에 한족과도 큰 마찰을 빚고 있다.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문제는 다민족 통일국가인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 분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미국에 이어 세계 제2강대국으로 발돋움한 중국에 대격변을 몰고 올 수 있는 매머드급 이슈다. 이로 인해 두 민족과 집단 거주지는 ‘중국의 화약고’, ‘중국 소수민족 문제의 뇌관’으로 불리고 있다. 이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이 큰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두 민족의 터전인 티베트 자치구와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국가의 ‘핵심 이익’으로 삼고 있다. 핵심 이익은 중국이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 희생할 수 없는 전략적 국가 목표를 가리킨다. 대만도 핵심 이익에 속한다. 중국 공산당 정부와 지도부는 핵심 이익인 이들 지역의 문제는 내정으로 어떤 국가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는 2011년 2월 당시 국가부주석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시짱(西藏, 티베트)은 중국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핵심적 이해관계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은 지난 6월 7~8일 미국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양국은 서로 상대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티베트족과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언론의 보도는 전체 소수민족에 대한 당국의

의중과 정책 방향, 그리고 보도 지침을 엿볼 수 있는 창이다. 나아가 소수민족에 대한 보도를 통해 중국 내 언론 자유와 언론 통제·검열의 현주소를 들여다 볼 수 있다.

특히 티베트족·위구르족과 관련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시위, 분신, 테러, 한족과의 충돌 사태 발생 시, 중국 언론매체의 보도 내용은 사태의 배경과 상황, 사상자 규모, 파장을 파악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더욱이 중국 공산당 정부가 ‘핵심 이익’ 보호를 위해 티베트·신장위구르 지역을 철저히 통제하고 외부와 차단했을 때, 중국 언론매체의 보도에 크게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티베트족과 위구르족에 관한 중국 언론의 보도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난 대표적 사건들은 △2008년 ‘3·14’ 티베트 라싸(拉薩) 유혈시위, △2009년부터 본격화한 티베트인 연쇄 분신, △2009년 ‘7·5’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 유혈사태, △2013년 10월 말 위구르인의 ‘천안문 차량돌진 사건’ 등이다. 중국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이목을 끌면서



라싸 유혈시위 당시 촬영된 사진
(출처 : 신화통신(新华网), 「拉萨3·14打砸抢烧事件真相」, 2008년 3월 22일자)



2008년 3월 14일 중국 티베트 라싸 시내에 티베트군구 소속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출처 : 봉황망(凤凰网), 「快看开上西藏拉萨街头维持秩序的战车与士兵, 2008년 3월 16일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이슈들이다.

‘3·14’ 티베트 유혈 사태 관련 中 언론 보도

중국이 ‘100년의 꿈’이라 말하던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불과 다섯 달 앞둔 2008년 3월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티베트인들은 3월 14일 티베트 자유와 독립, 달라이 라마 귀환 등을 요구했다. 중국의 이른바 ‘티베트 지우기’에 대한 저항이었다. 시위는 티베트 자치구와 함께 인접한 쓰촨성·칭하이성·간쑤성의 티베트족 집단거주 지역으로 확산됐다. 후진타오(胡锦涛) 전 국가주석이 1989년 티베트 자치구 공산당 서기로 재직할 당시 발생했던 유혈 사태 이후 20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티베트 유혈 시위로 번졌다. 중국 정부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 시위에 대한 유혈진압 논란으로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최루탄만을 사용해 시위를 진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CNN 등 외신을 통해 라싸 시내

에 총과 탱크가 동원된 것이 밝혀졌다.

시위 발생 초기, 현지인과 관광객 등이 촬영한 현장 사진은 인터넷을 타고 해외로 퍼졌다. 이런 사진은 곧바로 외국 언론사 뉴스 웹사이트와 해외 티베트 인권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초기 외국 언론들이 해외 티베트 인권단체들을 통해 라싸 시위 현장의 소식과 사진들을 전한 반면, 중국 언론매체들은 침묵했다.

중국 정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티베트 사태는 달라이 라마 세력이 배후 조종해 일어났다고 규정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시위가 달라이 라마 집단의 조직적이고 사전 모의에 의한 계략이라는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시작으로 중국 신문과 방송은 물론 인터넷 매체들은 신화통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티베트 시위자들이 한족을 공격하고 있다며 시위를 폭동으로 몰아가는 보도를 내놓았다. 티베트 시위로 피해를 본 한족 현지 주민의 사연들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중국 내 한족들은 티베트 시위대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티베트 시위대에 대한 발포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중국은 3월 20일 신화통신을 통해 처음으로 발포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발포로 인한 사망은 인정하지 않았다. 신화통신은 16일, 쓰촨성의 티베트인 밀집지역에서 폭도들에게 발포해 4명이 부상했다고만 보도했다.

‘3·14’ 티베트 유혈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부·언론과 티베트 망명정부 간 발표 내용이 큰 차이를 보였다.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수는 16명이었지만,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는 99명(라싸 80명, 간쑤성



티베트 국기가 그려진 피켓을 들고 티베트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
(출처: 환구시보(环球时报), 「外媒: “藏独”份子欲绝食游行 图谋偷走火炬」,
2008년 4월 17일자)

등지 19명)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정부는 시위 발생 7일째인 21일 신화통신을 통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던 라싸의 현지 화면을 공개했다. 하지만 보도 화면 내용은 시위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흥기를 휘두르고 차량을 불태우는 장면만 있었다. 여기에는 군경의 진압장면이나 시위대의 피해 상황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 현지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통제해 티베트인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했다. 당은 CNN·BBC 등 외국 유력 방송과 홍콩 언론 등에 대한 인터넷 상의 접근도 차단했다. 세계적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와 폭로성 인터넷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14일부터 티베트 시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들이 올라오자, 중국은 16일 자국에서 이들 외국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다. 아울러 유쿠닷컴(Youku.com), 투두닷컴(Tudou.com)을 비롯한 중국 내 유명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에서 티베트 유혈 시위 관련 동영상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통제했다.

동시에 중국 당국은 티베트 라싸를 봉쇄하고서 외신 기자들을 강제로 내보내는 등 보도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티베트 자치구 정부는 당시 외국 언론 기자뿐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티베트 여행허가 신청서 배포를 중단했다. 나아가 티베트 정부는 3월 17일 불법 취재·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홍콩의 TV·라디오·신문 기자 등 25명을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 인근 쓰촨성 청두로 내보냈다. 이에 중국 외신기자협회는 3월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취재 방해 행위는 전 세계에 좀 더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길 원하는 중국 정부에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 비난했다.

그럼에도 공안 당국은 티베트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독일 주간신문 ‘디 차이트’와 일간지 ‘타게스 차이퉁’, 독일 epd 통신, 오스트리아 주간지 ‘프로필’의 중국 특파원들을 강제로 추방했다. 중국 당국은 이들에게 티베트에서 취재활동을 계속할 경우 중국 체류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북한이 티베트보다 외국 언론매체를 더 많이 허용하고 있다’는 냉소 섞인 비난이나 오기도 했다.

이처럼 비난이 일자 중국 정부는 티베트 사태 발생 열흘 뒤에야 일부 외국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 라싸 출입을 허가했다. 중국 외교부는 3월 26일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일본·

러시아·싱가포르·대만 등 10여개 언론사 기
자들로 구성된 외국 언론 기자단의 라싸 방문
을 허용했다. 티베트 시위 사태가 발생한 이후
라싸가 외국 언론에 개방되기는 처음이었다.
그러면서도 라싸에서 외신 기자의 취재 범위
를 제한하고 중국에 유리한 점만을 공개했다.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3월 25일 브리핑에서,
외신 기자들이 라싸의 실태를 이해할 수 있도
록 취재단을 조직했으며 이들은 라싸에서 범
죄행위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피해 현장을 직
접 둘러보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외국 기자들에게 라싸를 공개
한 데는 티베트 시위 상황을 충분히 장악했다
는 자신감이 깔려 있었다. 또 중국 정부에 대한
외신의 부정적 보도를 최대한 막겠다는 계산
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中, 반(反) 외국 언론 분위기 부추겨

중국은 티베트 사태에 대한 외국 매체의 보도
태도를 편파적이라고 맹비난하면서 관영매체
를 총동원해 외국 언론에 맞서 선전전에도 나
섰다. 중국 언론매체들은 티베트족과 라싸 유
혈사태를 보는 외국과 외신의 시각을 ‘중국의
분열을 획책하는 음모’로 몰아 붙였다.

티베트 독립시위에 대한 무력진압이 전 세
계로부터 비난을 받자, 중국 관영매체들은 서
방 매체들이 오보를 내보내고 있다며 비난했
다. 이를 위해 관영매체들은 외국 언론 보도의
흠집을 찾아 비난을 퍼부었다.

인민일보의 국제뉴스 전문 자매지인 환구시
보(環球時報, 환츄스바오)는 2008년 3월 21일
자에서, 일부 서방 매체들이 티베트 시위에 대
해 사실이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보도해 세

계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영국 BBC가 3월 17일 자사 웹
사이트에 올린 사진을 문제 삼았다. BBC는 중
국 공안이 간호사를 도와 부상을 입은 티베트
시위자를 돕는 사진을 실었는데, 사진 설명에
는 ‘라싸에 현재 많은 군인이 배치돼 있다’는
설명만 있을 뿐 ‘구조’, ‘응급’ 등의 사실은 무시
했다고 환구시보는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또
영국의 신문 가디언과 미국 CNN 방송 등에서
도 ‘군사·무력 진압’, ‘수 백 명의 티베트인 사
망’ 등의 기사 제목을 쉽게 볼 수 있다면서 이
는 이 사태의 본질과 진상을 고려하지 않은 것
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관영매체의 이 같은 반(反)서방언론 ‘여
론몰이’는 곧바로 위력을 발휘했다. 중국 매체
와 누리꾼들은 서방 언론 보도에 대한 감시할
동 열을 올리면서 외국 언론의 티베트 사태 보



티베트 분리·독립을 외치는 승려들
(출처: 환구시보(環球時報), 「外媒: “藏独” 份子欲绝食游行 图谋偷走火炬」,
2008년 4월 17일자)



2008년 3월 14일 중국 티베트 라싸에서 일어난 시위 사진 : 중국은 미국 CNN이 사진 중 일부뿐만 의도적으로 편집했다고 비난했다. (출처 : 신화통신(新华网), 「拉萨3.14真相」, 2008년 6월 5일자)

도가 대부분 편향됐거나 과장됐다고 비난했다.

연일 중국 방송, 신문, 인터넷에서 티베트인들이 폭력을 휘두르며 경찰과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화면만을 본 대다수 중국인들은 서구 언론의 티베트 사태 보도에 진실 왜곡이라며 극도로 분노했다.

중국인들은 CNN이 서구 언론을 대표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CNN에 십자포화(편집자 주 : 앞뒤 양옆에서 쏘아서 교차되어 떨어지는 포탄)를 퍼부었다. 중국 매체와 누리꾼들은 미국의 CNN 방송이 보도한 3월 14일 당일 라싸 사진을 대표적 왜곡 사례로 꼽았다. 중국 매체와 누리꾼들은 “CNN은 군용차량이 라싸에 진입하는 AFP 통신의 사진을 전하면서 티베트인 시위대가 돌을 던지는 부분을 잘라내 의도적으로 시위대의 폭력성을 축소했고 군용트럭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 인터넷에서는 3월 21일 ‘Anti-CNN’(www.anti-cnn.com)이라는 사이트까지 났다. 중국인들은 CNN이 티베트 사태

를 편파적으로 왜곡 보도했다며 반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중국인 사이에서는 ‘CNN처럼 굴지마’(做人别太CNN)란 노래와 말이 유행어처럼 퍼졌다. 4월 9일 CNN 시사논평가가 중국은 폭력배와 강패이며 지난 50년 동안 조금도 변한 게 없다고 발언해 중국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중국 정부도 서방 언론에 대한 중국인의 공세에 대해 암묵적인 지지를 보였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CNN의 그런 발언은 중국에 대한 무지와 적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중국인민에게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16일 CNN의 베이징지사 책임자를 불러 공식적으로 엄중 항의했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인터넷판에서 네팔 경찰이 티베트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사진을 싣고는 티베트 라싸의 상황이라고 잘못 전했다가, 중국 쪽의 지적이나 오자 정정 기사를 내기도 했다.

중국의 3대 관영매체들도 외국 언론 비난



중국에서 만들어진 Anti-CNN(출처: 백과(百科网), 「做人不能太CNN」, 2009년 1월 17일자)

에 가세했다. 중국 관영 CCTV는 뉴스전문 채널에서 연일 CNN의 해당 보도 화면을 반복해 내보내면서 비판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3월 25일, 영국 BBC 방송이 구급차가 나오는 화면을 내보내면서 ‘병력이 증강되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불만을 표실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报)는 3월 26일, 많은 국가들이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미국·영국·독일의 일부 언론이 편파적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매체와 대형 포털 사이트들은 누리꾼들의 움직임을 시시각각으로 전하면서 반(反)서방 분위기를 돋우고 여론을 퍼뜨리는 구실을 했다.

그러나 “정보가 차단된 중국인들은 외국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만 찾아내 비난하는데 열

을 올릴 뿐 중국 정부의 언론 검열과 통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지적도 중국내 언론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3·14’ 티베트 사태와 같은 시기에 행해진 베이징 올림픽 성화 해외봉송에서도 중국 관영매체들은 티베트 독립세력을 비난하는 동시에 반(反)서방 정서를 부추겼다. 관영매체와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은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특집면을 마련, 해외봉송 과정에서 벌어진 티베트 지지 및 반중(反中) 시위 상황을 사진과 함께 주요 뉴스로 다뤘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성화봉송 해외 구간에 서 시위상황을 보도하면서 ‘극소수’ 등의 표현을 써가며 최대한 축소했다. 신화통신은 4월 7일 성화봉송 런던구간의 상황과 관련, 수많은 사람들이 극소수 티베트 독립분자들의 성화봉송 파괴 시도에 대해 분노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성화를 봉송하던 중국계 장애인 주자를 공격한 티베트인을 공개수배한 한 중국 누리꾼의 글이 빠르게 퍼지기도 했



2008년 4월 베이징 올림픽 영국 런던 성화봉송 구간에서 티베트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

(출처: 환구시보(环球时报), 「外媒:「藏独」份子欲绝食游行 图谋偷走火炬」, 2008년 4월 17일자)

다. 파리구간에서는 티베트 시위를 무력 진압한 중국에 항의하는 시위대 때문에 성화가 세 차례나 꺼졌다.

관영매체들은 또 ‘티베트 시위대 매수설’ 등을 흘리면서 티베트 세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 했다. 환구시보는 4월 9일 성화봉송 프랑스구간 시위상황을 보도하면서 프랑스 현지 화교들의 말을 인용해 티베트 독립조직이 시위대 일부에게 돈을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중국 언론들이 부추긴 반(反)서방 정서는 중국인들의 극단적 민족주의로 표출됐다. 티베트 시위에 동조한 외국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터넷과 이동전화 상에서는 미국과 유럽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동하는 글들이 급속도로 퍼졌다. 중국 젊은이들은 4월 13일부터 프랑스계 대형 유통점인 까르푸 불매운동을 벌였고, 19~20일엔 베이징과 상하이로 비롯한 각지에서 까르푸 불매 시위를 펼쳤다. 까르푸의 대주주인 루이비통그룹이 달라이 라마를 지원하고, 프랑스가 티베트 분리 독립을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중국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들은 연일 까르푸 불매 운동 소식을 보도해 관심을 촉구시키는 역할을 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4월 15일 까르푸 불매운동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일이며 프랑스 측은 잘못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티베트인 연쇄 분신..외면하는 中 언론

중국의 강압 통치에 항의하는 티베트인 분신이 잇따르고 있다. 티베트인들은 중국의 강압



2008년 4월 베이징 올림픽 태극 방곡 성화봉송 구간에서 중국인들이 티베트 분리·독립을 반대하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응원하고 있다.
(출처: 신화통신(新华网), 「百余藏独欲破坏曼谷圣火传递 警察迅速控制局面」, 2008년 4월 19일자)

에 항거하면서 티베트 정책의 전환을 호소하고 국제사회에 티베트 문제를 알리기 위해 분신이라는 극단 행동에 나선 것이다. 2009년 2월 27일 20대 승려가 티베트기와 달라이 라마 14세 초상화를 들고 ‘소신공양’(燒身供養)으로 분신한 이후, 지난 12월 초까지 국내외 티베트인 거주 지역에서 124명이 분신했다. 분신 희생자들은 10대 소년에서 아이를 둔 엄마, 농부, 택시 기사, 유목민, 시인, 학생, 식당 종업원까지 나이, 성별, 직업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티베트인의 분신이 계속되는 동안 중국 언론매체들은 비보도와 축소·왜곡 보도로 일관해 왔다.

중국 당국은 티베트인의 분신에 대해 현장 접근과 희생자 개인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서 중국 주요 관영매체에서조차 관련 보

CHINA

도를 접하기 어렵다. 중국 언론의 보도만 가지고서는 티베트인의 분신에 관해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쉽지 않다.

그 동안 중국 당국은 티베트인들의 분신 사실도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외국 단체와 언론의 발표 이후 뒤늦게 시인하기도 했다. 이는 인터넷 등을 통해 분신 소식이 확산하면서 더 이상 감추기가 곤란해진데다, 사안별로 분신 시도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은 티베트인 분신에 관해 선별적으로 일부 내용만을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밝히고 있다. 신화통신의 분신 보도는 경찰, 법원 등의 발표 내용과 주장만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반면 분신 희생자와 티베트인 측의 발언과 입장은 빠져 있다.

더욱이 중국 언론매체들은 티베트인 분신 사건을 뒤늦게 보도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국은 분신자살 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시신을 수습하고 화장을 해 분신 소식을 당분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티베트인 분신 항거가 중국 공산당 정부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가 열려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3월(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과 11월(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중국 언론의 보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 당국과 언론이 대내외적인 부정적 파급효과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화통신은 지난 3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 이틀날인 18일 오후 외국 달라이 라마 조칙의 선동으로 쓰촨(四川)성에서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다고 보도하고, 그동안 발생했던 분신자살 사례들을 묶어 소개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날짜도 없이 간략하게 보도했다. 이어 다음날 다른 신문, 방송 매체들이 신화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티베트인들의 분신 자살 소식을 전했다.

중국 당국은 특히 자국에 불리한 기사를 쓰거나 보도하는 중국 주재 외국 특파원들에게 비자 발급 제한이나 사건·취재 현장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또 문제의 외국 매체에 대해선 중국 내 인터넷 사이트 봉쇄와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내건 금기 보도 주제에는 티베트, 신장위구르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들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티베트인 분신 희생자와 분



2008년 4월 19일자 중국 일간지 현대快报에 실린 티베트 분리·독립 반대 광고 1면 (출처: 현대快报(现代快报), 「盼奥运, 护圣火, 反“藏独”」, 2008년 4월 18일자 1면 광고)

신 배경에 관한 보다 자세하고 객관적인 정보들은 외국에 있는 티베트 인권단체를 통해 외국 언론매체에 보도되고 있는 실상이다. 외국 현지 단체로는 인도 소재 티베트 망명정부 외에 티베트 청년의회,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티베트 독립운동’, 영국 런던에 있는 티베트 인권단체인 ‘자유 티베트’(Free Tibet), 인도 소재 티베트 인권 민주주의 센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조직된 ‘국제 티베트 원조기구’, 국제단체 ‘자유 티베트 학생회’, 티베트 망명단체 ‘자유 티베트를 위한 학생들’, ‘유럽 티베트 청년 연합’(Tibetan Youth Association in Europe, TYAE), 대만의 티베트 단체인 ‘오피스 오브 티베트’, 홍콩 소재 ‘중국인권 민주화 정보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티베트 관련 웹사이트 ‘파울(phayul.com)도 티베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요 통로다. 이들 단체는 티베트족 거주지 내 현지 소식통들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

2011년 8월 8일 달라이 라마로부터 티베트 망명정부 정치권을 넘겨받은 롭사 상가이 총리(중앙행정사 사장)는 지난 5월 8일 “우리는 중국 헌법 테두리 안에서 완전한 자치권을 요구한다”면서 “티베트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없고 어떤 형태의 정치적 저항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티베트인들이 분신을 하고 있으며, 분신 사태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강조했다.

위구르족 · 한족 유혈 충돌사태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는 티베트에 이어 ‘중국 제2의 화약고’로 불린다. 한족과 생김새가 판이한 위구르인들은 중국에서 민족과 종교라

는 ‘이중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 전체 인구 약 2,000만 명 가운데 약 940만 명이 위구르족으로 추산된다. 중국 정부는 중앙아시아로 이어지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신장위구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한족을 지속적으로 이주시키며 동화정책을 펴 왔다. 이로 인해 한족은 이제 신장지역 전체 인구 2,200만 명 가운데 41%를 차지할 만큼 급증했다. 반면 위구르족은 46%로 줄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시는 한족 비율이 75%에 달하고 있다.

위구르인들은 티베트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부와 경제적 권리를 한족들이 빼앗아 가고 있다며 뿌리 깊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다수가 이슬람교도인 위구르인들 가운데 일부는 중국 중앙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족 문화를 말살하며 한족 동화 정책을 강요한다고 반발하면서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위구르인들의 불만을 극소수 세력의 선동이라고 반박하면서 강경 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다. 이들을 ‘분리주의자’, ‘테러집단’으로 규정해 비난하고 있다.

특히 신장위구르 자치구가 중국에 귀속된 지 60돌이 되는 해였던 2009년 7월 5일 자치구 수도 우루무치에서 위구르족의 분리 · 독립 요구 시위와 한족과 위구르족 간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났다.

이날 오후 우루무치시 인민광장과 해방로 등에 집결한 3,000여명의 위구르인들은 차별 철폐, 신장 지역의 분리 · 독립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시위는 앞서 6월 말 광둥성 사오관(韶關)의 한 완구공장에서 벌어진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시에서 위구르인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출처: 중국중앙TV(CCTV.com), 「乌鲁木齐“75”事件中死亡人数升至140人」,
2009년 7월 7일자)

한족과 위구르족 종업원 간 패싸움으로 위구르인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시위대는 당시 한족 직원들이 위구르족 직원들을 집단 폭행할 당시 출동한 경찰이 개입하지 않아 위구르인들의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시위대는 1만 여명으로 불어났다. 경찰은 시위가 거세지자 무력으로 진압했다.

중국 당국의 공식 집계로만 197명(한족 140명 가량)이 숨지고, 1,700여명이 다쳤다. 이는 1989년 '6·4 천안문 유혈 시위진압' 이후 중국에서 발생한 최대의 유혈사태였다. 이날 시위 이후 한족들이 위구르족에 보복하겠다고 거리로 나서고 이에 다시 맞서는 위구르족들의 잇따른 시위로 민족 대결 양상으로 치달았다.

우루무치 유혈사태 발생 당시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후진타오 주석은 급거 귀국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내 문제로 해외 방문 중 급히 귀국한 것은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우루무치 시위에 대해 신장위구르 분리·독립 세력의 사전 계획설을 주장했다. 이에 위구르족 해외 망명인사들은 중국 정부의 한족 우대정책과 한족의 경제적인 침탈 등으로 시위가 촉발됐다고 반박했다.

우루무치 유혈시위 사망자 발생 원인을 놓고 중국 언론과 위구르족 간 견해차가 컸다. 관영 신화통신은 위구르인 시위대가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공격하고 차량을 불태우며 과격한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위구르인들은 시위는 평화롭게 시작됐으나 경찰이 과잉 진압하고 총을 쏘 폭력성을 띄게 됐다고 주장했다.

中 우루무치 유혈시위..외국 언론은 개방·인터넷은 통제'

중국 공산당 정부는 위구르족 유혈사태에 대해 티베트족 유혈시위 때와는 다른 언론 정책을 취했다. 자국 내 온라인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한 반면, 외국 언론 취재는 이례적으로 개방하는 이중적인 언론정책을 펼친 것.

7월 5일 우루무치시에서 시위가 시작된 직후 중국 정부는 이전 시위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신장 지역의 인터넷과 국제전화를 차단했다. 당국에 불리한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였다. 중국 내에서는 정보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뤄진 가운데 트위터와 페이스북 접속은 차단됐고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정부의 검열을 거치지 않은 시위 관련 내용들은 모조리 삭제됐다.

방송에서는 위구르족들이 다수 인종인 한족을 공격하는 장면이 계속 보도됐다. 중국 매체



우루무치 유혈사태 사망자 소식을 전하고 있는
신장위구르 자치구 현지 일간지 신장일보
2009년 7월 7일자 1면
(출처: 신장일보(新疆日报), 「乌鲁木齐“7·5”事件中死亡
人数达到140人」, 2009년 7월 7일자)

들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의 보도들
을 쏟아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시위 진압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주중 외국 기자단을 우루무치로 초
청했다. 외국 취재진이 묶는 우루무치 도심 호
텔에 프레스센터까지 마련해 줬다. 중국 당국
은 외국 기자단에게 중국의 입장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중국 국영방송이 촬영
한 시위 당시 상황을 담은 CD를 제공했다. 또
기자회견도 열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정
부 관계자의 감독 아래 단체로 시위 현장을 취
재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대응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과거 신장위구르
에서 일어난 시위나 1년 전 3월 티베트 자치

구 수도 라싸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시위 때 외
국 언론의 취재를 철저히 차단했던 것과는 대
조적이었다.

중국 정부의 외국 언론에 대한 이례적인 개
방 조치는 1년 전 티베트 사태 때 인터넷의 위
협성과 파급력을 경험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티베트 사태 당시 외국 기자들의 티베트
출입을 철저히 봉쇄해 오히려 국제적으로는
중국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티베트인과 단체들은
무장경찰의 진압 장면을 이동전화기로 촬영해
외국에 내보냄으로써 중국 당국의 전통적인
방식의 언론 통제를 무력화시켰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적절한 통제 아래 일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침묵을 지키다 나중에
검증되지 않거나 불리한 내용이 확산되는 것
보다 낫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중국 내 언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외신기자클럽은 우루무치
사태 발생 이틀 뒤인 7월 7일 발표한 성명을 통
해 신장위구르 자치구 시위 취재에 나선 외국
방송기자들이 몇 시간 동안 구금되고 장비를
압수당했으며 카메라가 파손되기도 했다고 밝
혔다. 외신기자클럽은 또 신장지역 시위를 취
재하는 기자들을 구금하고 방해하는 것에 개
탄을 금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에 필수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
름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국은 기자
들이 제한 없이 취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
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당시 일
부 외신기자들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고 있
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은 국내외 기자들이

CHINA

시위 사태를 취재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기자들이 신장지역에서 중국 법률과 현지 규정에 따라 취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신장지역의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친강 대변인은 외부의 분리주의 세력이 인터넷이나 이동전화를 통해 시위를 선동하며 사회불안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中 소수민족 문제..정보 투명성 제고 필요

중국에서 소수민족 문제는 중국 국가의 핵심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 중국에서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시위가 발생할 때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를 국가 위기로 판단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관측이 중국 내에서도 우세하다. 소수민족의 분리·독립뿐 아니라 고도 자치를 요구하는 주장을 국가 분열 책동으로 규정해 통제

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진핑 지도부가 기존 티베트·신장위구르 관련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제2, 제3의 티베트·우루무치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중국 내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다.

중국 소수민족의 문제는 종교 자유 억압, 소수민족 문화·언어의 ‘한족 동화’, 다수 민족인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민족적인 차별 및 부의 불균형 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또 다른 소수민족 사태를 피하려면 한족과 위구르족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티베트족과 위구르족을 포함한 소수민족 관련 문제와 충돌사태에서 중국 당국과 언론이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언론이 그 동안 행해 온 비보도, 축소·왜곡·편파 보도가 소수민족 문제와 사태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정보의 공개와 개방은 사태의 진상을 알려줄 수 있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 이는 동시에 다수 민족인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오해를 줄여줄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이 여론의 ‘획일화’에서 ‘다양화’로 옮겨 간다면, 소수민족 간 갈등과 차이를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국 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중국 공산당 정부, 관영·민영 언론이 앞으로 소수민족 관련 문제에 어떤 변화를 보일지 보다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여성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출처 : 중국 바이두(百度·Baidu.com) 웹사이트 캡처)

‘뉴스 미란다 원칙’ 시행 : 국민일보, 언론 피해 예방에 중점



글. 정재호
국민일보 고충처리인

국민일보의 ‘뉴스 미란다 원칙’ 시행

아래의 사례 1은 제과회사들의 반론이 반영된 기사로 수정돼 다음 인쇄판과 인터넷에서 처리됐고 사례 2(p.131)는 취재 과정에서 소환 ‘방침’을 ‘소환’으로 오인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온라인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 같은 소동(?)은 지난 10월 23일 이른바 ‘뉴스 미란다 원칙’을 시행한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지고 있다. 모든 기사 하단에 다음과 같은 ‘뉴스 미란다 원칙’ 꼬리표를 달아 온라인에 전송하면서 반복되는 일상이다.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

#사례 1.

지난 11월 11일자 국민일보 초판신문에 “빠빠로 과자 일부 제품 원료 후쿠시마 인근서 수입 의혹”이란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두 환경단체가 일명 “빠빠로 데이”를 하루 앞두고 “일부 제품에 일본산 원료가 사용됐거나 사용이 의심된다”며 “일본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도 인근 8개현에서 식품 원료를 다량 수입해왔다”고 폭로한 내용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연도별 가공·원료식품 업체별 수입현황’에 근거한 것으로, H제과와 L제과를 수입업체로 지목한 이 기사는 10일 오후 5시 30분쯤 인터넷을 타고 전파됐다. 그 이후 시간차를 두고 고충처리인에게 두 통의 전화가 다급하게 걸려왔다. 두 제과회사 홍보팀이었다. 취재기와 통화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대목(빠빠로 데이)’을 코앞에 두고 터진 돌발기사가 있으니 그럴 만도 했다.

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고지(告知)’ 꼬리표에는 ‘고충처리인’의 연락처가 따라붙는다. 그러다보니 고충처리인이 즉시 해결해야 할 고충(?)들이 날로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기사를 읽어본 다음 별도의 수고 없이 바로 기사 하단의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보고 어필하고 있다. 이는 온-오프라인 매체들이 지면이나 홈페이지 한켠에 고충처리인을 고지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실시간 기사는 물론 검색 기사까지도 ‘뉴스 미란다 원칙’이 따라붙고 있다. 종래에 취재원과 독자의 권리 보호와 침해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대응했던 언론계의 관행에서 탈피하고자 했다.

이 같은 ‘뉴스 미란다 원칙’은 언론계와 언론학계에서 확립된 용어가 아니다. 원래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조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는 형사사법 절차상의 개념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1966년 선고한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Miranda v.

#사례 2.

지난 11월 8일 이른 아침, 고충처리인에게 여러 통의 전화가 빗발쳤다. 검찰이 KT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본사와 자회사 임원들을 줄줄이 소환하는 상황에서 한 자회사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는 기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신문 제작 공정 상 전날 초판에 없었던 이 기사는 이튿날 아침에 배달되는 최종판에 실렸고 인터넷에서도 새벽에 전송됐다. 문제는 기사에서 검찰에 소환됐다고 적시된 임원들 가운데 한 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 기사를 본 KT 홍보팀과 자회사 관계자, 해당 임원의 가족이 취재기자와 연락할 방도가 없으니 고충처리인에게 전화한 것이었다.

Arizona 384 U.S. 436)에서 개인의 기본권(인권)으로 확립한 원칙이다.

이를 취재·보도 행위에서 적용해보고자 ‘뉴스 미란다 원칙’이란 이름으로 차용한 것이다. 선정주의와 한탕주의 속보(速報)경쟁으로 인해 저널리즘이 점점 실종되고 있는 온라인뉴스 환경 개선에 미력이나마 동참하고자 하는 작은 소망에서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 / 전화: 02-781-9711

모든 국민일보 기사 하단에 따라 붙는 국민일보의 ‘뉴스 미란다 원칙’

속보 경쟁 속에 증가하고 있는

언론분쟁 조정 건수

정보통신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미디어환경도 크게 변화했다. 언론사의 속보는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업로드되고, 소비자들은 실시간으로 이를 접하게 된다. 하지만 빠르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장점 대신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속

보 경쟁에 수반되는 오보 시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언론분쟁 조정청구건수는 2008년 954건에서 2009년 1573건, 2010년 2205건, 2011년 2124건, 2012년 2401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인터넷신문의 청구건수도 증가했지만, 2009년부터 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이 언론중재법에 적용받게 된 이후 조정청구건수는 더욱 크게 증가했다. 인터넷신문의 경우 2008년 157건에서 2009년 233건, 2010년 567건, 2011년 705건, 2012년 945건으로 2008년 기준 약 6배가 증가했다. 인터넷뉴스서비스는 2009년 181건을 시작으로 2010년 841건, 2011년 510건, 2012년 454건을 기록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 및 독자와 소통하자는 의지의 선언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일종의 탈출 비상구로 도입한 ‘뉴스 미란다 원칙’엔 특징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엑세스권)다. 반론권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독자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채택했다. 아직도 수많은 독자들은 언론을 갑(甲)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저명인사 같은 공인들에 비하면 아직도 보통의 독자들은 언론사와 기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친절하고 열린 자세로 취재원 및 독자와 소통하자는 의지를 선언한 것이다.

‘뉴스 미란다 원칙’ 고지를 시행해오고 있다.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강화를 위한 액세스권 보장은 우리 언론계의 취재 관행에서 다소 비현실적이고 생소하게 비쳐질 지 모르지만 선진국에선 당연시되고 있다. 한 예로, 영국 BBC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인 ‘워치독(Watchdog)’이 2008년 4월 방영한 삼성냉장고 고발 보도는 국내 기업 홍보담당자들 사이에서 국내 언론과 비교되는 선진 취재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핵심은 워치독이 삼성냉장고에 대한 소비자 고발 내용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알린 점과 방송 제작 완료 직전 삼성 해명이 정확한지 재확인한 점 등 방영 전 단계에서 반론 기회를 최대한 줬고 7분 40초 방송에서도 약 3분의 1(2분 40초)을 삼성 해명에 할애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BBC 방영에 대해 삼성은 한마디도 어필하지 못했다는 후일담이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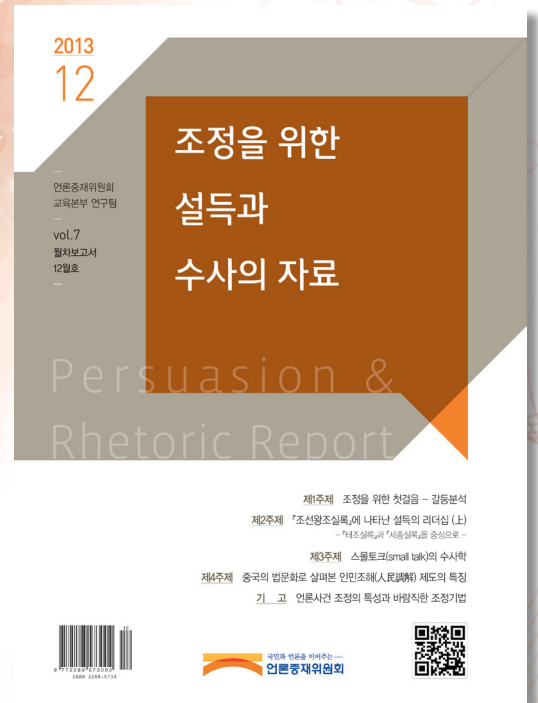
BBC의 Watchdog 프로그램 진행 장면(출처 : BBC, 「A look at Watchdog Daily」, 2012년 11월 12일자)

기사 분량의 제약을 받는 종이신문과는 달리, 인터넷에만 전송되는 뉴스는 더 탄력적으로 ‘뉴스 미란다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잘못된 기사의 정정은 당연하고 정확한 기사라 하더라도 취재원 입장에서 억울한 입장(반론)을 분량 제한 없이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지는 ‘뉴스 미란다 원칙’이 되길 기대해본다.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지혜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 -
Persuasion & Rhetoric Report』
2013년 1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제1주제| **조정을 위한 첫걸음** - 갈등분석

|제2주제|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설득의 리더십 (上)**
- 「태조실록」과 「세종실록」을 중심으로 -

|제3주제| **스몰토크(small talk)의 수사학**

|제4주제| **중국의 법문화로 살펴본 인민조해(人民調解)
제도의 특징**

| 기 고 | **언론사건 조정의 특성과 바람직한 조정기법**

- 언론중재위원회 발간 (격월간)
- 정가 : 5,000원 (정기구독 : 연 30,000원)

※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연구팀(02-397-3041~30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